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II)

남아프리카공화국

손 현 · 서 광 욱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교법제 연구 12-20-⑭-7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II)
- 남아프리카공화국 -**

손 현 · 서 광 옥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II)

- 남아프리카공화국 -

A 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ging Markets(MAVINS)(VII)

- South Africa -

연구자 : 손 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on, Hyun

서광옥(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

Joshua k Suh

2012.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신흥 자원 개발 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세계적인 광물 부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정치·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편에 속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BRICS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신흥 경제국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 남아공의 경우,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을 폐지한 이후, 광범위한 흑인 경제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업 및 기업 투자 정책과 법제 등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향후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 등 해외 진출 및 투자를 위해서는 남아공의 법률,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바, 본 연구는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 개발 및 투자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남아공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분석

- 남아공의 정치·경제·역사적 상황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 남아공의 원자재 및 외국인 투자 환경
-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례 조사

□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 남아공의 광물 개발 정책 및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의 내용
 - 신광업 정책의 배경 및 목표
 - 신광업 정책의 주요 내용
 - 광업과 관련한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의 내용
- 광범위 흑인 경제 활성화법 및 모범 실무 규칙의 주요 내용 분석
 -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을 위한 기본법
 -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의 세부 평가 기준
-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등 광물 관련 법제 분석
 -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 원칙 및 행정 조직
 - 광물, 석유, 환경 규제에 관한 세부 내용 분석
 -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 및 채굴권 등록법의 주요 내용

-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 회사법의 주요 내용 분석
 - 소득세법, 이중과제금지조약, 부가가치세법, 숙련공 육성세법 등 조세 관련 법제 분석
 - 노사관계법, 근로기준법, 고용 평등법, 실업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법 등 노동 관련 법제 분석
 - 외환관리법제 분석
-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의 특징 및 개발 협력 방향 모색

Ⅲ. 기대효과

- 남아공과의 자원외교 및 자원관련 정책 입안시 기초자료로 활용
 -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및 투자 관련 법제 정보의 제공
- ▶ 주제어 :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경제육성정책, 광업 정책,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남아공 회사법, 남아공 조세법, 남아공 노동법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Africa as an emerging resource development market is getting international attention, in particular Republic of South Africa has the potential for growth as the global mineral market. South Africa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stability, as joining BRICS members in December 2010.
- After the abolition of the Apartheid policy, it promotes a wide range of black economic empowerment policy(BEE), as a consequence, in many changes in detail to the mining and corporate investment policy and legislation.
-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formation on raw mate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related laws for raw materials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South Africa, because understanding South Africa's legal, political, economic, and overseas markets is essential prerequisit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investments in the future.

II. Main Contents

- South Africa Overview and analysis on materials development cooperation trends
 - Understanding South Africa's political, economic, and historical situa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Korea
 - South Africa's raw materials and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South Africa Case Study
- Analysis on South Africa's raw material development Legislation and Policy
 - South Africa's mineral development policy and black economic empowerment(BEE) policy
 - Background and goals of the new mining policy
 - Main contents of the new mining policy
 - Contents of Black economic promotion policy regarding mining
 - Analysis on major contents of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 and B-BBEE Codes of Good Practice
 - Black Economic Development Policy Framework Act
 - Detailed ratings of Black Economic foster contribution grade
 - Analysis on Mineral-related legislation, including the Minerals and Petroleum Resources Development Act

- Basic principles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n the Minerals and Petroleum Resources Development
 - Detailed content analysis on minerals, petroleum,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 Major contents of Minerals and Petroleum Resources Royalty Act and the Mining Titles Registration Act
- Analysis on South Africa's raw material development related to investment laws and policy
- Analysis on the Companies Act
 - Analysis on Taxation laws including the Income Tax Act, the Double Tax Agreement, the Value-Added Tax Act, the Skills Development Levies Act, etc.
 - Analysis on Labor laws including the Labour Relations Act, the Basic Conditions of Employment Act, the Employment Equity Act, the Unemployment Insurance Act, the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Act, etc.
 - Analysis on foreign exchange management laws
- Exploring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inding South Africa's raw materials development cooperation features

III. Expected Effect

- Using as the basic material for resource diplomacy and policy making to South Africa

- Providing information on South Africa's raw materials, and investment-related legislation for promoting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 **Key Words** :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Black Economy Empowerment policy(BEE), mining policy,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 Minerals and Petroleum Resources Development Act, the Companies Act of South Africa, South Africa Taxation, Labor Law of South Africa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 2 장 남아공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19
제 1 절 남아공 개황	19
I. 국가 및 광산업 개요	19
II. 역사적 배경의 이해	20
III. 정치 상황	22
IV. 경제 상황	23
V. 한국과의 관계	27
제 2 절 남아공의 원자재 현황	28
제 3 절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 환경	30
제 4 절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33
I. 원자재 개발 산업 이슈	33
II. 원자재 개발 협력 사례	36
제 5 절 검 토	40

제 3 장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43
제 1 절 개 관	43
제 2 절 남아공 광물 개발 정책	44
I. 정책 목표 및 내용	44
II. 흑인 경제 육성 정책	47
제 3 절 남아공의 흑인경제육성법제 분석	48
I. 주요 내용	49
II. 모범 실무 규칙	51
제 4 절 남아공 광업법제 분석	60
I. 개 관	60
II. 기본 원칙	64
III. 광물 및 채굴 개발 위원회	67
IV. 광물 관련 규제	70
V. 석유 관련 규제	84
VI. 환경 관련 규제	94
제 5 절 기타 원자재 개발 관련 법령	107
I.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	107
II. 채굴권 등록법	109
제 6 절 검토 및 시사점	109
제 4 장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	113
제 1 절 개 관	113
제 2 절 남아공의 회사법 분석	114

I. 개 관	114
II 주요 내용	115
III. 검 토	146
제 3 절 남아공의 조세 관련 법제 분석	146
I. 개 관	146
II. 소득세법	147
III. 이중과세금지조약(Double Tax Agreement)	152
IV. 부가 가치세법	153
V. 숙련공 육성세법	153
VI. 부동산 취득세	154
VII. 광산 운영과 세금	155
제 4 절 남아공의 노동 관련 법제 분석	155
I. 노사 관계법	156
II. 근로 기본 조건법	165
III. 고용 평등법	169
IV. 실업 보험법	172
V. 산업 재해 보상법	174
VI. 개정 예정 노동 법률 요약	174
제 5 절 남아공의 외환관리 법제 분석	176
I. 개 관	176
II. 자국민 해외 투자 및 송금	177
III. 배당금, 수익 및 이자 송금	178
IV. 주식, 금 투자 이익 송금	179
V. 해외 거주 이사 보수 지급	179
VI. 로열티, 라이선스 송금	179

VII. 대 출	180
제 6 절 검토 및 시사점	181
제 5 장 결 론	185
참 고 문 헌	18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에너지·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및 자원 협력 연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최근 아프리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투자와 수출시장 측면에서도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이후 신흥 자원개발 시장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에 대한 협력관계나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이중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이라 약칭한다)의 경우 세계적인 광물부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편에 속하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 최근 광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대외 경제 여건 호전, 소비 및 설비 투자의 성장 등에 기인하여 꾸준히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남아공은 백금족 금속, 철광석 등 수많은 광물자원의 세계적인 자원보고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남아공 GDP 중 8.8%를 광산업 분야가 점유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남아공에 많이 진출해 있다. 최근에는 광산 확장을 위해 기존 진출 업체들의 자본투자가 늘고, 중국, 인도 등 자국 내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들의 신규투자 진출이 이어지면서 남아공의 광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한국은 남아공으로부터 광물자원과 같은 원자재를 수입해오고 있으나,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향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아공의 경우, 인종 차별 정책(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을 폐지한 이후, 과거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흑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을 제정·시행하거나, 광산업 분야에 대한 흑인들의 참여를 보장하는新光업법(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의 제정 등 광업 및 투자 정책과 법제 등에 있어 세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법제가 남아공 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해외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지의 법률, 정치, 경제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흑인 경제 육성 정책과 법, 광물 관련 정책과 법제 등을 중심으로 향후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한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및 투자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 등 남아공에 투자를 할 경우 적용을 받는 관련 법제의 내용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최대한 관련 법령상의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아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남아공의 정치·경제·역사적 상황과 원자재 개발 협력 사례를 현지 조사를 통해 보충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남아공의 정치·경제·역사적 상황과 원자재 및 외국인 투자 환경, 원자재 개발 협력 사례를 소개하였

고, 제3장에서는 남아공 광물 개발 정책 및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의 내용,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및 모범 실무 규칙의 주요 내용,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등 광물 관련 법제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4장에서는 회사법의 주요 내용, 소득세법, 이중과제금지조약, 부가가치세법, 숙련공 육성세법 등 조세 관련 법제, 노사관계법, 근로기준법, 고용 평등법, 실업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법 등 노동 관련 법제, 외환관리법제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의 특징 및 개발 협력 방향을 결론에서 모색하였다.

제 2 장 남아공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 1 절 남아공 개황

I. 국가 및 광산업 개요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에너지·자원 부국인 남아공은 1909년 영국의회에서 남아프리카법(South Africa Act)이 통과되어 4개 주로 된 남아프리카연방을 수립(영연방 내의 자치정부)하였고, 이에 다음해 5월 3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발족하였다.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 경제동맹체제인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14개국 GDP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53개국 전체 GDP의 27%를 점유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이다. 남아공은 인종차별(Apartheid)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경제는 1999년부터 회복되어 약 1.9%의 성장을 이룬 후, 2000년에는 3.1%의 경제성장을 이룬 바 있으며 그 후 계속 3% 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인종차별 철폐이후 대외 지향적 통상정책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가입, BRICS 가입, 투자유치노력 전개, 자유화 조치이행 등 국제경제무대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했다. 정부의 흑인경제이양정책에 따라 2009년까지 흑인의 광산소유가 15%, 2014년 2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의 에너지·자원 산업(광업, 광산업)에는 노동력의 약 6%가 종사하고 있는데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은 국가 총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광·산업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관련 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아공은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제조업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많은 생활필수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도 해외에서 부품을 수

입하여 조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 최근 이러한 형태는 많이 변하고 있다. 한편, 남아공은 원자재(광물) 중심의 수출구조로 인해 광물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유럽과 중국 등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진출 전략은 지난 1996년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던 시기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근래 남아공 광업부문의 투자흐름을 분석하면 석탄 및 백금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망한 광종으로 주목 받은 바 있는데, 캐나다, 호주의 메이저 광업회사들은 기존 석탄광의 인수에 매우 적극적인 면을 보인 바 있으며, 또 산업용 백금 수요(자동차 배출가스 조절을 위한 촉매 부품등)의 증가로 인한 백금의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기존에 광업권을 확보하고 있던 백금광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바 있다.¹⁾

II. 역사적 배경의 이해

남아공에 도착하여 희망봉을 발견한 최초의 유럽인은 포르투갈 선원 디아스(Bartholomu Diaz)로, 1488년 현재의 더반 지역에 상륙하였다. 1652년 네덜란드인 리베크(Liebeeck)가 본격적으로 케이프타운에 보급기지를 건설하였으며, 1688년에는 프랑스 위그노교도들이 케이프타운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농업과 목축을 하면서 스스로를 보어인²⁾이라 불렀다.

이후, 18세기 후반 국제적인 해운통상국으로 네덜란드를 물리친 영국은 인도무역의 중계지로서 케이프타운을 점령하였다가 1815년 정식으로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로 만들었고, 1843년에는 나탈 지역도 점령하였다. 영국의 노예해방과 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한 보어인은 1830년

1) 국가 및 광산업 개요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남아프리카공화국 Country Profile”, 2008 참조.

2) Boer로 네덜란드어로 ‘농부’ 라는 뜻이다.

대부터 내륙으로 이동하여, 트란스발 공화국(1852)과 오렌지 자유국(1854)을 건설하였다. 남아공으로의 백인 이민은 19세기 중반까지 대부분 농업 이민이었고, 이때까지 남아공의 역할도 향해 보급기지 중심이었으나, 1867년에는 호프타운에서 다이아몬드가, 1886년에는 현재의 요하네스버그 부근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백인들의 다이아몬드러시, 골드러시가 시작되었다.

남아공의 주도권을 놓고 1899년 영국계 이민자들과 네덜란드계 보어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고, 1902년 보어인의 패배로 트란스발공화국과 오렌지자유국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영연방에 편입되었다. 영국의회는 남아프리카법을 통과시켜 1909년 4개 주로 구성된 남아프리카 연방을 수립(영연방 내의 자치정부)하였으며, 이듬해인 1910년 영연방국가로 독립하였다. 1948년 백인들만의 총선에서 국민당(NP)이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인종차별과 유색인종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와 영국 정부의 비난이 거세지자, 영연방을 탈퇴하고 1961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

1923년 출범한 아프리카민족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는 남아공 내에 반아파르트헤이트 투쟁을 주도해 왔으며, 1948년 국민당 정부가 아파르트헤이트 노선을 강화하자 ANC도 이에 맞서 무력투쟁 노선을 채택하였다. 1961년에는 ‘민족의 창’이라는 ANC내 게릴라 조직이 탄생하였고, 1962년 의장이던 넬슨 만델라가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984년 흑인 대중의 반아파르트헤이트 폭동이 고조되자 ANC와 ‘민족의 창’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1989년 취임한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대통령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개혁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고 ANC의 활동이 합법화되었으며, 석방된 넬슨 만델라는 ANC 부의장에 취임, 데클레르크 총리와 함께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을 위한 예비교섭을 시작하였다. 1994년 4월 남아공 최초의 민주

선거가 실시되어 ANC가 압승을 거두었으며, 다수당의 당수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같은 해 5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99년 6월에도 ANC의 압승으로 당시 ANC 의장이었던 타보 음베키(Thabo Mbeki)가 제2대 대통령에 취임(2004년 재선)하였고, 2009년 4월 총선에서 다시 ANC가 승리하여 의장인 현 대통령 제이콥 주마(Jacob Zuma)가 5월에 취임하였다.³⁾

III. 정치 상황

1994년 4월 전 인종 참여 민주선거를 통한 만델라 정권 수립에 이어 1999년 6월 및 2004년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ANC가 압승하여 타보 음베키 대통령이 연속 집권하였으며, 2009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도 ANC가 압도적 지지(총투표자의 65.9%)를 획득함으로써 주마 대통령 시대를 개막하였다. 2009년 4월 총선결과 ANC는 의회 총 400석중 264석을 획득하였으며, 야당인 DA(Democratic Alliance) 67석, 여타 군소정당들이 69석 획득하였다. 흑인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 정치적 안정과 보수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따른 제반 경제지표의 안정화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으나, 실질 경제상황 개선수준은 흑인다수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세계 경제위기 대처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ANC가 여전히 흑인다수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경제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나, ANC와 삼자연정(Tripartite Alliance) 관계인 Cosatu(흑인노조연맹)와 SACP(공산당)의 일부 정책노선(실업문제 대처 등)에 대한 이견과 연정내 권력분배 요구 증대 등으로 일부 정책이 좌파성향으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계속해서 실업, 빈곤, 범죄 및 HIV/AIDS(580만명 감염 추정) 만연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주마 대통령은 2009년 5월 취임시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아래 5대 국

3) 남아공의 역사적 배경은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등 참조

정과제 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대처, ② 교육제도 개선, ③ 범죄문제 강력대응, ④ 지방 개발 촉진, ⑤ 보건복지 향상을 천명하였다. 특히, 남아공 정부는 고용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면서 대통령실내 ‘국가계획위원회’와 ‘이행평가감독위원회’를 두어 정부 정책의 이행과 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주마 대통령은 2011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금년을 ‘일자리 창출의 해(Year of Job Creation)’로 규정하고 2020년까지 5백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전략(New Growth Path)’ 이행을 위해 민간부문 및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6대 분야(인프라 개발, 농업, 광업 및 제련 분야, 제조업, 녹색산업, 관광분야)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점 분야로 선정, 동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제 철폐 등을 약속하였다.⁴⁾

IV. 경제 상황

남아공은 아프리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도국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시장이다. 2009년 기준, 남아공의 GDP는 3,558억불로 아프리카 전체 53개국 GDP의 약 24%를 점유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기준, 약 7,246불로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2009년 기준 아프리카 최대 규모로서, 아프리카 대외교역의 약 16%를 점유하고 있다.

<남아공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내총생산(US\$억)	2,613	2,861	2,754	2,844	3,558

4) 남아공의 정치 상황은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등 참조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인당 국민소득(US\$)	5,455	5,911	5,643	5,792	7,246
GDP 성장률	5.6	5.6	3.6	-1.7	2.8

남아공은 금융, 유통 등 3차 산업 위주의 성숙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남아공 GDP(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62.9%에 달하며, 1차 산업 비중은 12.9%, 2차 산업은 24.2%이다. 남아공의 주요 산업(3차 산업 제외)은 광산업,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산업 등으로 분류되며,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찍이 광산업이 발전하였는데, 2009년 기준 남아공 GDP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다.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1,500Mt, 세계 11위)을 바탕으로 발전한 철강산업은 남아공 제1의 제조업으로서 2009년 기준,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조업으로서 2009년 기준, 남아공 제조업 생산량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은 남아공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MIDP)에 따라 BMW, 벤츠, 토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기반이 됨으로써 남아공 주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를 이끌고 있는 남아공이지만, 최근 아프리카의 경제 상황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IMF는 2012년 8월 23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12년, 2013년 남아공 경제성장률을 각각 2.6%, 3.4%로 전망하였다.⁵⁾ IMF는 남아공 거시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은 높은 실업률이며,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경제 구조의 잔재뿐만 아니라 ① 현 정권 경제정

5) 2011년 남아공 경제 성장률은 3.1%였고, 2011년 IMF 보고서에는 2012년, 2013년 경제성장률을 모두 4.2%로 예상하였으나, 2012년 5월 IMF는 금년도 남아공 성장 전망을 2.7%로 발표한 바 있다.

책의 불확실성, ② 공기업 독과점 형태의 생산시장 구조, ③ 강한 노조 영향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실업난 타개에 장애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⁶⁾ 한편, 남아공 중앙은행은 2012년 8월 21일 경제 지수(Business Index)를 발표한 바, 남아공 주요 경제 순환 지표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3% 하락한 129.3 포인트에 머물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2012년 남아공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하였다.

한편, 남아공 중앙은행의 2012년 9월 1일 발표에 따르면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2/4분기 수출이 1.3% 감소한 반면, 수입은 3% 증가하여 경상수지적자가 GDP의 6.4%에 달하는 바, 랜드화의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지출 증대가 가속화되는 것도 우려되는 바, 1/4분기 2.2%, 2/4분기 4.1% 각각 증가되었으며 주로 임금지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채무 성장 속도 역시 가처분 소득의 성장 속도를 추월하고 있는 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채무는 1/4분기 75.6%보다 0.7% 늘어난 2/4분기 76.3%를 기록하였다.

또한 남아공 통계청은 8월 28 GDP가 1/4 분기 2.7% 상승에 이어 2/4 분기도 3.2% 상승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광업이 1.5%, 금융, 부동산, 서비스 부문이 0.5%, 도소매, 자동차 거래, 요식업, 숙박업 등이 0.4% 성장에 기여했으나,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무역 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2012년 7월 남아공 무역적자는 6월 57억 랜드보다 10억 랜드 증대된 약 67억 랜드(8억 US\$)를 기록하였다. 1/4분기 적자가 GDP의 3.6%에 해당되었고, 2/4분기 적자는 이보다 1.3% 상승한 4.9%이다.

6) IMF는 보고서에서 남아공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 일반적으로는 IMF가 제시한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나, 생산, 노동 시장 정책은 IMF 제안을 따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부문을 민간 기업에 개방할 것과 노사간 잦은 충돌의 해소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를 제안하였다.

한편, 남아공은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 등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26일~27일 KwaZulu-Natal주 Durban시에서 BRICS 정상회의를 등을 개최할 예정에 있는 등 국제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⁷⁾ 독일 Bertelsmann 재단은 2012년 10월 15일 “Sustainable Governance in BRICS” 제하 보고서를 통해 BRICS 국가들이 정치개혁을 지연시키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남아공은 BRICS 내에서 중간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제 안정, 국가 채무 감소, 사회복지 정책의 강화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 시스템 및 노동 시장이 건실하지 못하며, 사회 불평등이 5개국 중 가장 높다고 판단하였다. 남아공 Sooklal BRICS 부교섭대표(국제관계협력부 아·태 차관보)는 2012년 8월 6일 “Global Economic Governance” 세미나에서 남아공 정부가 대 BRICS 전략 개발을 추진 해 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 BRICS 전략을 수립하여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BRICS 국가들과의 외교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국제관계협력부 측은 동 Strategy Paper가 최종 단계에 있으며, 2013 제5차 BRICS 정상회의 후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⁸⁾ 또한, 남아공은 BRICS 개발은행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바, 동 은행 설립이 BRICS 국가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적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⁹⁾

7) 3월 26에는 BRICS 통상장관 회의, 비즈니스 포럼, BRICS 국가 은행 협력기구와 남아프리카 개발은행(DBSA)간 포럼, BRICS 싱크탱크/학술 포럼, 고위급회의(결과 문서 최종합의) 등을 개최하고, 27일에는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편, 이에 앞서 남아공 내각은 남아공의 對BRICS 국내, 역내, 국제 차원의 전략 초안을 결의하고, 2013년 3월 남아공 개최 BRICS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부처합동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였다. 동 전략 초안에는 ① BRICS 개발은행 설립 ② IMF, WB 역할, ③ 도하 라운드 무역 회담 ④ 시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아프리카 현안, ⑤ 테러와의 전쟁, ⑥ 에너지 ⑦ Horn of Africa 지역 인도적 위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8) 남아공 상공회의소 측은 남아공의 BRICS 가입은 ‘아프리카 관문’으로서의 역할 덕분이기 때문에 동 전략 수립시 아프리카에 대한 초점(아프리카 전체 이익 추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견해를 표명하였다.

9) 남아공의 경제상황은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등 참조

V. 한국과의 관계¹⁰⁾

1. 정치 관계

한국전 당시 남아공의 파병(1개 비행중대, 826명) 등으로 양국간 우호관계가 유지되었으나, 1978년 이후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UN 제재에 부응하여 모든 공식관계가 단절되었다. 1990년 남아공 백인정부의 인종차별정책 철폐를 계기로 양국 간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 1992년 12월 수교를 합의하였다. 특히 1994년 5월 최초의 다인종 선거에 의한 흑인다수정부 수립 이후 95년 7월 만델라 대통령의 방한, 1998년 4월 및 2007년 5월 각각 Mbeki 부통령과 Mlambo-Ngcuka 부통령 방한, 2006년 2월 이해찬 총리의 남아공 방문, 2010년 10월 Motlanthe 부통령 방한 및 2010년 11월 Zuma 대통령의 G20 서울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등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다방면에 걸쳐 양국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2. 경제통상 관계

1992년 12월 수교이후 양국 간 교역은 매년 증가하여 약 15억불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2006년도 이후에는 30억불대로 증가, 2010년도에는 최고치(39억불)를 갱신하였다. 우리나라는 남아공과의 교역에서 광물수입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2005/2006년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수입은 백금, 합금철, 철광, 알루미늄괴, 동괴, 유연탄 등 원자재 중심이며, 우리의 수출은 승용차,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건설 중장비, 경유, 인쇄용지, 윤활유 등 공업생산품이 주류를 이룬다. 양국 간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크므로, 우리 기업의 남아공 투자 진출 등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노력 필요하다.

10)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등 참조

<수출입 현황>

(단위: 억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	13.2	17.9	17.5	14.0	10.8	16.7
수 입	10.9	13.8	17.6	21.5	11.7	22.7
계	24.1	31.7	35.1	35.5	22.5	39.4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직접투자액>

(단위: 천불)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계
직접투자액	26,797	5,980	27,897	21,942	94	16,896	186,110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물자원공사, 한전, 수출입은행, 대우인터,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물산, 대한전선(M-TEK), 현대차, 제일기획, 포스크롭 등 약 20개 지상사가 주재하고 있다.

3. 양국 협정 체결 현황

양국이 체결한 협약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95.7월 서명, 96.1.7 발효), 항공협정(95.7월 서명, 95.7.7 발효), 투자보장협정(95.7월 서명, 97.6.6 발효), 남아공국립검정원 기능향상 사업시행 약정(2000.8월 서명, 2000.8.14 발효), 과학기술협력협정(2004.2월 서명, 2004.8.31 발효), 원자력협력협정(2010.10월 서명, 2011.2.24 발효)이 있다.

제 2 절 남아공의 원자재 현황

남아공은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존국가로 에너지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이 부존되어 있는데, 석유의 매장량과 생산은 적은

편이나 석탄을 이용한 합성유(CTL) 생산으로 남아공 석유수요의 40%를 충당하고 있다. 석탄의 부존은 세계 4위권으로 풍부히 매장되어 있고 생산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남는 막대한 물량은 수출하는 세계 2위의 석탄수출국이며, 천연가스는 자급자족하고 있다.

일반광물 부문에서는 여러 광종의 매장량이 풍부하며 많은 광종의 매장량이 세계 순위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백금족 금속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88.7%가 매장되어 있다. 다이아몬드, 백금족 금속 및 망간, 바나듐과 같은 페로합금(페로 망간, 페로 바나듐 등)의 세계 최고 생산국이면서, 특히 백금족 금속, 철광석, 석면, 망간광, 페로크롬, 크롬광, 바나듐의 주요 수출국에 해당한다.

<남아공 주요광물 생산량 및 매장량>¹¹⁾

광 종	단 위	매 장 량		생 산 량(09)	
		남아공	세계순위	남아공	세계순위
안티몬	톤	21,000	5	2,800	4
크롬	천 톤	130,000	2	6,870	1
금	톤	6,000	2	198	4
철광석	백만톤	1,000	14	55	7
망간	천 톤	120,000	2	1,900	3
석탄	백만톤	30,410	8	146.8	4
니켈	천 톤	3,700	8	34.6	11
백금족	톤	63,000	1	21.6	1
티타늄	천 톤	71,300	4	1,050	1
바나듐	천 톤	3,000	3	17	2
지르코늄	백만톤	14,000	2	392	2

11) 서상현, “남아공의 자원 현황 및 개발 협력 사례,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제문,

제 3 절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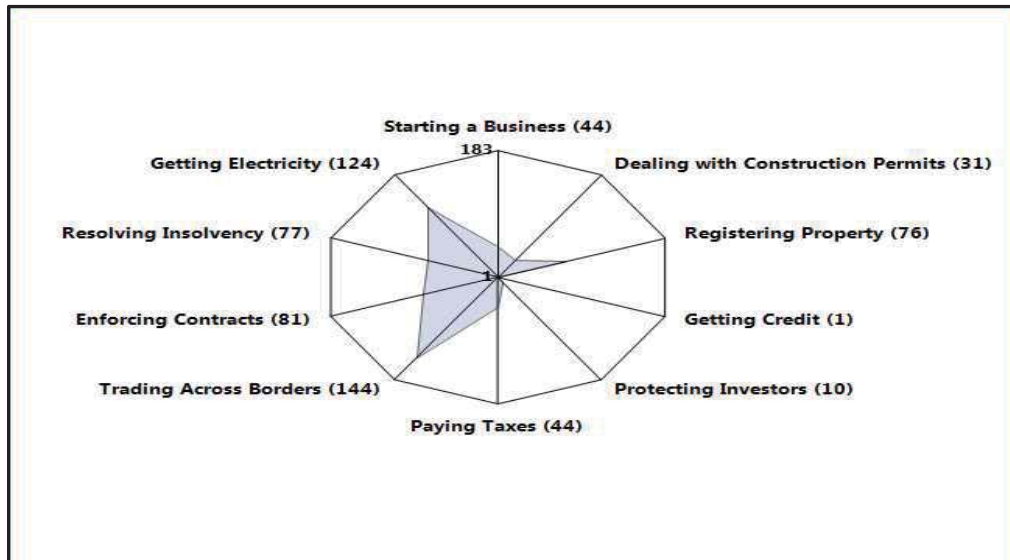
남아공의 경우 현재, 정치면에서 여당 주도의 안정적 정치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¹²⁾ SADC 주도국으로서 남아공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주마 대통령의 권력 유착 비리의 만연,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인한 흑흑 갈등의 고조가 불안요소로 여겨진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선 가능성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위험도, 경제자유도, 광업투자환경에 대하여 LLoyd, WS Journal, Fraser Institute에서 평가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국가위험도 (LLoyd) ¹⁴⁾	경제자유도 (WS Journal)	광업투자환경 (Fraser Instit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츠와나(L) 이외의 대부분 국가 위험 노출 - M-H : 잠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 H : DRC, 짐바브웨, 코트 디브와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츠와나, 남아공, 나미비아, 마다가스카르 : 비교적 자유(Moderate Free) - 잠비아, 모잠비크, 코트디브와르 : 거의 비자유(Mostly Unfree) - DRC, 짐바브웨 : 억제(Repressed), 경제자유지수 최하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츠와나가 가장 높은 순위, 이외에 잠비아, 남아공, DRC, 짐바브웨 순 - 남아공 : 광업개발 잠재성은 높으나 흑인육성정책(BEE)로 저평가

2012, 재인용.
 12) 2011.11.5. 지방선거에서 ANC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13) 한국광물자원공사 남아공사무소 제공 자료 참조.
 14) L(Low), M-L(Medium-Low), M(Medium), M-H(Medium-High), H(High)

남아공의 경우 경제자유도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국가위험도는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광업 투자 환경에 있어서도 광업 개발 잠재성은 높으나, 흑인 육성 정책으로 인한 장애 요소 때문에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한편, Wold Bank의 2012년 Doing Business에 따르면 183개 국가 중 남아프리카의 비즈니스 환경 10개 항목에 걸쳐 평가한 순위¹⁵⁾는 비즈니스 개시 (44위), 건축 허가 (31위), 전력 확보 (124위), 재산 등록 (76위), 대출 (1위), 투자자 보호 (10위), 세금 지불 (44위), 해외 무역 (144위), 계약의 이행 (81위), 청산 (77위)이다.



① 비즈니스 개시(Starting A Business)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행해야 하는 절차 및 각 절차 당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19일이 소요된다. 이는 Global best performer 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5) 순위가 높을수록 환경이 좋은 것이다.

② 건축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13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127일이 소요된다. 이는 Global best performer 보다는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편에 해당한다.

③ 전력 확보(Getting Electricity)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226일이 소요된다. 이는 Global best performer 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④ 재산 등록(Registering Property)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재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23일이 소요되며 재산 가치의 5.6%의 비용이 든다.

⑤ 대출(Getting Credit)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출의 용이성 부문에서 183개의 경제주체 중 1위를 차지하였다.

⑥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투자자 보호의 강력도 부문에서 183개의 경제주체 중 10위를 차지하였다.

⑦ 세금 지불(Paying Taxes)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금 지불의 용이성 측면에서 183개의 경제주체 중 44위를 차지하였다.

⑧ 해외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해외 교역의 용이성 측면에서 전체 183개의 경제주체 중 144위를 차지하였다. 상품을 적재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8가지의 서류가 필요하고 30일이 소요되며 \$1531의 비용이 든다. 같은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8개의 서류, 32일, \$1795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⑨ 계약의 이행(Enforcing Contracts)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계약 이행의 용이성 측면에서 183개의 경제주체 중 81위를 차지하였다. 계약 사항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29가지 절차, 600일, 소가의 33.2%가 소요된다,

⑩ 청산(Resolving Insolvency)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청산의 용이성 측면에서 183개의 경제주체 중 77위를 차지하였다. 청산에는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며 채무자의 재산의 18%의 비용이 소요된다.

제 4 절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¹⁶⁾

I. 원자재 개발 산업 이슈

남아공의 경우 이윤적정 배분에 대한 정부 역할 확대 문제(국유화 논쟁, 부가가치 향상)¹⁷⁾, 인프라 확충 문제(RBCT 적체로 수출량 미달), 등이 원자재 개발 산업에 있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Fraser Institute(2010/2011)에서 전 세계 79개국 대상, 670개 광업회사 담당자의 의견 조사를 통해서 아프리카 12개국을 광업 정책 및 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통계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6) 남아공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에 관한 자료는 남아공 현지 방문을 통해 장충식 KOTRA 아프리카 지역본부장, 심권용 한국광물자원공사 남아공사무소장, 박중석 포스코 아프리카 법인장 등 실무 전문가의 현지 인터뷰 및 각 기관 제공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17) 흑인과 백인간의 빈부격차 문제에 이어, BEE법 등의 시행에 따른 흑인 Super-Rich의 등장에 따른 흑인들간의 갈등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제 2 장 남아공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12개국	광업정책	개발가능성	
Botswana	14/79	7/79	28/79
Burkina Faso	24/79	6/79	21/79
DRC(Congo)	77/79	70/79	4/79
Ghana	47/79	24/79	31/79
Guinea(Conakry)	51/79	56/79	39/79
Madagascar	73/79	46/79	51/79
Mali	29/79	21/79	24/79
Namibia	30/79	29/79	49/79
Niger	43/79	44/79	65/79
South Africa	67/79	66/79	43/79
Tanzania	61/79	23/79	25/79
Zambia	57/79	37/79	26/79
Zimbabwe	71/79	74/79	34/79

남아공의 경우 정치·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광업 정책이나 개발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흑인 경제 육성 정책 및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등의 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흑인·백인, 흑인들간의 빈부 갈등, 광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노·사 갈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아공의 경우 세계 3위 백금 생산업체인 Lonmin社의 Marikana 광산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1, 2위 백금 생산업체인 Anglo America Platinum社, Impala Platinum社의 Rustenburg 광산 및 금 생산업체인 Gold Field社의 West Rand 광산에서도 임금 재협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전개 되는 등 남아공 광산업계에 파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다.¹⁸⁾ Lonmin社가 2012년 9월 14일 월 임금을 900랜드(약 12만원) 인상한 5,500랜드(약 74만원)를 제안했으나 광부 측은 기존 3년 임금 협정에서 2012년 10월 예정인 인상 폭과 차이가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Shabangu 광물자원부 장관은 9월 3일 정부가 광업 개혁 진행 정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업 내 흑인경제육성정책(BEE) 시행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고,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은 Marikana 사태는 BEE법 시행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으나, 경제전문가는 BEE가 광업 포퓰리즘 및 국유화 주장에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주마(Zuma) 대통령은 10월 17일 최근 남아공 광업 파업 지속 등에 따른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경제 분야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였다. Gordhan 재무장관, Patel 경제개발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 및 COSATU(노조연맹), AMCU(광산건설노조), 흑인경제위원회, 경제인연합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광업 부문에서 시작된 파업 확산 및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하여 ① 기업 경영진, 고위공무원 임금 동결, ② 불법파업 및 계약 후 재임금협상 금지, ③ 광업분야 신 파트너십을 위한 협정 체결 및 이행 감독 ④ 신 치안유지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ction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동 대책 방안의 즉각적 실행을 통해, 정부가 사회, 경제 불안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남아공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제1야당 DA 및 일부 언론, 경제 전문가들은 동 발표에 대해 대외 신용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 리더십에

18) Lonmin社 Marikana 백금 광산 유혈사태 관련 구속 기소되었던 270 명의 광부들이 9월 3일 석방되었고, 9월 6일 Marikana 광산 사태 해결을 위한 부처합동위원회(IMC)는 ‘Lonmin Marikana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대언론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광산 건설노조(AMCU) 및 Lonmin社 광부대표는 동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바, 향후 진행될 임금협상 등에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Zuma 대통령은 2012년 9월 12일 국회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하여 Lonmin社의 저임금과, 광산의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문제를 제기하고 단순한 ‘말잔치’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대통령 발표 후, 10월 17일 남아공 증시(JSE)는 전일 대비 0.81% 증가한 채 마감됐고, 환율은 1.11% 하락한 R8.58/\$를 기록하였으나 10월 18일 다시 R8.66/\$를 기록하여 큰 기대감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 광산 파업과 관련해서도 10월 18일 일부 광부들이 근무에 복귀했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광산 부근 광부들 숙소의 수색을 단행하고 위험 무기를 발견하고 압수했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다.¹⁹⁾

최근 남아공 원자재 개발 산업 분야의 이러한 갈등은 광산업 분야의 발전과 해외 자본 투자 유치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해외 자본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의지는 약해 보인다.

II. 원자재 개발 협력 사례

한국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 포스코 등이 광물 개발 사업에 합작 투자 등의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업 참여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남아공의 경우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과의 에너지·광물자원 협력을 강화하여 왔으나 최근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의 자본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최근 남아공 광산 개발 투자 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 2002년 이후 남아공의 광물자원 개발수요가 확대되어 광물자원 개발투자비용이 증가하는 면

19) 한편, 남아공 광물자원부는 광물 고부가가치 촉진을 위해 수출 천연광물자원에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현재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는 광물은 다이아몬드 하나로 과징금액은 수출 총액의 5%이다.

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광물자원공사 및 포스코의 진출 현황을 살펴본다.

1. 광물자원공사

(1) 추진 전략

한국광물자원공사 남아공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현재 신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화와 연계시킨 건수는 사업 발굴 21건, 현지조사 10회, 사업화 2건이다. 또한 기존 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원을 통해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추진 목표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목표

- (투자) “2 + 2 plus α ” (Active 2B) 전략 완성 → 공사/민간 사업화 : 2건+
- (지원) 기존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원 → 조기안정화

전략 : 희유금속(망간, 크롬, 코발트 등), 동, 석탄(제철용)에 역량 집중

(2) 개발 사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아프리카 지역에 추진한 사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확보한 광물을 국내로 바로 들여오는 것보다는 향후 원자재 수급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확보해두는 성격이 강하다.

광종	기존 사업(사업명, 진출년도)	유망지역	
		모잠비크(Tete)	남아공/짐바브웨
석탄	남아공 (Vlakplaats, '01)	모잠비크(Tete)	남아공/짐바브웨
우라늄	탄자니아 (Mkuju, '11)	보츠와나(Sese)	나미비아 (Erongo)

제 2 장 남아공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광 종	기존 사업(사업명, 진출년도)	유망지역	
동 (코발트)		잠비아 (Copper belt)	보츠와나 (Kalahari belt)
니 켈	마다가스타르 (Ambatovy, '06)		
망 간		남아공(Kalahari)	
크 롬		짐바브웨 (Great Dyke)	남아공 (Bushveld)
희토류 등	남아공 (Zandkopsdrift, '11)	탄자니아 (WiguHill)	
플루토늄		남아공 등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남아공에서 사업화에 성공한 2개의 사업과 그 외 아프리카(탄자니아) 추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희토류) 탐사 사업 계약체결

- 위치 : Northern Cape주 Namaqualand 지역(수도 Pretoria 남서 1,400km)
- 추진업체 : 공사, 현대차, 삼성물산, GS칼텍스, 대우조선해양, 아주산업 등
- 사업단계 : FS, 매장량 추정 39.1 백만톤@TREO 2.01%
- 참여지분 : 1단계 10%(PEA공시), 2단계 1-(DFS완료) + 회사 지분 10%(옵션)
- 사업일정 : '12. 4Q FS 완료, '13 개발 착수
- 사업 체결일 : 2011년 12월 1일

② 남아공 망간광 신규 사업 발굴

○ 남아공 망간 광업 개요

- 매장량 : 40억톤(잠재량 기준 세계 1위, 74% 점유)
- 생산량 : 750만톤(세계 1위, 15%,호주660만톤, 가봉320만톤, 인도 280만톤, 브라질260만톤 順)

- 주요 신규 Project

개발 : Kalahari(A.Mittal) 300만톤, Tshisipi(POSCO) 150만톤, NCM (AML) 300만톤 등

탐사 : Amari 150만톤, Aquila 150만톤, Emang 100만톤 등

- 추진배경 : 고품위(Mn 46% ↑, 생산량 28%) 광석 부족심화에 따른 중저품위 광석 확보(동부메탈은 BHP 등 메이저 의존율 90%이상, 공급다변화 등 안정적 공급기반 필요)
- 대상지역 : Northern Cape州Kalahari 지역(수도 Pretoria 남서 800km)
- 추진업체 : 공사, 동부메탈
- 추진일정 : '11. 11~ 업체 발굴(협의), '12. 1Q(현지조사), 2Q 투자협상, 3Q 투자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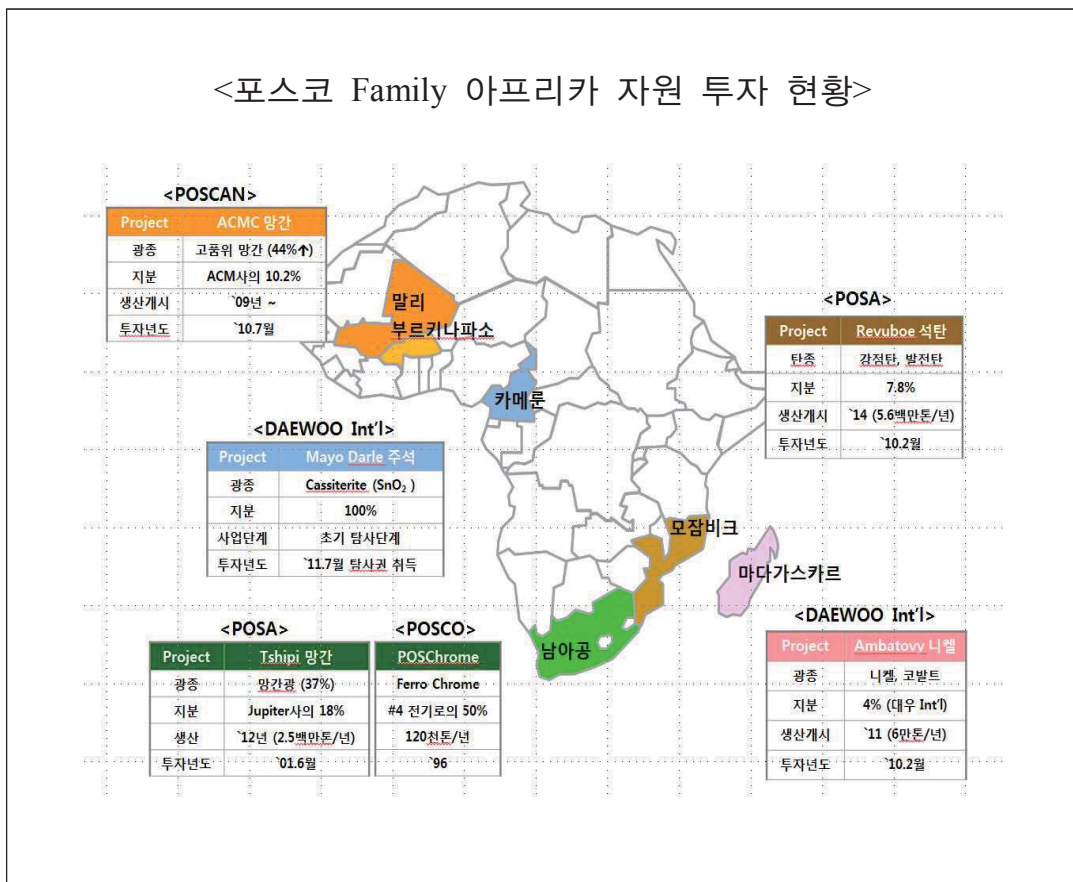
③ 탄자니아 므크주(우라늄) 탐사 사업 계약 체결(2011년 12월 28일)

- 위치 : Rubuma주 Mkuju 지역(Dar Es Salaam 남서 900km)
- 추진업체 : 공사
- 사업단계 : 기초탐사
- 참여지분 : 50%(350만\$, 탐사기간 2년)
- 사업일정 : '12. 1Q 탐사 착수

2. Pocso

우리나라의 對남아공 투자는 페로크롬 생산, 국내 도입을 위해 포스코 등이 지분 참여(50%, 2천만불 규모)한 Poschrome이 처음이다. 포스

코는 '96년 Poschrome 설립(요하네스버그 소재)한 이후 스테인리스 스틸의 원료가 되는 Ferro-chrome을 생산, 전량을 국내에 도입하였다. 현재 포스코는 남아공에 아프리카 법인을 설립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포스코 Family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자원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5 절 결 토

최근 아프리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원 확보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 측면에서도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그 중 남아공은 세계적인 광물 부국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편에 속하고 있어 남아공 원자재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남아공에 대한 협력관계나 투자는 미약한 상황이다. 실제 남아공에 진출해있는 전문가들은 흑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흑인 경제 육성 정책, 친노동 정책의 추진, 낮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복잡하고 엄격한 행정절차 등 실제 남아공에 대한 투자 가치는 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개발 가격 상승 이후 신흥 자원개발 시장으로서 남아공의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은 인정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원자재 개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 3 장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제 1 절 개 관

남아공의 경우 원자재 개발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법은 신광업법이라 불리는 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2002)²⁰⁾이다. 전통적으로 남아공 정부는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광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경제 구조의 개혁과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 등을 감안하여 1994년 구광업법(Mining Act) 및 2002년 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을 새롭게 개정하여 다양한 주체의 광업 전반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였고, 특히 신광업법의 제정을 통해서 백인 기업이 독점해온 광산업에 흑인들의 참여를 보장하였다.²¹⁾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의 경우 광물, 석유 개발, 환경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흑인 경제 육성 정책(Black Economic Empowerment: BEE)과 이를 뒷받침 하는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BBBEEA; Th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을 제정하여 광업부문의 주요 자산을 흑인소유 기업에게 이전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²²⁾

그 외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²³⁾,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 행정법²⁴⁾, 채굴권 등록 개정법²⁵⁾, 남아공 다이아몬드 개정법(1,2)²⁶⁾, 남아

20) Minerals and Petroleum Resources Development Act 2002

2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남아공 광업의 현황과 전망”, 「해외경제·투자정보」, 2010.7.2. p.1

2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위의 글, p.1

23)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Royalty Act, NO.28, 2008

24)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Royalty(Administration) Act, NO.29 2008

25) Mining Titles Registration Amendment Act, No.24, 2003

26) Diamonds Amendment Act Act, NO.29 of 2005, Diamonds Second Amendment Act, 2005.

공 귀금속 법²⁷⁾, 남아공 국가에너지 법²⁸⁾, 남아공 국가 에너지 규제법²⁹⁾, 남아공 다이아몬드 수출 과세법³⁰⁾ 등을 원자재 개발 관련 법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남아공의 광물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광범위 흑인경제 육성법과 함께 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의 관련 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 2 절 남아공 광물 개발 정책

I. 정책 목표 및 내용³¹⁾

1. 신광업정책의 수립 배경

남아공 정부는 과거 인종차별정책의 결과로 흑인들의 광업 참여가 배제되었다. 이에 1994년 신정부는 광업 현실을 고려하여 1998년 10월 20일 일반고시의 형태로 남아공 광업정책 백서(White Paper on A Minerals and Mining policy for South Africa)³²⁾를 발표하고 광업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남아공 정부는 1910년 이래 시장경제원리 및 민간주도 경제정책을 펴왔다. 1991년 광업법(Minerals Act)이 통과되어 정부는 광산업의 근로

27) Precious Metals Act, No.37 of 2005

28) National Energy Act, No.34 of 2008

29) National Energy Regulator Act(No.40. 2004).

30) Diamond Export Levy Act(No.15 2007)

31) 이준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원자재 개발 법제 현황 및 주요 내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재인용 및 참조

32) 의회가 승인한 이 백서는 만델라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국내외 광업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개발위원회를 주최로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광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이 문서는 정책설명서를 포함한 관련 문서만도 약 700쪽에 달한다.

조건 및 환경보호, 지속적인 광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및 재정적인 환경 조성, 필요한 기반시설 제공 및 관리 등을 수행해왔다. 이후 1994년에 민주규정(Democratic Rule)이 채택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나 국민의 대부분은 광업 참여 및 수익 분배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그간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여 광산업의 국제동향과 국제관례에 따라 남아공의 광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환경, 노동, 수리 등 관련 분야의 정책개발과 연계된 새로운 광업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02년 10월 의회에서 신광업법을 통과시켜 2004년 5월 1일 그 법을 발효함으로써 본격적인 신광업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³³⁾

2. 정책 목표

남아공 정부는 그간 백인정권하에서 배제된 흑인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광산업 개발이익의 균등 배분을 에너지·자원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익의 최대 확보를 위한 광물 자원 이용, 광물자원 개발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국제 경쟁력

33) 신광업법은 광업권원을 地소유자주의(Land Owner's Mining Scheme)에서 국가허가주의(State Permit Mining Scheme)로 전환하고, BEE에 의해 흑인들의 광업참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광업법(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이 2004년 5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기존 광업권자들은 흑인육성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현재 기존광업권체제(Old Order Mineral Right Scheme)에 따라 광산 개발을 수행하지 않는 휴면광업권은 1년 내에 신광업권체제(New Order Mineral Right Scheme)에 의해 광업권을 신청해야 하며, ② 기존의 탐사허가(Prospecting Permit)는 2006년 5월 1일로 종료되고 채광허가(Mining Licence)는 2009년 5월 1로 종료됨에 따라 New Mining Order에 의해 그 전에 광업권을 전환(Conversion)하여야 한다. ③ 전환(Conversion)은 새로운 광업법 체제에 따라 광업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전환(Conversion)은 BEE에 따라 전환 후 5년 이내에 지분의 15%를 역사적 불이익을 받은 시민(흑인)에게 이전하고, 10년 후엔 26%를 이전하는 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한다. ④ 신광업권 체제에 따라 신청하는 광업권은 흑인과 Empowerment Partnership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⑤ 신광업법체제에 따라 전환(Conversion)을 이행하지 않은 휴면광업권은 정부로 이전되고, 그 광업권이 신광업법에 따라 다시 신청해 시행될 때는 51%까지 BEE를 주장할 수 있다(인용).

확보를 통한 광산업 육성, 산업관계 개선, 광업정보접근시스템 구축, 국제 경쟁력이 있는 광업세율 보장, 신규 투자자의 참여 장벽 제거 등이다.

3. 주요 내용

신광업법이라 불리는 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에 따라 정부는 광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탐광권, 채굴권 및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광업법상 권리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³⁴⁾ 또한, 광산 개발과 함께 환경보존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광물자원의 개발 및 채광을 촉진하기 위한 광업권, 재정지원, 기술개발, 정보관리 등 모든 광업관련 분야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 광업회사 육성(Small-Scale Mining) 육성
- 국가광업촉진체제(National Mining Promotion Scheme) 수립 : 중소광업회사 및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금융 및 세제 혜택,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Council for Geoscience and Mintek” 등을 통한 광업 진흥 방안 수립
- 광물 수익(Mineral Beneficiation) 극대화 방안 추진 : 과거 철제품(ferrous commodity)/비철제품(nonferrous commodity)으로 분류한 지원제도 탈피, 광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지원제도 수립
- 광업투자 촉진을 위한 탐사정보의 제공체제 수립
- 신규투자자(특히 외국인투자)를 위한 투자우대제도 도입
- 모든 광업권을 국가가 보유할 수 있도록 현행 광업법규의 개정
- 새로운 광업법규가 시행될 때까지 광업권으로의 접근을 위한 과도적 광업체제 운영

34)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부존된 광물자원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광업권을 보유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주의를 폐지하고,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을 구분하여 토지 소유권에 상관없이 소정절차에 따라 정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 광업권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현재 광업 활동이 이뤄지는 광업권은 기득권을 존중, 일정기관이 경과후 광물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광업권에 대해서 정부가 회수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II. 흑인 경제 육성 정책³⁵⁾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Apartheid)에 의해 흑인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백인들의 경제적 부(wealth)를 창출해온 왜곡된 경제제도를 수정하고 그간 역사적 불이익을 받아온 흑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흑인정부는 광업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혁조치를 추진해왔다.

남아공 정부는 흑인경제육성정책에 근거하여 광업부문 주요 자산을 흑인 소유 기업에게 이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광업부문 총자산의 26%, 신규 광물개발 프로젝트의 51%를 흑인소유 기업의 배정을 추진 중이다.

흑인경제육성정책 (Black Economy Empowerment, BEE)³⁵⁾이란 약 80년간 백인정부가 추진한 인종차별정책으로 역사적인 불이익을 받은 흑인들(HDI; Histor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사업, 교육, 광업, 농업, 고용, 금융 및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흑인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 Mining Charter : 1993년 헌법이 제정되기 전 역사적 불이익을 받은 남아공 국민(HDSA; Historically Disadvantaged South Africans)의 석유 및 광물개발사업의 참여 및 이익배분 증진 목적으로 제정
- 남아공 광산업을 위한 포괄적 사회경제 활성화 헌장(The Broad-Based Socio-Economic Empowerment Charter for the South African Mining Industry)에 따라 흑인의 광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신제도 도입
- 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이 발효된 2004년 이후 5년까지는 적어도 기존 광업권 소유지분의 15%를 역사적 불이익을 받은 흑인들(HDI)에게 이전하고, 10년까지는 소유지분의 26%의 이전을 목표로 함.

35) 이준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원자재 개발 법제 현황 및 주요 내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재인용 및 참조

- 광업회사는 향후 5년(2010년)까지 “junior and senior management categories”에 HDI가 적어도 40%까지 참여하고, 여성인력이 1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 증대를 목표로 함.
- 남아공 광업현장을 위한 성과표(The Scorecard for the Broad Socio- Economic Empowerment Charter for the South African Mining Industry)에 의해 광물 및 석유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 HDI에게 배분되도록 광업권 소유지분의 이전 및 고용증진현황을 체크하도록 제도화

BEE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한 기본법이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BBBEEA; Th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이며, 5년 및 10년 단위로 설정한 BEE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을 강제하고 BBBEEA 성과표(The Scorecard of BBBEEA)에 따라 추진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 흑인경제활성화위원회(The Council of BEE)이다. 오늘날 남아공 생활환경에서 BEE가 관련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 3 절 남아공의 흑인경제육성법제 분석

과거 인종차별 정책으로 흑인들은 정치적 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소외되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교육이 제한되었고, 특정 직원군에 취업이 금지되었다. 넬슨 만델라 석방 이후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었고, 1994년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가 취임하였다.

1996년 완성된 남아공 민주 헌법은 과거 인종 차별 정책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불우한 조건에 있던 인종 그룹에 대해 정부 조달이나 입찰시 특혜 부여를 명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입법을 통해 이를 시행하

도록 규정하였다.³⁶⁾ 이후 2000년 우대 구매 정책 체계법³⁷⁾이 제정되었고, 2003년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³⁸⁾과 규칙들이 제정되었다.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은 흑인 경제 육성 정책과 관련된 법률로서 흑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주요 법률 내용과 모범 실무 규칙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 주요 내용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은 모두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간략한 법률이다. 1조는 개념 정의, 2조는 법의 제정 목적, 3조는 해석, 4조는 흑인 경제 육성 자문 위원회 구성, 5조는 자문 위원회의 기능, 6조는 자문 위원 구성 및 구성원 임명, 7조는 자문 위원회 헌법과 규칙, 8조는 자문 위원 관련 보수 및 비용 상환, 9조는 모범 실무 규칙, 10조는 모범 실무 규칙의 법적 지위, 11조는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의 정책, 12조는 변혁 현장, 13조는 위원회 자금 및 지원 업무, 14조는 법률의 규칙 제정, 15조는 법의 간략한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개념 조항인 제1조에서 중요한 개념은 ‘흑인(Black People)’이라는 것으로, 이는 총칭 개념³⁹⁾으로 아프리카 흑인(Africans), 흑백 혼혈(Coloured)과 남아공 태생의 인도후손(Indian)을 지칭한다.⁴⁰⁾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의 제정 목적은 전반적으로 흑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경제 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 흑인 남성뿐만 아니라 흑인

36) 남아공 헌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제217조 (2)항과 (3)항.

37)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 5 of 2000.

38)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 53 of 2003.

39) Generic term

40)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제1조

여성과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흑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며, 흑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 정책, 금융 지원을 장려하고자 제정되었다.⁴¹⁾

광범위 흑인 경제육성법은 흑인 경제 육성을 위해 ‘흑인 경제 육성 자문 위원회’⁴²⁾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³⁾ 이 자문 위원회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동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무역 산업부 장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장관, 대통령이 임명하는 10-15명 사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⁴⁴⁾

광범위 흑인 경제육성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무역 산업부 장관은 관보에 흑인 경제 육성 이행에 지침이 되는 ‘모범 실무 규칙’⁴⁵⁾을 제정할 수 있다. 모범 실무 규칙은 흑인 경제육성 정책의 개념, 추가 해석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입찰에서 우대 조건들과 흑인경제 육성을 판단하는 측정 요소 및 항목별 점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 ‘변혁 헌장(transformation charters)’ 제정을 통해 각 산업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⁴⁶⁾

모든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모범 실무 규칙을 참조하여 면허나 인허가 발급 시 측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입찰이나 정부 물품이나 서비스 조달 시 모범 실무 규칙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입찰 심의를 해야 한다.⁴⁷⁾

41)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제2조

42) Black Economic empowerment Advisory Council

43)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제3조

44)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제6조

45) Codes of good practice

46)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제9조.

47)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제10조.

II. 모범 실무 규칙

무역 산업부⁴⁸⁾는 2007년 모범 실무 규칙(B-BBEE Codes of Good Practice)을 관보에 게재하였는데, 동 규칙은 2007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모범 실무 규칙은 기업의 흑인 경제 육성에 참여도를 평가하여 점수로 환산하여 흑인경제 육성 점수(B-BBEE score)에 따라 각 기업의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B-BBEE status)’을 결정한다. 기업의 흑인 경제 육성 기여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7가지 요소가 사용된다. 즉 소유권(Ownership), 경영권(Management control), 고용평등(Employment Equity), 기술 개발(Skills Development), 우대 구매(Preferential Procurement), 기업 발전(Enterprise Development) 및 사회 경제 발전(Socioeconomic Development) 등이다. 각 요소에 부여된 점수는 아래와 표와 같다.

<흑인 경제 육성 채점표⁴⁹⁾>

평가 요소	점수 (Weighting)	관련 코드
소유권	20점	100
경영권	10점	200
고용평등	15점	300
기술개발	15점	400
우대구매	20점	500
기업 발전	15점	600
사회 경제적 발전	5점	700
합 계	100 점	

48)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49) Generic B-BBEE Scorecard

흑인 경제육성 참여 정도에 따라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이 결정된다.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에 대한 평가는 무역 산업부의 인가를 받은 검증 기관(verification agency)에서 한다. 무역 산업부는 ‘남아공 인증시스템’⁵⁰⁾이라는 기관을 통해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을 평가하는 인증기관들에게 인허가를 위임하였다.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을 평가하는 인증기관들은 무역산업부가 2008년 7월18일 관보에 발행한 ‘인증 매뉴얼(Verification Manual)’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을 매겨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 인증서’⁵¹⁾를 발행하여 준다. 동 인증서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흑인 경제 육성 채점표에 따라 얻은 점수를 환산하여 등급을 매기는데 점수에 따라 1등급에서 8등급까지로 나뉜다. 점수가 30점 이하인 기업은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을 따르지 않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아래 도표는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 및 해당 등급을 얻기 위한 점수, 타 기업이 거래시 상대방 기업으로 부터 얻게 되는 점수를 나타낸다.

B-BBEE 등급	합산 점수	B-BBEE 인정 등급(퍼센트)
1등급 (Level 1)	100점 이상	135%
2등급 (Level 2)	85점 - 100점	125%
3등급 (Level 3)	75점 - 84점	110%
4등급 (Level 4)	65점 - 74점	100%
5등급 (Level 5)	55점 - 64점	80%
6등급 (Level 6)	45점 - 54점	60%
7등급 (Level 7)	40점 - 44점	50%

50) South African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SANAS

51) B-BBEE Verification Certificate

B-BBEE 등급	합산 점수	B-BBEE 인정 등급(퍼센트)
8등급 (Level 8)	30 점 - 39점	10%
미준수 (Non-Compliant)	30점 미만	0%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예를 들면, 먼저 정부 부처나 공공 기업에서 조달이나 공사 입찰시 입찰 참가 자격으로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 4등급 이상으로 규정한 경우 4등급 이상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물품 구매를 할 경우 2개의 공급 업체로부터 동일한 가격의 견적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때 공급업체 B는 흑인 경제 육성 등급이 3등급인 반면 공급업체 C는 6등급이라고 하면, A는 공급업체 B를 선택하여야 자신의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즉 B의 등급이 3등급이므로 위의 도표를 보면 물품 구입 시 인정받는 점수 110%이므로 R1란드 지불시 R1.1란드를 지불한 것이 된다. 반면 C라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경우 C의 등급이 6등급이므로 구매 대금의 60%만 인정받게 되므로, R1란드 지불시 60 센트만 인정이 된다. 따라서 흑인 경제육성 채점표상 ‘우대 구매’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B 공급업체를 선택하게 된다.

1. 소유권 평가

흑인 경제육성 채점표상 가장 민감한 부분이 소유권에 대한 평가인 듯하다. 소유권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코드 100(Code 100)에 따르면, 평가 점수는 20점이며 보너스로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23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유권 평가의 채점표는 아래 표와 같다.

평가 기준		점 수	목 표
투표권 (Voting Right)	흑인이 투표권을 갖는 경우	3	25% + 1 투표권
	흑인여성이 투표권을 갖는 경우	2	10%
경제적 이익 (Economic Interest)	흑인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지분	4	25%
	흑인여성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분	2	10%
	특정 흑인계층의 경제적 이익	1	2.5%
실현 점수 (Realization Points)	소유권 성취	1	
	순수 가치	7	
보너스 점수	기업 소유권 참여에 신규 흑인 기업인 참여	2	10%
	직원 주식 참여 프로그램, 협동조합이 나 광범위 소유권 제도 등 기업 소유 권에 참여한 경우	1	10%
총 계		23	

그런데,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유권이나 지분의 일부를 남아공인에게 이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다국적 기업을 위해 소유권 평가 항목에 대하여 대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산 동등 프로그램’⁵²⁾이라고 한다. 소유권 평가의 20점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역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흑인 경제 육성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남아공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곤 감축 및 실업률 해소를 위해 책정된 경제정책인 ASGISA⁵³⁾, 남아공 내 부족한 기술인력 양성

52) Equity Equivalment Programme

53) Accelerated and Shared Growth Initiative for South Africa

을 위해 추진 중인 JIPSA⁵⁴⁾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참여하여 흑인 소유 50%의 기업이나 흑인 여성 소유 30% 이상인 기업 또는 흑인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50% 이상인 신생 기업 창출을 지원하므로 소유권 항목의 점수 20점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일시불로 또는 10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 지원 금액은 남아공에 운영하는 법인의 가치의 25% 또는 1년 총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은 자산 동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많은 비용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경영권

흑인의 기업 경영 정도에 따라 얻는 점수가 다른데, 흑인 경제 육성 채점표에 따르면 총 10점이며 보너스 점수는 1점이다. 점수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 기준	점 수	목 표
이사회에서 흑인 이사의 투표권 비율	3	50%
집행이사의 흑인 비율	2	50%
최고 상위 관리자 중 흑인 비율 ⁵⁵⁾	3	40%
기타 상위 관리자 중 흑인 비율 ⁵⁶⁾	2	40%
보너스: 독립 비집행 이사 중 흑인 비율 ⁵⁷⁾	1	40%
총 계	21 (20 + bonus 1점)	

54) Joint Initiative on Priority Skills Acquisition

55) Black senior top management

56) Black other top management

57) Black independent non-executive board members

3. 고용 평등

흑인의 고용 평등의 기회가 주어졌는가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는 흑인 장애인을 고용했는지, 최고 경영층에 흑인의 고용 비율, 중간 경영층과 하위 경영층의 흑인 고용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

평가 기준	점 수	목 표	
		1-5년	6-10년
총 근로자 중 흑인 장애인의 비율	1	2%	2%
총 근로자 중 흑인 상위 관리자 비율	5	43%	60%
총 근로자 중 흑인 중간 사원의 비율	5	63%	75%
총 근로자 중 흑인 말단 사원의 비율	4	68%	80%
보너스: 위의 각 항목에 대한 EAP ⁵⁸⁾ 목표 성취 또는 초과	3		
총 계	18 (15 + bonus 3점)		

4. 기술 개발

흑인 기술 향상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15점이 배점되어 있다. 점수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58)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평가 기준	점 수	목 표
흑인 근로자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한 기술 개발 비용	6	3%
흑인 장애 근로자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한 기술개발 비용	3	0.3%
교육훈련(learnship)에 참여한 흑인 근로자 숫자	6	5%
총 계	15	

5. 우대 구매

흑인 기업 육성을 위해 흑인 기업으로 부터 물품 조달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구매 비율에 따라 점수가 배정된다.

6. 기업 발전

평가 기준	점 수	목 표	
		1-5년	6-10년
총 구매대금에서 흑인 기업으로부터 구매 대금의 비율	1	2%	2%

평가 기준	점 수	목 표	
		1-5년	6-10년
총 구매대금에서 흑인 소규모 기업 ⁵⁹⁾ 또는 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 ⁶⁰⁾ 또는 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 ⁶¹⁾ 으로부터 구매 대금의 비율	5	43%	60%
흑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또는 흑인 여성 지분이 30%인 기업으로 부터 구매 대금의 비율	5	63%	75%
총 계	11 (10 + bonus 1점)		

흑인 기업 육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냐에 따라 점수가 배정된다. 여기서 기여의 의미는 보조금(grant), 융자(loan) 등의 금전적 지원과 무보수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전문직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비금전적 지원도 포함된다. 흑인 기업 육성에 투자한 연평균 지원 규모에 따라 점수를 주는데 배점은 15점이다. 목표 금액은 세후 순이익⁶²⁾의 3%이다.

7. 사회 경제적 발전

기업의 사회 경제적 발전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으로 재정적 지원이나 비금전적 지원 모두를 포함한다. 점수 배점은 5점이며, 목표는 세후 순이익의 1%이다. 따라서 흑인 기업 육성에 세후 순이익

59) Qualifying Small Enterprise (QSE)

60) Qualifying Small Enterprise (QSE)

61) Exempted Micro-Enterprise (EME)

62) Net Profit after Tax

3% 지원과 더불어 흑인 사회 경제 발전 기여에 세후 순이익 1%를 지원해야 하므로 총 4%의 세후 순이익을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을 위해 사용하는 결과가 된다.

8. 예외 규정

기업의 연 매출액이 5백만란드(R5 million) 이하인 기업을 ‘면제된 영세 기업’⁶³⁾이라고 부르며 ‘흑인 경제 육성 기여 4등급’으로 분류된다. ‘면제된 영세 기업’중에서 흑인 지분이 50%이상이면 ‘흑인 경제 육성 기여 3등급’으로 분류된다.

기업의 연 매출액이 5백만란드(R 5 million)에서 3천 5백만란드 (R 35 million) 사이인 기업은 ‘소규모 기업’⁶⁴⁾으로 분류되어 흑인 경제 육성 등급 평가의 7가지 요소 중에서 4개 요소만 충족시키면 된다. 이 경우 각 요소의 배당 점수는 25점이다.

법인을 설립한 후 1년 미만인 신생 기업(Start-Up Enterprise)은 1년간 ‘면제된 영세 기업’으로 분류되어 ‘흑인 경제 육성 기여 4등급’이 인정된다.

9. 분야별 현장

흑인 경제 육성법 제9(5)조에 의해 관보로 섹터 코드(Sector Codes)가 이미 공표된 분야가 있고, 아직 기안중인 분야도 있다. 여기서는 공표된 분야 중에서 대표적인 건설과 광업 분야만 다루고자 한다.

건설업 분야의 변혁기간은 7년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건설업 섹터 코드는 2009년 6월 5일 부터 시행되었는데, 7년이 끝나는 시점인 2016년까지 건설업 분야의 흑인 소유 지분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3) Exempted Micro-Enterprise: EME.

64) Qualifying Small Enterprise: QSE.

광산 헌장(Mining charter)은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⁶⁵⁾ 제100조 (2)(a)항에 의해 2004년 8월 13일에 공포되었고, 2010년 9월 10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에 의해 제정된 모범실무 규칙과 광산 헌장 사이 차이점을 갖고 있어 혼선이 있다. 모범 실무 규칙에서 ‘흑인(Black people)’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광산 헌장은 ‘역사적으로 불우했던 남아공인’⁶⁶⁾으로 개념 정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산 헌장은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광산 헌장은 실제 채광 등 생산을 하고 있는 광산 회사에만 적용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직접 생산에 종사하지 않지만 생산하는 광산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수송 및 판매에 종사하는 업체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3년 10월 발표된 광산 헌장에서 10년 안에 광산업의 흑인 소유를 26%로 목표로 하였다. 또한 제정 후 5년 이내에 광산업체 관리층에 40%를 흑인으로 확대하며, 그중에 10%는 흑인 여성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대략 8.9% 정도 흑인 소유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 개정된 광산 헌장은 2014년까지 광산업의 흑인 소유 26%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

제 4 절 남아공 광업법제 분석

I. 개 관

흑인들의 광업참여가 배제되었던 1991년 구광업법체계에서 2002년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의 제정으로 흑인들의 광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광업법 체계로 변화하였다.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정의

65)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Development Act 28 of 2002.

66) Historically Disadvantaged South African

(Definitions), 제2장 기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s), 제3장 행정(Administration), 제4장 광물 및 환경 규제(Miner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제5장(광물 및 채굴 개발 위원회(Mineral and Mining Development Board), 제6장 석유 탐사 및 생산(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제7장 일반 규정 및 보칙(General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별첨(Schedule) I, II로 전체 111개의 조문이다.⁶⁷⁾ 광물 및 석유 자원

67) 전체 조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정의

1. 정의

제 2 장 기본 원칙

2. 법의 목적

3. 국가 광물 및 석유 자원의 관리자

4. 법의 해석

5. 탐광권(prospecting right), 채굴권(mining right), 탐사권(exploration right) 또는 생산권의 법적 본질 및 그에 따른 권리자의 권리

6. 행정적 정의(administrative justice)의 원칙

제 3 장 행정

7. 공화국, 구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구역 부서

8. 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제 4 장 광물 및 환경 규제

9. 신청 절차의 순서(order)

10. 이해당사자 및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자문

11. 탐광권 및 채굴권의 이전가능성 및 저당

12. 역사적으로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원

13. 개략 탐사 허가 신청

14. 개략 탐사 허가의 발행 및 유효 기간

15. 개략 탐사 허가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16. 탐광권의 신청

17. 탐광권의 허여 및 유효 기간

18. 탐광권 갱신 신청

19. 탐광권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20. 광물의 제거 및 처분에 관한 허가

21. 개략 탐사 및 탐광 정보와 데이터

22. 채굴권 신청

23. 채굴권의 허가 및 유효 기간

24. 채굴권 갱신 신청

25. 채굴권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26. 광물 선광(beneficiation)

27. 채굴 허가의 발행 및 유효 기간

-
28. 광물 채굴 및 탐광 정보와 데이터
 29. 특정 정보 및 데이터의 직접적 제출에 관한 장관의 권한
 30. 정보 공개
 31. 개발 보류 승인권(retention) 신청
 32. 개발 보류 승인권의 발행 및 유효 기간
 33. 개발 보류 승인권의 신청 기각(refusal)
 34. 개발 보류 승인권 갱신 신청
 35. 개발 보류 승인권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36. 개발 보류 승인권의 이전불가능성
 37. 환경 관리 원칙
 38. 통합적 환경 관리 및 구제 책임
 39. 환경 관리 프로그램 및 환경 관리 계획
 40. 국가 부서의 자문
 41. 환경 손상의 복구에 관한 재정 제공
 42. 잔여 비축물 및 처리물 관리
 43. 폐업 인증의 발행
 44. 건물, 구조물 그리고 그 밖의 목적물의 제거
 45. 긴급 구제 조치의 비용 회복에 관한 장관의 권한
 46. 특정 사례에서의 환경 손상 구제에 관한 장관의 권한
 47. 권리, 허가(permit) 또는 승인(permission) 의 중지 및 취소에 관한 장관의 권한
 48. 특정 지역에서의 탐광 및 채굴 제한 또는 금지
 49. 탐광 및 채굴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장관의 권한
 50. 장관의 광물 자원 발생, 본질, 그리고 범위 조사
 51. 최적의 광물 자원 채굴
 52.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채굴 활동의 수익성 또는 비용 삭감 통지
 53.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지표권의 이용
 54. 특정 환경에서 집행가능한 배상
 55. 탐광 또는 채굴 목적의 부동산 수용에 관한 장관의 권한
 56. 권리, 허가, 승인 및 면허(licenses)의 실효
- 제 5 장 광물 및 채굴 개발 위원회(Mineral and Mining Development Board)
57. 광물 및 채굴 개발 위원회의 설립
 58. 위원회의 기능
 59. 위원회의 구성
 60. 위원의 자격상실
 61. 위원의 공석
 62. 위원의 임기 및 공석의 보충
 63. 위원회 회의
 64. 위원회의 분과위원회(committee)
 65. 위원회의 기금
 66. 위원회, 분과위원회, 워킹그룹 구성원의 보수
 67. 위원회 보고서
 68. 행정적 임무

제 6 장 석유 탐사 및 생산

69. 이 장의 적용
70. 지정 기관
71. 지정 기관의 임무
72. 지정 기관의 기금
73. 신청 요청
74. 개략 탐사 허가의 신청
75. 개략 탐사 허가의 발행 및 유효 기간
76. 기술적 협력 허가 신청
77. 기술적 협력 허가의 발행 및 유효 기간
78. 기술적 협력 허가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79. 탐사권 신청
80. 탐사권 허여 및 유효 기간
81. 탐사권 갱신 신청
82. 탐사권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83. 생산권 신청
84. 생산권 허여 및 유효 기간
85. 생산권 갱신 신청
86. 생산권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87. 석유 유층(petroleum reservoir)의 단위 개발
88. 정보 및 데이터
89. 재정 보증
90. 허가 또는 권리의 중단 및 취소에 관한 장관의 권한

제 7 장 일반 규정 및 잡칙

91. 탐광 지역, 채굴 지역 또는 유지 지역에서의 진입 권한
92. 정기 조사
93. 명령(order), 중지(suspension) 및 지도(instruction)
94. 권한있는 자에 대한 차단, 방해 또는 반대의 금지
95. 근로자에 대한 직업적 침해 금지
96. 내부적 이의 제기 절차 및 법원에의 접근
97. 서류의 송달
98. 위법행위
99. 벌칙
100. 광물 산업의 전환
101. 계약자 선정
102. 권리, 허가, 프로그램 및 계획의 변경
103. 위임 및 양도
104. 공동체에 특례적인 탐광 또는 채굴권
105. 토지의 소유자 또는 합법적 점유자는 추적불가능성
106. 이 법의 특정 규정상 예외
107. 지침
108. 사실의 입증

개발법에 광물 및 석유, 환경에 관한 광범위한 규율 내용을 담고 있다.

II. 기본 원칙

1. 목적

이 법은 (a) 남아공 내 모든 광물 및 석유 자원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의 권리를 인식하고, (b) 국가의 광물 및 석유 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권 원칙에 효력을 부여하고, (c) 남아공의 모든 국민이 국가의 광물 및 석유 자원에 평등히 접근하고, (d) 여성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한 자에게 광물 및 석유 산업에 진입하고 국가의 광물 및 석유 자원 활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기회 확장하고, (e) 남아공 내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f) 남아공의 사회·경제적 복지 신장 및 고용을 촉진하고, (g) 탐광, 탐사, 채굴 및 생산

109. 법의 국가 구속력

110. 법령의 폐지 및 개정, 그리고 과도기적 규정

111. 약칭 및 발효

별첨 1

법령의 폐지 및 개정

별첨 2

과도기적 준비

1. 정의

2. 일정의 목적

3. 계류 중인 탐광·채굴 신청

4. 탐사 활동의 지속

5. 생산 활동의 지속

6. 구 명령 탐광권의 지속

7. 구 명령 채굴권의 지속

8. 사용되지 않은 구 명령 권리 절차

9. 특정 권리, 유보, 허가의 지속

10.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의 지속

11. 대가 또는 로열티

12. 배상 지급

13. 부서 장의 특정 임무 : 지역 매니저 또는 장관이 수행한 광물 개발

활동상의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고, (h) 공정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질서 있고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국가의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을 보장함으로써 헌법 제24조에 효력 부여하고, (i) 운영 중인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채굴 및 생산권 보유자가 기여하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⁶⁸⁾

2. 국가 광물 및 석유 자원의 관리자

이 법에 따르면 광물 및 석유자원은 남아공 모든 국민의 유산이며 국가 소유로, 모든 남아공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광물 및 석유자원의 소유자는 국가로, 장관을 통하여 개략 탐사 승인(reconnaissance permission), 탐광권(prospecting right), 제거 승인(permission to remove), 채굴권(mining right), 채굴 허가(mining permit), 개발 보류 승인권(retention permit), 기술협력 허가(technical co-operation permit), 개략 탐사 허가, 탐사권 및 생산권의 부여, 발행, 거부, 통제, 행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재정부(the Minister of Finance)의 자문을 얻어 국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수수료 등을 결정한다. 이에 장관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가 환경 정책 프레임워크, 규범 및 표준 내에서 남아공의 광물 및 석유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⁶⁹⁾

3. 탐광권, 채굴권, 탐사권 또는 생산권의 법적 성격 및 권리

이 법에 따라 부여된 탐광권, 채굴권, 탐사권 또는 생산권은 광물 및 석유,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제한적인 실제 권리로 작용하며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향유한다. 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양도 받은 권리도 같다.

68)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2조

69)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3조

이 법의 대상이 되는 탐광권, 채굴권, 탐사권 및 생산권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고용인과 함께 관련 권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진입하고, 해당 토지에 공장, 기기 및 기계를 들일 수 있으며, 표면, 지하 또는 해수면 아래에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축할 수 있다. ② 그의 책임으로 또는 부여받은 권리에 따라 광물 및 석유를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할 수 있다. ③ 탐광, 채굴, 탐사 및 생산의 과정 중 발견한 모든 광물을 제거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④ 국가 수자원법⁷⁰⁾의 대상으로,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이전에 만들어진 토지, 굴착지에 위치한 자연적 샘, 호수, 강 또는 하천의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토지상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우물 등을 팔 수 있다. ⑤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부수적인 활동을 행할 수 있다.

누구든지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 또는 승인된 환경 관리 계획, 개략 탐사 허가, 탐광권, 제거 승인, 채굴권, 채굴허가, 개발 보류 승인권, 기술협력 허가, 탐사권 또는 생산권,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의 통지 및 자문이 없는 한 제거, 채굴, 기술 협력 활동의 수행, 개략 탐사 활동, 광물 및 석유의 탐사, 또는 이러한 행위들에 부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⁷¹⁾

4. 행정 원칙

행정적 정의 촉진 법⁷²⁾에 따라, 이 법에 따라 행해지는 모든 행정 절차와 의사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법성, 합리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결정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이유가 첨부되어야 한다.⁷³⁾

70) The National Water Act, Act No. 36 of 1998

71)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5조

72) the Promotion of Administrative Justice Act, Act No. 3 of 2000

73)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6조

Ⅲ. 광물 및 채굴 개발 위원회

이 법 제57조에 따라 남아공은 광물 및 채굴 개발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기능, 구성, 회의, 분과위원회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 능

위원회의 기능은 장관에게 위원회가 다루어야 하는 사안 또는 광물 및 석유자원개발법상의 사안, 국가 광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광물 및 채굴산업의 전환 및 축소,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행한다. 그리고 채굴 자격 부서(the Mining Qualifications Authority)의 자문을 얻어, 광물 및 채굴 산업 내의 인적 자원 개발의 진흥을 보장하여야 하한다. 또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사안과 이 법의 목적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장관에게 요청하고 보고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장관에 의해 요청된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⁷⁴⁾

2. 구 성

위원회는 14명 이상 18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공화국내 성별과 인종 구성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장관은 위원장, 최고 조사관, 관련 부서 대표자 3명, 노동계 대표자 3명, 산업계 대표자 3명, 비영리단체 대표자 최소 1명, 관련 공동체 기반 조직의 대표자 2명, 위원회의 역량 및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경험 및 전문성 또는 기술을 보유한 자로 최소 2명을 포함하여 위원들을 지정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이들 가운데 부위원장을 선출 한다.⁷⁵⁾

74)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58조

75)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59조

남아공 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국민이 아닌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파산, 법원에 의해 심신상실자로 선고된 자, 유죄판결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⁷⁶⁾의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⁷⁷⁾ 제60조에 해당하여 자격상실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의 공직에 있거나 물러난 경우, 위원회의 허가 없이 2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문서로 장관에게 사임을 표명하고 장관이 이를 수락한 경우, 장관에 의하여 위원직이 박탈된 경우⁷⁸⁾에는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재임이 가능하며,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장관은 해당 위원을 재선임할 수 있다. 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한 경우 잔여 임기 동안 제59조 제2항에 부합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⁷⁹⁾

3. 회 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부재시 장관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여야 한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부재시 부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회의에 불참한 경우, 참석 위원들은 그들 중 1인을 해당 회의의 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지정된 위원의 50%로 한다. 회의의 결정은 다수결로 하며, 동수인 경우 회의를 주재하는 자가 결정 투표권을 갖게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장관에게 해당 결정이 위원회를 통과한 날

76) 단, 지정일 전 특사 또는 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7)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60조

78)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그릇된 행동을 한 경우, 개인의 재정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안에 관한 조사, 청문 또는 결정에 참여한 경우, 위원 임무 수행의 결과 획득한 비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경우(단, 정보 접근 촉진법에 따라 요청된 경우는 제외) 등 위원회의 통합을 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에 장관은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79)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62조

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의 재정 또는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조사, 청문 또는 결정에서는 회피하여야 한다.⁸⁰⁾

4.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제7조에 규정된 각 지역별로 지역 채굴 개발 및 환경 위원회(a Regional Mining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mmittee)을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구적 또는 임시적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과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 대상으로 그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워킹 그룹을 둘 수 있으며 이러한 워킹 그룹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포함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또는 워킹그룹이 하나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분과위원회 또는 워킹그룹의 구성원 중 1인을 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또는 워킹그룹은 위원회에 책임이 있다.⁸¹⁾

5. 기 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회에 의해 해당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분배된 자금에 의한다(제65조). 또한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워킹그룹의 구성원은 그가 국가의 정규(full-time) 근로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의 지급 및 허가와 관련한 조건을 포함하여 장관이 재정부 장관과 함께 결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⁸²⁾ 위원회는 장관이 비정기적으로 요청하는 특정 보고서 외에 매년 3월 31일 전 이전 연도의

80)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63조

81)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64조

82)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66조

위원회 실적 및 당해 연도의 계획을 포함한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⁸³⁾ 위원회의 행정적 임무는 해당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장으로 지정된 부서의 담당관이 수행하여야 한다.⁸⁴⁾

IV. 광물 관련 규제

1. 개략 탐사(정찰)

(1) 신 청

장관에게 개략 탐사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 책임관청에, 규정된 방법으로,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지역 책임관은 개략 탐사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일한 광물 및 토지에 대하여 탐광권, 채굴권, 채굴허가 또는 유지(갱신)허가를 받은 자가 없는 경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책임관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해당 사실을 문서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반려한다.

(2) 허가 요건 및 유효 기간

신청이 접수된 경우, ① 신청인이 개략 탐사 작업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경우, ② 예상 비용이 개략 탐사 활동 및 탐사 작업 프로그램의 기간에 부합하는 경우, ③ 신청인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개략 탐사를 허가하여야 하며,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30일 내에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허가는 2년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

83)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67조

84)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68조

다. 또한 양도, 이전, 임대, 전대, 또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⁸⁵⁾

(3) 권리와 의무

개략탐사허가를 받은 자는 개략 탐사의 생성 및 토지 소유자 또는 합법적 점유자의 자문을 얻은 후 개략 탐사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해당 토지 내 모든 광물에 대한 탐광 또는 채굴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탐광권 또는 채굴권에게 적용되거나 부여되는 모든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⁸⁶⁾

2. 탐광권

(1) 신 청

탐광권 신청도 개략탐사의 신청과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탐광권 신청을 수리한 경우 지역 책임관은 14일 내에 환경 관리 계획 제출과 토지 소유자 또는 합법적 점유자,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를 30일 내에 문서로 통지한다. 환경 관리 계획 및 의견 청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지역 책임관은 신청서를 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장관은 탐광권 신청에 필요한 요건 등을 특정하여 관보에 게재할 수 있다.⁸⁷⁾

(2) 허가 요건 및 유효 기간

장관은 ① 신청인이 탐광 작업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탐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경우, ② 예상 비용이 탐광 활동 및 탐광 작업 프로그램의 기간에 부합하는 경우, ③ 탐광으로 인하여 용납할 수 없는 오염, 생태계 파괴 또는 환경에의 손상이 초래되

85)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14조

86)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15조

87)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16조

지 않을 것, ④ 채굴 보건 및 안전법⁸⁸⁾ 관련 규정을 준수할 능력을 갖춘 경우, ⑤ 신청인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탐광권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탐광권의 허가가 배제를 초래하거나, 공정한 경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청인의 통제 하에 있는 광물 자원의 집중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장관은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장관은 광물의 유형 및 탐광 프로젝트의 범위를 고려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이 법의 목적 중 하나인 “여성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한 자에게 광물 및 석유 산업에 진입하고 국가의 광물 및 석유 자원 활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기회 확장”⁸⁹⁾ 효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허가받은 탐광권은 제39조에 의한 환경관리프로그램이 승인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탐광권은 이 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 및 해당 권리에 규정된 요건의 적용 대상이며, 특정된 기간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⁹⁰⁾

(3) 갱신

탐광권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갱신이 필요한 이유와 기간 명시, 탐광 결과를 반영한 상세 보고서 및 탐광 비용 내역 첨부, 환경 관리 프로그램의 요건 준수 보고서, 집행 및 복구 예상 비용 내역 첨부, 갱신 기간에 관한 탐광 작업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8)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Mine Health and Safety Act, 1996 (Act No. 29 of 1996)

89) 제2조 제4호

90)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17조

장관은 위 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자가 탐광권의 조건 및 요건을 준수하고,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탐광 작업 프로그램 및 승인된 환경 관리 계획을 준수한 경우 갱신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3년은 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갱신될 수 있다. 한편 탐광권의 유효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갱신 신청이 허가되거나 거부되는 기간 동안 탐광권을 유효하다.⁹¹⁾

(4) 권리와 의무

탐광권 소유자는 제5조에 규정된 권리⁹²⁾ 외에 탐광 지역 및 광물에 대한 탐광권의 갱신을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탐광 지역 및 광물에 관한 채굴권을 신청하고 허가받을 권리, 탐광 과정 중 발견되거나 이러한 권리와 관련한 광물의 제거 및 처리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한편, 탐광권 소유자는 탐광권 허가의 효력이 발생한 날, 갱신이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채굴기록청(the Mining Titles Office)에 권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탐광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20일 또는 장관이 확대 인정한 기간 내에 탐광 활동에 착수하여야 한다. 탐광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탐광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탐광권의 조건 및 요건, 이 법의 관련 규정,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의

91)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18조

92) 이 법의 대상이 되는 탐광권, 채굴권, 탐사권 및 생산권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고용인과 함께 관련 권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진입하고, 해당 토지에 공장, 기기 및 기계를 들일 수 있으며, 표면, 지하 또는 해수면 아래에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축할 수 있다. ② 그의 책임으로 또는 부여받은 권리에 따라 광물 및 석유를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할 수 있다. ③ 탐광, 채굴, 탐사 및 생산의 과정 중 발견한 모든 광물을 제거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④ 국가 수자원법의 대상으로,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이전에 만들어진 토지, 굴착지에 위치한 자연적 샘, 호수, 강 또는 하천의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토지상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우물 등을 팔 수 있다. ⑤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부수적인 활동을 행할 수 있다(§5(3) (a)-(e)).

준수,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의 요건 준수, 국가에 규정된 탐광 수수료 납부, 탐광활동 중 제거 및 처리된 광물에 대한 로열티의 국가 납부 등의 의무를 진다.⁹³⁾

(5) 광물의 제거 및 처분에 관한 허가

탐광권 소유자는 탐광권에 부합하여 수행된 탐광 활동 중 발견한 광물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그것을 분석 또는 확인, 검증하는데 필요한 양만큼 제거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장관의 문서로 된 허가를 받아야 한다.⁹⁴⁾

(6) 개략 탐사 및 탐광 정보와 데이터

개략 탐사 및 탐광권 소유자는 등록관청 및 영업장에서 탐광 활동 및 활동의 결과, 관련한 비용, 그리고 핵심 데이터와 로그 데이터를 적절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탐광 활동의 진척 상황 보고 및 데이터를 규정된 방법 및 규정된 주기에 따라 지역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핵심 데이터 및 로그 데이터 등 모든 기록은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거나 파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지역 책임관의 문서 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채굴권

(1) 신 청

채굴권 신청도 개략탐사 및 탐광권의 신청과 동일하게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 책임관청에 규정된 방법으로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동일한 광물 및 토지에 대하여 탐광권, 채굴권, 채굴허가 또는 개발 보류 승인을 받은 자가

93)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19조

94)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20조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책임관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해당 사실을 문서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반려한다. 지역책임관이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역 책임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경영향 평가의 수행 및 환경 관리 프로그램의 승인 제출,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다른 이해 관계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의견 청취를 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관은 채굴권 신청에 필요한 요건 등을 특정하여 관보에 게재할 수 있다.⁹⁵⁾

(2) 허가 요건 및 유효 기간

장관은 ① 해당 광물이 채굴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최적화되어 채굴될 수 있는 경우, ② 신청인이 채굴 작업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경우, ③ 재정 계획이 채굴 활동 및 채굴 작업 프로그램의 기간에 부합하는 경우, ④ 채굴로 인하여 용납할 수 없는 오염, 생태계 파괴 또는 환경에의 손상이 초래되지 않을 것, ⑤ 신청인이 채굴 보건 및 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능력을 갖춘 경우, ⑥ 신청인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⑦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허가가 취약 계층의 보호 및 남아공의 사회·경제적 복지 신장 및 고용 촉진⁹⁶⁾을 실현하고, 광물 산업의 전환⁹⁷⁾, 그리고 사회·노동 계획에 규정된 현장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채굴권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결정을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채굴권은 환경 관리 프로그램이 승인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채굴권은 이 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 및 해당 권리에 규정된

95)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22조

96) 구체적으로는 이 법 제2조 제4호, 제6호에 규정된 목적을 실현하여야 한다.

97) 구체적으로는 이 법 제100조에 해당한다.

요건의 적용 대상이며, 특정된 기간 동안 유효하고, 이 기간은 30년을 넘을 수 없다.⁹⁸⁾

(3) 갱신

채굴권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이 필요한 이유와 기간 명시,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의 요건 준수 보고서, 집행 및 복구 예상 비용 내역 첨부, 갱신 기간에 관한 채굴 작업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관은 위 절차 및 채굴권의 소유자가 채굴권의 조건 및 요건을 준수하고,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채굴 작업 프로그램의 준수, 규정된 사회·노동 계획의 요건 준수, 그리고 승인된 환경 관리 계획을 준수하는 경우 갱신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갱신은 30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갱신될 수 있으며 채굴권의 기록상 명시된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러한 신청이 허가되거나 거부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채굴권은 유효하다.⁹⁹⁾

(4) 권리와 의무

채굴권 소유자는 제5조에 규정된 권리¹⁰⁰⁾ 외에 채굴 지역 및 광물에 대한 채굴권의 갱신을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98)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23조

99)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24조

100) 이 법의 대상이 되는 탐광권, 채굴권, 탐사권 및 생산권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고용인과 함께 관련 권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진입하고, 해당 토지에 공장, 기기 및 기계를 들일 수 있으며, 표면, 지하 또는 해수면 아래에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축할 수 있다. ② 그의 책임으로 또는 부여받은 권리에 따라 광물 및 석유를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할 수 있다. ③ 탐광, 채굴, 탐사 및 생산의 과정 중 발견한 모든 광물을 제거 또는 처분할 수 있

한편, 채굴권 소유자는 채굴권 허가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갱신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채굴기록청(the Mining Titles Office)에 권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채굴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20일 또는 장관이 확대 인정한 기간 내에 채굴 활동에 착수하여야 한다. 채굴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채굴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채굴권의 조건 및 요건, 이 법의 관련 규정,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의 준수,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의 요건 준수, 규정된 사회·노동 계획의 요건 준수, 국가에 로열티 납부하는 등의 의무를 진다. 또한 이 법 제2조 제d호 및 제f호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100조에 규정된 현장 및 사회·노동 계획 준수에 관한 규정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¹⁰¹⁾

(5) 광물 선광(beneficiation, 選鑛)¹⁰²⁾

장관은 남아공 내의 광물 선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발의하거나 진흥할 수 있다. 장관은 통상 산업부 장관(the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의 자문 및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남아공 내 경제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특정 광물을 발견한 경우, 장관의 자신이 결정한 조건의 대상이 되는 선광을 촉진할 수 있다. 외국에서 남아공 내 채굴된 광물을 선광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장관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¹⁰³⁾

다. ④ 국가 수자원법의 대상으로,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이전에 만들어진 토지, 굴착지에 위치한 자연적 샘, 호수, 강 또는 하천의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토지상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우물 등을 팔 수 있다. ⑤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탐광, 채굴, 탐사 또는 생산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부수적인 활동을 행할 수 있다(\$5(3)(a)~(e)).

101)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25조

102) 특정한 유가(有價)광물을 다른 구성성분에서 물리적·기계적으로 분리하는 조작 및 그 관련기술. 부유·자력(磁力)·비중·정전(靜電)·방사선 등의 각종 기계선광법이나 육안으로 판정하는 수선법(手選法)이 있다(출처 : 원자력용어사전, 2011,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03)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26조

4. 채굴 허가

채굴 허가는 해당 광물이 2년의 기간 동안 최적으로 채굴될 수 있는 경우, 채굴 지역이 1.5 헥타르를 넘지 않는 경우 발행될 수 있다. 장관에게 채굴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 책임관청에 규정된 방법으로, 수수료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 책임관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동일한 광물 및 토지에 대하여 탐광권, 채굴권, 채굴 허가 또는 개발 보류 승인권을 받은 자가 없는 경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 책임관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해당 사실을 기입한 문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지역책임관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환경 관리 계획의 제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 제출을 30일 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채굴 허가의 소유자는 그의 고용인과 함께 관련 권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토지 소유자 또는 합법적 점유자의 자문을 얻은 후 진입하고, 해당 토지에 공장, 기기 및 기계를 들일 수 있으며, 표면, 지하 또는 해수면 아래에 채굴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축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수자원법의 대상으로, 탐광, 채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이전에 만들어진 토지, 굴착지에 위치한 자연적 샘, 호수, 강 또는 하천의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토지상 탐광, 채굴과 관련하여 필요한 우물 등을 팔 수 있다. 한편 국가에 로열티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의 책임 하에 허가와 관련한 광물을 해당 채굴 지역 내에서 채굴할 수 있다.

이러한 채굴 허가는 특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한해 3회 갱신될 수 있다. 양도, 이전, 임대, 전대, 장관의 동의 없는 기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장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채굴 프로젝트의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¹⁰⁴⁾

5. 개발보류 승인권(retention) 허가

(1) 신청

개발보류 승인권 신청도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 책임관청에, 규정된 방법으로, 수수료를 첨부하여 개발 보류 승인권을 신청하는 이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법 제32조 제1항의 개발 보류 승인권의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내임을 밝히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지역 책임관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인이 해당 탐광권의 보유자인 경우에는 개발 보류 승인권 신청을 수락하여야 한다.¹⁰⁵⁾

(2) 허가 요건 및 유효 기간

장관은 탐광권의 보유자가 신청과 관련한 토지를 탐광하고, 탐광 활동 및 가능한 탐사를 완료하고, 채굴 가능성이 있는 광물의 존재를 입증하고, 시장을 조사하고 해당 광물의 채굴이 시장 여건상 경제적이지 않음을 발견하고, 이 법 기타 다른 관계 법령 및 탐광권의 요건을 준수한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부된 개발 보류 승인권은 탐광권의 조건 및 요건을 중단시키고, 탐광권의 효력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탐광권의 기간은 개발 보류 승인권 기간에 따라 연장된다.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도 유효하다. 개발 보류 승인권은 허가 내 특정된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러한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¹⁰⁶⁾

한편, 장관은 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와 장관의 요청에 의한 위원회의 자문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채굴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광

104)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27조

105)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31조

106)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32조

물인 경우, 허가로 인해 배제를 초래하거나 공정한 경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신청인의 통제 하에 있는 광물 자원의 집중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¹⁰⁷⁾

(3) 갱신

개발 보류 승인권의 신청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개발 보류 승인권의 발부 시점의 현황 여건 보고서, 갱신이 필요한 이유와 기간을 포함하여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이 이 법, 기타 다른 관련 법령 및 개발 보류 승인권의 조건을 준수하였을 것, 그리고 시장 여건이 여전히 우세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갱신을 허가할 수 있다. 개발 보류 승인권은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¹⁰⁸⁾

(4) 권리와 의무

개발 보류 승인권 소유자는 유지 지역 및 광물에 대한 채굴권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한편,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의 효력 발생 및 규정된 유지 수수료의 납부, 6개월 주기의 경과 보고서를 지역 책임관에게 제출한 의무를 진다. 경과보고서에는 우세한 시장 여건, 해당 광물 및 토지에 대한 개발 보류 승인권의 효과 및 필요성, 유효 기간 도과 전 채굴 활동의 착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는 노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¹⁰⁹⁾

이러한 개발 보류 승인권은 양도, 이전, 임대, 전대 또는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07)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33조

108)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34조

109)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35조

6. 기 타

(1) 신청 절차의 순서

지역책임관이 동일한 광물 및 토지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탐광권, 채굴권 또는 채굴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일자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일자의 경우 동시에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장관은 역사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신청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¹¹⁰⁾

(2)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탐광권, 채굴권, 채굴허가 신청이 접수된 후 14일 내에 장관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 당사자 및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탐광권, 채굴권 또는 채굴허가의 부여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 책임관은 지역 채굴 개발 및 환경위원회에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려할 것과 이에 대하여 장관에게 자문할 것을 알려야 한다.¹¹¹⁾

(3) 탐광권 및 채굴권의 이전 가능성 및 저당

탐광권, 채굴권 또는 이러한 권리에 따른 이해 관계, 또는 기업의 통제 이익은 양도, 이전, 임대, 전대, 장관의 동의 없는 기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열거된 기업의 통제 이익 변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동의에는 권리를 이전 받는 자가 해당 권리의 조건 및 요건, 의무의 준수 및 이행이 가능한 경우, 제17조(탐광권의 허가 요건) 또는 제23조(채굴권의 허가 요건)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권리의 이전 등이 가능하다.

110)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9조

111)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10조 제2항

한편, 탐광 또는 채굴 프로젝트의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금 또는 보증을 얻기 위하여 권리 또는 이익상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은행법¹¹²⁾에 따라 규정된 은행, 장관에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법에 따라 규정된 은행 등록부에 의하여 승인된 그 밖의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그러나 해당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탐광권 또는 채굴권의 양도, 임대, 전대, 저당권의 설정 행위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채굴기록청의 등록부상 기재되어야 한다.¹¹³⁾

(4)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장관은 탐광 또는 채굴 활동을 수행하는 역사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모든 자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해당 허가에 이를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 광물 자원에의 평등한 접근을 촉진하고, 신청인의 재정 상황, 광물 및 채굴 산업의 소유 구조의 변환, 동 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 등 목적에 부합하는 탐광 또는 채굴 프로젝트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고려함에 있어 장관은 국가의 관련 기관에 탐광 또는 채굴 프로젝트 개발상 신청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¹¹⁴⁾

(5) 정보의 기록 및 보고

탐광권 또는 개략 탐사 허가의 소유자는 등록 관청 또는 영업장에서 탐광 활동 및 활동의 결과, 관련한 비용, 그리고 핵심 데이터와 로그 데이터를 적절히 기록하여야 한다.

112) the Banks Act, 1990 (Act No. 94 of 1990)

113)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11조

114)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12조

채굴권 또는 채굴 허가의 보유자, 또는 하나의 광산으로부터 분리된 공장의 운영 책임자는, 정확한 정보 및 월별 데이터, 대차대조표 및 이익과 손실을 반영한 연례 재정 감사 보고서 또는 재정 진술서, 이 법 제2조 제d호 및 제f호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100조에 규정된 현장 및 사회·노동 계획의 준수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¹¹⁵⁾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법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a) 탐광권, 채굴권, 개발 보류 승인권 또는 채굴 허가 신청인, (b) 탐광권, 채굴권, 개발 보류 승인권 또는 채굴 허가 소유자, 탐광권, 채굴권, 개발 보류 승인권 또는 채굴 허가, 또는 (c) 그러한 권리와 허가의 신청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 및 합법적 점유자에게 특정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지시할 수 있다.¹¹⁶⁾

(6) 정보의 공개

이 법 제21조, 제28조, 제29조에 의하여 제출된 정보 및 데이터는 이 법의 제2조 제c호, 제d호, 또는 제e호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정보 접근권의 실현 목적 달성, 이미 공적으로 사용가능한 정보 또는 데이터의 경우, 관련 권리, 허가 기간이 도과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러한 권리 및 허가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방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누구에게든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또는 데이터의 제공자에 의해 기밀로 제공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제공한 자는 어떠한 정보가 기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비공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역 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115)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28조

116)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29조

한편 국가 또는 국가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정보 또는 데이터의 선의 또는 (경)과실로 인한 공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 및 정보 해석의 정확성 및 완료성을 보장하지 않는다(제30조).

V. 석유 관련 규제

1. 지정 기관

석유의 탐사권과 생산권의 허가, 기술협력 허가, 개략 탐사 허가의 발행을 규정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은 국가 기관, 국영 기업 등을 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70조). 지정기관은 석유 생산을 위한 내륙 및 해안 탐사의 촉진, 개략 탐사 허가, 기술협력 허가, 탐사권 및 생산권에 대한 신청 접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장관에의 권고, 허가 또는 권리의 준수에 관하여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및 모니터링, 석유 관련 지질학·지구 물리학적 정보의 수집, 유지, 저장, 해석, 평가, 가치 창출 및 전파, 국가적 이익 또는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석유의 탐사 및 생산과 관련한 정보를 장관에게 통지, 계약자 또는 정부 기업이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석유와 관련한 정찰 활동에 관한 자문과 권고를 장관에게 제공, 개략 탐사 허가, 기술 협력 허가, 탐사권 및 생산권 관련 수수료 및 대가의 수령, 환경 관리 계획, 환경 관리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및 이의 개정안의 승인에 관하여 심사하고 장관에 권고, 장관이 비정기적으로 결정하는 석유에 관한 다른 임무의 수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¹¹⁷⁾

이러한 지정 기관의 기금은 국회가 분배한 기금에 의한다. 지정 기관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 및 컨설팅 서비스, 다른 국가의 동등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17)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71조

장관은 관보상 통지를 통하여 탐사 및 생산권의 신청을 유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통지상 그러한 권리의 조건 및 요건, 지정 기관에의 등록 기간을 특정할 수 있다. 지정 기관은 유인의 대상이 되지 않은 탐사 및 생산권 신청을 직접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정 기관은 신청 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 이를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제73조).

2. 개략 탐사 허가

(1) 신청

개략 탐사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기관에, 규정된 방법으로,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기관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지역의 전 범위 내에서 석유에 대한 기술 협력 허가, 탐사권 또는 생산권을 보유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 기관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해당 사실을 기입한 문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지정 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정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환경 관리 프로그램의 제출, 이해 당사자에게의 통지 및 자문을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¹¹⁸⁾

(2) 허가 요건 및 유효 기간

장관은 신청인이 개략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경우, 예상 비용이 개략 탐사 활동 및 개략 탐사 프로그램의 기간에 부합하는 경우, 개략 탐사로 인하여 용납할 수 없는 오염, 생태계 파괴 또는 환경에의 손상이 초래되지 않을 것, 청인이 채굴 보전 및 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능력을 갖춘 경우, 신청인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개략 탐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118)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74조

한편, 장관은 신청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략 탐사 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장관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일로부터 30일 내에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략 탐사 허가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조건 및 요건의 대상이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며, 양도할 수 없고, 갱신 될 수도 없다. 또한 개략 탐사허가의 보유자는 개략 탐사 프로그램에 따라 관련 지역에서의 석유에 관한 개략 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령상의 관련 규정, 개략 탐사허가의 요건 준수, 그리고 지정기관에 규정된 개략 탐사 허가 수수료 납부할 의무를 진다.¹¹⁹⁾

3. 기술 협력

(1) 신 청

장관에게 기술 협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관에 규정된 방법으로, 수수료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지역의 전 범위 내에서 석유에 대한 기술 협력 허가, 탐사권 또는 생산권을 보유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 협력 신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 기관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해당 사실을 기입한 문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¹²⁰⁾

(2) 허가의 요건 및 유효 기간

정관은 신청인이 기술 협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경우, 예상 비용이 기술 협력 활동 및 기술 협력 프로그

119)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75조

120)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76조

램의 기간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기술 협력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30일 내에 문서로 허가 거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기술 협력 허가는 이 법 규정 요건의 대상이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유효하며, 양도 및 갱신이 불가하다.¹²¹⁾

(3) 권리와 의무

기술 협력 허가 소유자는 해당 허가와 관련한 지역에서의 탐사권 신청 및 허가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기술 협력 허가의 소유자는 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관련 지역에서의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령상의 관련 규정, 기술 협력 허가의 요건 및 조건의 준수 의무 등을 진다.

4. 탐사권

(1) 신청

장관에게 탐사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기관에 규정된 방법으로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기관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지역의 전 범위 내에서 석유에 대한 기술 협력 허가, 탐사권 또는 생산권을 보유한 자가 없는 경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 기관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한편, 지정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하고 자문을 얻을 것, 120일 내에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1)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77조

등록된 탐사권 신청에 있어 모든 기술 협력 허가는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이 허가 또는 거부될 때까지 유효하다.¹²²⁾

(2) 허가 요건 및 유효 기간

장관은 신청인이 탐사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탐사 활동을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경우, 재정 계획이 탐사 활동 및 탐사 작업 프로그램의 기간에 부합하는 경우,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승인한 경우, 채굴 보전 및 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능력을 갖춘 경우,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기술 협력 허가가 있는 경우 해당 기술 협력 허가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부여가 제2조 제4호 그리고 제6호에 규정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경우 탐사권을 허가하여야 한다. 장관은 탐사 프로젝트의 필요성 및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이 법 제2조 제4호 “여성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한 자에게 광물 및 석유 산업에 진입하고 국가의 광물 및 석유 자원 활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기회 확장”의 효력을 발생 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장관은 신청인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탐사권 허가를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탐사권은 환경 관리 프로그램이 승인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탐사권은 해당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고,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¹²³⁾

122)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70조

123)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80조

(3) 갱 신

장관에게 탐사권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기관에 규정된 방법으로,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갱신이 필요한 이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탐사 결과 및 그 결과의 해석, 탐사 비용의 세부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의 요건 준수 보고서, 집행 및 예상 비용의 복구 내역첨부, 갱신 기간에 관한 탐사 작업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위의 절차를 갖추어 신청하고 탐사권의 보유자가 탐사권의 조건 및 요건을 준수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상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탐사 작업 프로그램 및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한 경우 갱신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탐사권은 각각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최대 3회에 한하여 갱신될 수 있으며, 탐사권의 기록상 명시된 유효기간 도과 후에도, 이러한 신청이 허가되거나 거부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탐사권은 유효하다.¹²⁴⁾

(4) 권리와 의무

탐사권 소유자는 제5조의 권리와 더불어 탐사 지역 및 석유에 관한 생산권을 신청하고 허가 받을 배타적인 권리, 탐사 지역 및 석유에 관한 탐사권의 갱신을 신청하고 허가 받을 배타적인 권리, 탐사 과정 중 발견된 석유 샘플의 제거 및 처리에 대한 배타적 권리, 탐사권을 양도 또는 그에 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한편 탐사권의 소유자는 효력이 발생하거나 갱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굴기록청에 권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탐사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탐사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탐사권의 조

124)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81조

건 및 요건, 이 법의 관련 규정,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의 준수, 환경 관리 계획의 요건 준수, 지정 기관에 규정된 탐광 수수료 납부, 탐사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또는 장관이 인정한 확대 기간 내에 탐사 활동에 착수할 의무를 진다.¹²⁵⁾

5. 생산권

(1) 신청

장관에게 생산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관에 규정된 방법으로,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갖추고, 해당 지역의 전 범위 내에서 석유에 대한 기술 협력 허가, 탐사권 또는 생산권을 보유한 자가 없는 경우 신청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청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 기관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문서로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이 신청을 수리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이해 관계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청취를 할 것, 통지일로부터 180일 내에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¹²⁶⁾

(2) 허가 요건 및 유효 기간

장관은 신청인이 생산 작업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생산 활동을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경우, 재정 계획이 생산 활동 및 생산 작업 프로그램의 기간에 부합하는 경우, 생산으로 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또는 손상이 초래되지 않을 것, 신청인이 채굴 보전 및 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능력

125)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82조

126)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83조

을 갖춘 경우, 신청인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탐사권의 조건 및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회·노동 계획을 위한 재정을 제공하였을 것, 석유가 생산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최적으로 생산될 수 있을 것, 이러한 권리의 허가가 제2조 제4호 그리고 제6호에 규정된 목적을 실현하고 제100조에 규정된 현장 및 규정된 사회·노동 계획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 생산권을 허가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권의 허가를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30일 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생산권은 해당 권리에 규정된 조건과 요건의 적용 대상이고, 특정된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은 30년을 넘을 수 없다. 이러한 생산권은 이 법 제39조 제4항에 규정된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의 효력 발생 일에 효력이 발생한다.¹²⁷⁾

(3) 갱 신

장관에게 생산권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권의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하나, 추가로 갱신이 필요한 이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생산 결과 및 그 결과의 해석, 탐사 비용의 세부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의 첨부,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의 요건 준수 보고서, 집행 및 예상 복구 비용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장관은 갱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신청인이 생산권의 조건 및 요건을 준수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상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생산 작업 프로그램을 준수한 경우, 규정된 사회·노동 계획의 요건을 준수한 경우,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갱신을 허가하여야 한다.

127)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84조

한편, 탐사권은 30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갱신될 수 있으며, 생산권의 기록상 명시된 유효기간 도과 후에도, 이러한 신청이 허가되거나 거부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생산권은 유효하다.¹²⁸⁾

(4) 권리와 의무

생산권의 소유자는 탐사 지역 및 석유에 관한 생산권의 갱신을 신청하고 허가받을 배타적인 권리, 생산 과정 중 발견된 석유의 제거 및 처리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제11조에 따라 생산권을 양도 또는 그에 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한편, 생산권의 소유자는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갱신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채굴기록청에 권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된 생산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탐사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생산권의 조건 및 요건, 이 법의 관련 규정,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의 준수,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 및 규정된 사회·노동 계획의 요건 준수, 국가에의 로열티 납부, 생산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장관이 인정한 확대 기간 내에 생산 활동에 착수할 것, 환경 관리 프로그램 및 사회·노동 계획의 준수 의무를 진다.¹²⁹⁾

6. 기 타

(1) 석유 유층(petroleum reservoir)의 단위 개발

탐사권 또는 생산권이 허가된 지역에서 다른 탐사권 또는 생산권이 허가된 지역으로 동일한 석유 유층의 일부가 지질학적으로 형성된 경우, 그러한 권리의 소유자들은 석유 유층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획에 대한 장관의 승인을 얻

128)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85조

129)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86조

기 위하여 각자의 탐사권 또는 생산권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지정 기관에 해당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¹³⁰⁾

(2) 정보 및 데이터

개략 탐사 활동, 기술 협력 조사, 탐사 활동 또는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허가 및 권리의 보유자는 그러한 정보, 데이터, 보고서 및 그에 대한 해석을 지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접근 촉진법에 따라, 지정 기관에 제출된 모든 정보, 데이터, 보고서 및 그에 대한 해석은 데이터 획득으로부터 4년을 넘지 않는 기간, 그러한 정보, 데이터, 보고서 및 그에 대한 해석이 관련한 허가 또는 권리가 소멸, 취소 또는 종료된 날, 또는 그러한 허가 및 권리와 관련된 지역이 방치되거나 포기된 날까지는 기관에 의하여 기밀로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국가 또는 국가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정보 또는 데이터의 선의 또는 (경)과실로 인한 공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 데이터 또는 이의 해석의 정확성 및 완료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¹³¹⁾

(3) 재정 보증

권리 보유자가 지정 기관에 자신의 모든 탐사 및 생산 작업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재정의 사용가능성을 보증하지 않는 한, 탐사 활동 및 생산 활동은 개시될 수 없다.¹³²⁾

(4) 허가 또는 권리의 중단 및 취소에 관한 장관의 권한

장관은 제47조(권리, 허가, 승인의 중지 및 취소에 관한 장관의 권한)에 규정된 절차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개략 탐사 허가, 기술 협력 허가, 탐사권 또는 생산권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¹³³⁾

130)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87조

131)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88조

132)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89조

133)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90조

VI. 환경 관련 규제

1. 환경 관리 원칙

국가 환경 관리 법¹³⁴⁾ 제2조에 규정된 원칙은 모든 탐광 및 채굴 활동과 그러한 활동에 관련된 사안에 적용되며, 이 법의 환경 요건의 해석, 행정 및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모든 탐광 또는 채굴 활동은 사회, 경제, 환경 요소를 탐광 및 채굴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시와 통합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광물 자원의 활용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¹³⁵⁾

2. 통합적 환경 관리 및 규제 책임

개략 탐사 허가, 탐광권, 채굴권, 채굴허가 또는 개발 보류 승인권의 소유자는 항상 국가 환경관리법 제5장의 통합 환경 관리의 일반 목적에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제27조 제7항에 규정된 탐광 또는 채굴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을 고려, 조사, 평가 및 소통하여야 한다.

환경 영향을 고려함에는 환경 관리 계획 또는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관이 다르게 지시하지 않는 한, 정찰, 탐광 또는 채굴 활동의 통합적 일부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반 원칙에 따라 탐광 또는 채굴 활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환경을 자연적 또는 결정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략 탐사, 탐광 또는 채굴 활동, 그리고 그러한 권리, 허가 지역 내외부에 발생한 모든 환경적 손상, 오염 또는 생태계 파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4) the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Act No. 107 of 1998

135)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37조

또한 기업법¹³⁶⁾, 클로즈 조합법¹³⁷⁾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장 또는 클로즈 조합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혹은 별개로, 손상, 파괴, 오염 등 환경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에 책임을 진다.¹³⁸⁾

3. 환경 관리 프로그램 및 환경 관리 계획

채굴권을 신청한 자는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책임관의 통지일로부터 180일 내에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략 탐사 허가, 탐광권 또는 채굴권을 신청한 자는 규정된 환경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 관리 프로그램 또는 환경 관리 계획을 준비하는 신청인은 보호, 구제 조치 및 환경 관리 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환경 정보 기준 마련, 환경, 탐광 및 채굴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국가 유산 자원법상의 국가 자산 등에 대한 영향 조사 및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근로자에게 그들의 작업 결과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험과 환경의 파괴 또는 오염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환경 위험에 대하여 알리는 환경 인식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환경오염 또는 파괴를 유발하는 활동, 행위 또는 절차의 변경, 구제, 통제 또는 중지, 오염, 파괴의 원인 억제 또는 오염물질의 저감, 그리고 규정된 폐기물 표준 또는 관리 표준을 준수하였을 설명하여야 한다.

장관은 환경 관리 프로그램 또는 환경 관리 계획의 등록일로부터 120일 내에 동일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 승인 요건은 제3조의 요건을 준수하거나 신청인이 제41조 제1항을 준수, 신청인에게 환경에의 부정

136) Companies Act, Act No. 61 of 1973

137) Corporations Act, Act No. 69 of 1984

138)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38조

적 영향을 관리하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러한 능력을 제공한 경우이다.

장관은 지역 채굴 개발 및 환경 위원회에 의한 권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법령에 따른 행정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한 환경 관리 프로그램 또는 환경 관리 계획을 승인해선 안 된다.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료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당 환경 관리 프로그램 또는 환경 관리 계획의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장관은 그가 환경 관리 프로그램 또는 환경 관리 계획을 승인한 후 언제든지, 그리고 개략 탐사 허가, 탐광권, 채굴권 또는 채굴 허가의 소유자의 자문을 얻은 후 개정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 또는 환경 관리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3항 제b호 (ii)목과 제3항 제c호의 규정은 개략 탐사 허가, 탐광권 또는 채굴 허가의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¹³⁹⁾

4. 관련 부서의 자문

제39조에 따른 환경 관리 계획 또는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고려함에 있어, 장관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한 법령의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국가 부처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장관은 자문 부서의 장에게, 요청일로부터 60일 내에 해당 부서의 의견 제출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¹⁴⁰⁾

5. 환경 손상의 복구에 관한 재정 제공

탐광권, 채굴권 또는 채굴 허가의 신청인은, 장관이 환경 관리 계획 또는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승인하기 전, 부정적 환경 영향의 복구 또는 관리에 관한 재정적 제공을 하여야 한다. 탐광권, 채굴권 또는 채굴

139)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39조

140)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40조

허가의 보유자가 관리 또는 복구에 실패한 경우, 또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복구 또는 관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장관은 보유자에게 문서 통지를 통해, 그러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복구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탐광권, 채굴권 또는 채굴 허가의 보유자는 매년 자신의 환경 책임을 평가하고, 장관에게 재정 제공을 증가시켜야 한다. 장관이 이 조에 규정된 평가와 재정 제공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은 그러한 평가를 실시하고 재정 제공을 결정할 독립적 주체를 지정할 수 있다.

재정 제공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장관이 제43조에 따라 보유자에게 인증서를 발행할 때까지 유효하나, 장관이 재정 제공의 일정 부분을, 잠재적 또는 잔여 환경 영향으로 폐광 또는 탐광 활동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만큼 보유할 수 있다.¹⁴¹⁾

6. 잔여 비축물 및 처리물 관리

잔여 비축물과 잔여 처리물은 환경 관리 계획 또는 환경 관리 프로그램에 규정된 방법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 지역 외의 지역에서 잔여 비축물 또는 잔여 처리물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¹⁴²⁾

7. 폐업 인증의 발행

탐광권, 채굴권, 개발 보류 승인권 또는 채굴 허가의 보유자는 장관이 폐업 인증을 발행할 때까지 환경적 책임, 오염 또는 생태계 파괴에 따른 관리의 책임을 진다. 탐광권, 채굴권 또는 채굴 허가를 규정된 방법을 통해 문서로 신청한 경우, 장관은 그러한 환경적 책임을 환경 관

141)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41조

142)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42조

리 계획 또는 환경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규정된 폐업 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격 있는 자에게로 이전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이전 된 자, 또는 탐광권, 채굴권, 개발 보류 승인권 또는 채굴 허가의 보유자는 폐업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폐업인증의 대상이 되는 요건은 (a) 해당 권리 또는 허가의 소멸, 포기 또는 취소, b) 탐광 또는 채굴 활동의 중단, c) 권리 및 허가의 대상 토지 탐광 일부의 포기, (d) 권리 및 허가의 대상이 되는 규정된 폐업 계획의 완료가 된 경우이다.

폐업 인증의 신청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 책임관에게,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규정된 환경 위험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최고 조사관과 수자원 및 삼림자원부가 수자원에 대한 잠재적 오염 관리 및 보건과 안전 사항이 해결되었음을 문서로 확인하지 않는 한 폐업 인증은 발행될 수 없다. 장관이 인증을 발행할 경우, 장관은 탐광권, 채굴권, 개발 보류 승인권 또는 채굴 허가의 보유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제41조에 규정된 재정 제공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잠재적 또는 잔여 환경 영향에 관하여 일부를 유지할 수 있다.¹⁴³⁾

8. 건물, 구조물 그리고 그 밖의 목적물의 제거

탐광권, 채굴권, 개발 보류 승인권 또는 채굴 허가가 소멸, 취소 또는 포기된 때, 또는 모든 탐광 또는 채굴 활동이 완료된 때, 그러한 권리 및 허가의 보유자는 건물, 구조물 또는 목적물을 제거하거나 철거해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다른 법령에 의해 제거 또는 철거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이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문서로 특정한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보유자간 계약의 조건으로, 이러한 계약이 장관에 의해 문서로 승인된 경우 이다. 이는 선의의 채굴 기기로 제거될 수 있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¹⁴⁴⁾

143)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43조

144)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44조

9. 긴급 구제 조치의 비용 회복에 관한 장관의 권한

생태계 파괴, 타인의 건강 또는 웰빙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오염 또는 환경 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탐광, 채굴, 개략 탐사 또는 생산 활동으로 긴급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은 관련 권리 및 허가의 보유자에게 모든 오염 또는 생태계 파괴의 영향에 관한 조사, 평가 및 보고, 이러한 지시 내 특정된 조치의 이행, 지시 내 특정된 일자 이전에 그러한 조치를 완료할 것을 지시할 있다.

소유자가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관은 영향을 받는 자의 건강 보호, 생태계 파괴 구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보유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장관은 그러한 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고등법원에 해당 보유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관은 그러한 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의회에 의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장관은 조치의 완전한 이행에 필요한 기금과 동일한 금액을 보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¹⁴⁵⁾

10. 특정 사례에서의 환경 손상 구제에 관한 장관의 권한

장관이 환경 오염 또는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위협의 발생을 회복하기 위하여 위의 조치 이행을 지시하였으나, 관련 개략 탐사 허가, 탐광권, 채굴권, 개발 보류 승인권 또는 채굴 허가의 보유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경우 존재하지 않거나 청산되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장관은 지역 책임관에게 오염 또는 파괴의 방지, 또는 해당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145)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45조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의 조치에 필요한 재원은 개략 탐사 허가, 탐광권, 채굴권, 개발 보류 승인권 또는 채굴 허가의 보유자에 의한 재정 제공에 의해 충당되어야 하며, 그러한 제공이 없거나 제공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국회의 기금으로 충당한다. 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지역 책임관은 해당 토지의 영향구제 등을 토지 관련 등록부에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 등록부에는, 해당 신청이 접수된 때, 효력 발생, 그러한 기록에 따른 공적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입되어야 한다.¹⁴⁶⁾

11. 권리, 허가(permit) 또는 승인(permission)의 중지 및 취소에 관한 장관의 권한

장관은 소유자가 정찰 허가, 탐광권, 채굴권, 채굴 허가 또는 개발 보류 승인권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개략 탐사, 탐광 또는 채굴 활동을 행한 경우, 이러한 권리 및 허가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승인된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정보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한다.

취소 및 중지 처분을 하기 전 장관은 해당 권리의 중단 또는 취소 예정을 나타내는 문서 통지, 해당 권리의 중단 또는 취소를 고려하게 된 이유의 설명, 해당 권리, 허가가 중단 또는 취소되어선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의 제공, 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탐광권, 채굴권 또는 채굴 허가의 저당권자에게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관은 권리자에게 모든 위반, 불이행 또는 실패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소명의 합리적 기회 부여를 하고, 소명 사실을 고려 한 후 취소 및

146)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46조

중지처분을 할 수 있다. 지시를 따를 경우에는 중단 유예를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는 중지의 유예를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¹⁴⁷⁾

12. 특정 지역에서의 탐광 및 채굴 제한 또는 금지

국립공원법¹⁴⁸⁾ 제20조 및 이 법 제2조에 따라 거주 지역의 토지, 공공 도로, 철도, 또는 묘소, 공공 또는 정부의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존되는 토지, 제49조에 따라 관보상 통지하여 특정한 지역에는 정찰 허가, 탐광권, 채굴권 또는 채굴 허가는 발행될 수 없다. 다만, 장관이 국가적 이익 및 광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하여 발행할만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략 탐사, 탐광 또는 채굴이 국가 환경 관리 정책, 규범 및 표준의 틀 내에 취해질 경우, 그러한 권리 또는 허가의 부여가 탐광권 또는 채굴권의 모든 보유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토지에도 허가를 할 수 있다.¹⁴⁹⁾

13. 탐광 및 채굴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장관의 권한

장관은 관련 이해관계인의 소명 후, 관보 상 통지를 통하여, 국가 광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필요성,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장관이 결정한 기간과 요건을 들어 개략 탐사 허가, 탐광권, 채굴권, 또는 채굴 허가의 허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위의 통지는 통지일의 개략 탐사 허가, 탐광권, 채굴권, 개발 보류 승인권 또는 채굴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상에서의 탐광 및 채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관은 관보상 통지를 통하여, 장관이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147)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47조

148) the National Parks Act, Act No. 57 of 1976

149) 광물 및 석유 자원개발법 제48조

유예, 장관이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건이 변경된 경우 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적용되는 기간,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¹⁵⁰⁾

14. 장관의 광물 자원 발생, 본질, 그리고 범위 조사

장관은 광물 또는 지질학적 구성물이 토지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고, 존재할 경우 본질과 범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손실이나 손상이 발행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과 토지 소유자는 지불될 배상금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 금액은 중재법¹⁵¹⁾상의 중재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하여 정해진다.

조사는 장관이 관보상 조사 실시의 의사를 표시하고, 의견 개진 일자를 특정한 조사에 관한 문서상의 의견 요청, 토지 소유자, 점유자를 장관이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한 소명 요청을 통지하였을 것, 장관이 청취한 의견을 고려하였을 것, 통지 후 30일 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에만 조사의 실시가 가능하다.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통제자)가 문서로 진입 및 조사의 실시를 통지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해당 토지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소유자, 점유자, 통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위 통지 사본을 조사가 실시되기 전 토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한편, 이 조에 따른 모든 조사는 해당 토지 및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¹⁵²⁾

150) 광물 및 석유 자원개발법 제49조

151) the Arbitration Act, Act No. 42 of 1965

152)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50조

15. 최적의 광물 자원 채굴

위원회가 채굴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광물이 최적으로 채굴될 수 없거나, 그러한 실시의 지속이 제2항 제6호에 따른 목적에 해를 입힐 것임을 입증한 경우, 위원회는 장관으로 하여금 채굴권의 보유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령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행하기 전, 위원회는 채굴권의 보유자의 기술적·재정적 자원과 시장 여건이 이러한 권고를 정당화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장관이 권고에 동의하는 경우,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유자에게 통지 상 서술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함과 통지상 언급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장관은 통지일로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한 소명의 기회를 보유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굴권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채굴권 보유자가 위 통지의 준수에 실패한 경우, 소유자의 소명을 고려하여, 장관이 소유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해당 권리의 중단 또는 취소를 정당화한다고 확신할 경우에는 채굴권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 통지를 준수하거나 중단 유예를 위한 합리적인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채굴권의 중단을 유예할 수 있다.¹⁵³⁾

16.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채굴 활동의 수익성 또는 비용 삭감 통지

채굴권의 보유자는 등록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영향을 받는 근로자 또는 그들의 지정 대표의 자문을 얻어 위원회에 규

153)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51조

정된 방법으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관련 채굴의 이익률이 12개월 지속된 기간 중 평균 6% 미만인 경우, 채굴 운영이 노동력의 10% 이상 또는 500인 이상의 근로자 중 더 적은 기준으로 저하되거나 중단된 상태가 12개월의 기간 내에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관련 소유자의 자문을 얻은 후, 해당 여건, 사회·경제적 그리고 노동 합의 및 장관에의 권고를 조사하여야 한다.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자문을 얻은 후 등록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영향을 받는 근로자 또는 그들의 지정 대표에게 채굴권의 보유자가 장관이 결정하는 조건과 요건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문서로 지시할 수 있다. 채굴권의 보유자는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정 조치가 취해졌음을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지시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 장관은 채굴 운영의 사법적 관리를 위하여 법원에 요청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¹⁵⁴⁾

17.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지표권의 이용

이 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거나 이 법의 목적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토지의 표면 사용을 의도하는 자는 규정된 방법으로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장 또는 그에 부수적인 활용, 승인된 도시 계획으로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토지의 사용, 장관이 관보상 통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사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표면의 사용이 광물 자원의 채굴에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은 자신의 결단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지역 책임관은 해당자에 대하여, 시정 조치 명령을 발부하는 장관의 의도 및 주장을 문서로 통지하고, 사안의 시정을 위하여 취해져야 할 조치를 설명하고, 30일 내에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154)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52조

한다. 조사 결과 및 관련 소명을 고려한 후 장관은 지시에 특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다.¹⁵⁵⁾

18. 특정 환경에서 집행 가능한 배상

개략 탐사 허가, 탐광권, 채굴권 또는 채굴 허가의 보유자는 자신이 정찰, 탐광 또는 채굴 활동의 개시 또는 실시를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관련 지역 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유자의 토지 진입을 거부, 토지에의 접근 대가로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역 책임관은 이러한 통지일로부터 14일 내에 개략 탐사 허가, 탐광권, 채굴권, 또는 채굴 허가의 보유자가 제기한 문제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명 요청, 이 법에 따른 권리 및 허가의 보유자의 권리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고 있는 이 법의 규정,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 취해질 수 있거나 취해져야 할 조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지역 책임관은 소유자가 제기한 문제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문서 소명을 고려한 후, 개략 탐사, 탐광 또는 채굴 활동의 결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통을 받고 있거나 손실 또는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상 지급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당사자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법에 다른 중재 또는 관할 법원이 보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역 책임관이 소유자가 제기한 문제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문서 소명, 그리고 지역 채굴 개발 및 환경 위원회의 문서 권고를 고

155)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53조

려한 후, 더 이상의 협상이 제2조 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이 법의 목적에 해를 입힐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책임관은 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수용을 권고할 수 있다.

지역 책임관이 당사자들의 합의 도출 또는 분쟁의 해결이 정찰 허가, 탐광권, 채굴권 또는 채굴 허가 보유자의 과실로 실패했다고 판단한 경우, 지역 책임관은 해당 보유자의 탐광 또는 채굴 활동을 분쟁이 중재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하여 해결될 때까지 문서로 금지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신이 탐광 또는 채굴 활동으로 손실 및 손상으로 고통 받고 있거나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관련 지역 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¹⁵⁶⁾

19. 탐광 또는 채굴 목적의 부동산 수용에 관한 장관의 권한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은 헌법 제25조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따라, 토지 및 권리를 수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수용법¹⁵⁷⁾ 제6조, 제7조, 제9조 제1항은 이 법의 수용에 적용된다.¹⁵⁸⁾

20. 권리, 허가, 승인 및 면허(licenses)의 실효

이 법에 따라 허가되거나 발행되는 권리, 허가, 또는 면허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멸 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자의 사망 그리고 권리 승계자가 없는 경우, 기업 또는 조합이 관련 법령에 의해 등록 말소가 되고 제11조에 따른 동의에 관하여 어떠한 신청이 없거

156)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54조

157) the Expropriation Act, Act No. 63 of 1975

158)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55조

나 장관에게 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허가가 거부된 경우, 유자가 청산되거나 몰수된 경우, 제47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포기된 경우이다.¹⁵⁹⁾

제 5 절 기타 원자재 개발 관련 법령

I.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

‘광물 및 석유자원 로열티법’¹⁶⁰⁾은 남아공내의 광물 및 석유자원의 처분시 로열티를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시행과 더불어 2010년 3월 1일부터 광물 및 석유 자원 거래시 로열티가 부과된다. 로열티 부과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광물 및 석유자원 로열티 행정법’¹⁶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로열티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은 양도 또는 이전을 뜻하는 ‘Transfer’가 발생할 때 로열티가 부과된다. Transfer에는 광물자원의 처분, 소비, 절도, 파괴, 손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은 정제된 광물자원¹⁶²⁾과 미정제된 광물자원¹⁶³⁾을 구분하였는데, 정제된 광물자원은 동법 별첨 1 (Schedule 1)에 열거하였고, 미 정제된 광물자원은 동법 별첨 2 (Schedule 2)에 열거하였다. 정제된 광물 자원은 예를 들어 금이나 백금, 구리등을 가르키며, 미정제된 광물자원은 특정 등급의 석탄, 가공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80%의 우라늄 산화물(uranium oxide)등이다.

로열티는 정제된 광물자원의 경우는 5%, 미정제된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7%의 로열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여 놓았다.

159)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제56조

160)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Royalty Act, 28 of 2008

161)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Royalty Administration Act, 29 of 2008

162) Refined mineral resources

163) Unrefined mineral resources

정제된 광물자원에 대한 로열티 계산은 $0.5\% + [EBIT / \text{정제된 광물자원의 총매출(gross sale)} \times 12.5] \times 100$ 이며¹⁶⁴⁾, 미정제된 광물자원에 대한 로열티 계산은 $0.5\% + [EBIT / \text{미정제된 광물자원의 총매출} \times 9] \times 100$ ¹⁶⁵⁾이다. 여기서 EBIT는 세금납입 전으로 이자가 붙기 전 수익¹⁶⁶⁾을 의미한다.

EBIT은 광물자원 추출과 관련하여 추출자의 광산운영을 통한 순수익을 산정하는 방법의 척도로서 여기에는 3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¹⁶⁷⁾ 첫째는 총 매출, 두 번째는 자본에 대한 환수(recoupment), 예를 들면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 광산 개발에 소요된 자산 처분이나 자산의 가치 저감, 세 번째는 공제(deduction)로 광산 운영에 소요된 지출이다. 따라서 EBIT는 총 매출에 자본 환수를 더한 후 다시 지출 등을 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총액이라 할 수 있다.

로열티는 3단계로 나뉘어 납입하는데 로열티 산정으로부터 6개월 이후 예상되는 로열티에 반을 지불하며, 그 이후 6개월 이후 예상되는 1년 로열티를 지불하며, 그 이후 6개월 후에 1차와 2차를 합산하여 실제 로열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로열티는 영세 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즉 연간 매출액이 천만란드(R10 million)를 넘지 않고 로열티가 십만란드(R100,00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광물 및 석유자원 로열티 행정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에 대해 로열티 부과를 면제해 준다.¹⁶⁸⁾

또한 샘플 목적이나 분석, 검사 등의 목적으로 추출한 경우로서 매출이 십만란드를 넘지 않는 경우 로열티가 부과되지 않는다.¹⁶⁹⁾

164)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 제4조 (1)항

165)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 제4조 (2)항

166)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es

167)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 제5조

168)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 제7조

169)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 제8조

II. 채굴권 등록법

1967년의 채굴권 등록법은 2002¹⁷⁰⁾년 개정되었다. 채굴권 등록 개정법은 기존 법에 정의 규정의 추가 및 삭제, 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일부 규정의 폐지, 이 법에 따른 권리 등록과 관련한 권리증 등록법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광물 및 석유 권리 등록청을 설립하고, 모든 광물 및 석유 권리 등록, 그 밖의 권리, 등록을 위한 증서 및 문서의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이 법에 따라 권리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제한된 실체적 권리가 구성된다. 탐광, 탐사, 생산, 채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 광업권은 이 법이 규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2008년까지 재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재등록 미준수시 광업권을 정부가 회수하게 된다.

제 6 절 검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남아공의 광업 정책, 흑인경제육성정책과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 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 등 남아공에서 원자재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용받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 법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흑인 경제 육성법이 남아공에 원자재 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흑인경제 육성법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다른 제재 수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흑인 경제 육성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나 공공 기관으로 부터 조달, 공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입찰에 참여 제한

170) Mining Titles Registration Amendment Act, No.24, 2003

또는 참여하여도 흑인 경제 육성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수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또한 각종 면허나 허가 등의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흑인 경제 육성법의 규정이나 모범 실무 규칙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 채광권, 채굴권, 탐사권 등이 발급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융자 등의 금융 지원을 받거나 세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구매하는 소비자나 수요 업체는 우대 구매와 관련하여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이 높은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자신의 등급을 높이는 데 유리하므로 흑인 경제 육성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나 낮은 등급의 업체보다는 등급이 높은 업체를 선호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이 낮거나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경쟁력이 저하된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은 투자시 장애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남아공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여 1년간은 흑인 경제 육성 정책법의 면제를 받기 때문에 서두를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 진행 초기 사업 규모 즉 연매출액이 적은 경우 ‘면제된 영세 기업’나 ‘소규모 기업’으로 흑인 경제 육성 4등급을 부여 받으므로 초기 사업 규모를 키워가면서 흑인 경제 육성법이나 규칙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점차적으로 갖추어 갈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흑인 경제 육성 7가지 요소 중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들부터 충족시키면서 흑인 경제 육성 등급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 투자 비용이 들지만 ASGISA나 JIPSA와 같은 정부 추진 사업을 장기 투자 방식으로 참여하여 소유권에 책정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흑인 경제 육성법 준수를 위해 추가 지출을 해야 되므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 진출시 부담스러운 부분이며 투자 유치 활성화 보다는 감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재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해당 국가의 관련 정책 및 법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남아공의 흑인경제육성법이나 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제 1 절 개 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남아공은 단독으로 제정된 법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가 없다고 해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의 투자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 법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정되어 있는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남아공에 실질적 거주 유무를 떠나 외국인이 남아공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매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부동산 개발 등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남아공 법인의 주주가 되거나 회사운영을 책임지는 이사로 임명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아공의 임시 체류 비자를 취득하면 외국인으로 은행계좌 개설, 보험 가입, 차량 구매 등이 자유롭다. 외국인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이나 수입을 본국으로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큰 문제는 단일화된 투자법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공에 직접 거주한 경험이 없는 경우나, 남아공 법을 총망라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시 어떤 제약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 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¹⁷¹⁾ 따라서 아무리 남아공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안정되고 효과적인 좋은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

171)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NPAD),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Africa: How can Africa benefit from Regional integration and FDI, November 2010(<http://www.nepad.org/nepad/knowledge/doc/1933/attracting-foreign-direct-investment-africa>, 2012년 7월 15일 접속)

부분에 있어서 불투명하게 보이거나 외국인 직접 투자가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최대 다국적 기업 중 하나인 월마트(Walmart)¹⁷²⁾의 남아공 진출 소송 분쟁과 관련하여 3명의 중앙 정부 장관이 ‘외국인 직접 투자’¹⁷³⁾ 관련 단독 법제정을 국회 법사위에 건의하였고, 캐나다 투자법이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었다.¹⁷⁴⁾

이하에서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남아공에 직접 투자할 때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제인 회사법, 노동 법률, 세금 관련 주요 법률, 외환 관리법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 2 절 남아공의 회사법 분석

I. 개 관

1973년 제정된 구 회사법¹⁷⁵⁾은 변화하는 기업과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회사법이 제정되었다. 신 회사법¹⁷⁶⁾은 2009년 4월 9일 법률로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서명되었으나, 시행 이전 신회사법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국 시행되기도 전에 ‘회사법 2009, 개정법¹⁷⁷⁾’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신 회사법과 개정법은 2011년 5월 1일자로 동시에 시행이 되었다.

172) 미국의 최대 소매 체인점인 Wal-Mart가 남아공 소매 체인점인 Massmart의 지분 51%를 USD 2.4 billion 가격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동 거래로 인한 중소 소매 기업의 존재 위협 및 일자리 손실 등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으나, ‘불공정 거래 심의 항소법원(Competition Appeal Court)’은 합병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거래를 승인하였고, 조건으로 중소 소매 기업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173) Foreign direct investment

174) Business Day, SA needs a law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22 July 2011.

175) Companies Act, 61 of 1973.

176) Companies Act, 71 of 2008.

177) Companies Amendment Act, 3 of 2011.

신회사법은 구회사법과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으며, 동 법의 시행으로 모든 분야의 비즈니스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회사 설립, 유지, 폐지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할 기관이 탄생하였고, 새로운 양식과 절차들이 제정되었다. 또한 ‘사업 구제¹⁷⁸⁾’ 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II 주요 내용

1. 회사 종류

남아공 진출을 위해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회사법은 회사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영리 회사(profit company)이고, 다른 하나는 비영리 회사(non-profit company)이다.¹⁷⁹⁾ 영리 회사는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비영리 회사는 설립자나 회사 참여하는 이사들에게 영업활동 등을 통한 수익을 배분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윤을 일반 대중을 위해 사용하거나, 문화, 종교, 사회봉사, 지역 발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¹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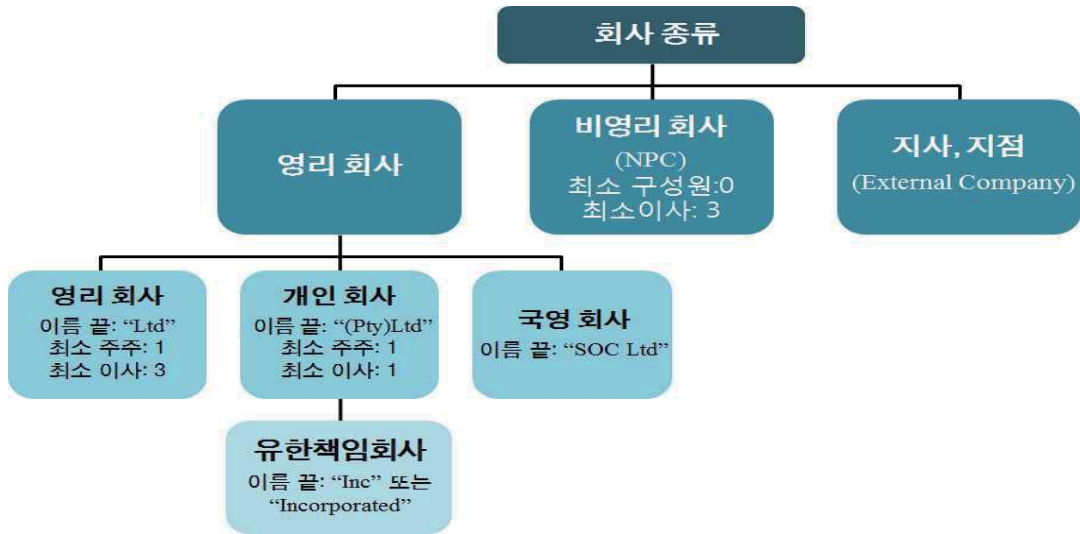
회사법은 어떤 종류의 비영리 회사들이 존재하는 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영리 회사인 경우 반드시 회사명 끝에 NPC를 붙여야 한다. 영리 회사를 세우든지 비영리 회사를 세우든지 남아공 내에 최소한 한 개 사무실을 영속적으로 두어야 한다.

회사 종류에 대한 도표는 아래와 같다.

178) Business rescue

179) 회사법 제8조(1)항

180) 회사법 제1조(개념, Definitions)



(1) 영리 회사

회사법은 4가지 형태의 영리 회사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주식 공모 회사(public companies), 개인 회사(private companies), 유한 책임회사(personal liability companies)와 국가 소유의 국영 회사(state-owned companies) 등이다.

영리 회사(Profit companies)는 설립과 동시에 독립된 법인 성격을 갖게 되며, 출자 자본금 안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회사이다. 또한 설립자(founder)가 생존하지 않아도 법인은 영구적으로 지속되며, 영리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나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director)가 반드시 남아공 현지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남아공 영리 회사를 설립하여 주주가 되거나, 또는 주주이면서 이사가 될 수 있다.

1) 국영 회사

‘국영 회사(State-owned company: SOC)’라는 개념은 이번 신회사법 제정으로 새로 등장한 회사 카테고리 중의 하나로서, 중앙정부, 주정부 및 각 지방 행정자치 단체가 설립하여 주주로 있는 회사를 지칭한다.

‘공공 자금 운영법’¹⁸¹⁾은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열거된 회사는 회사법 규정에 의해 국영회사가 된다. 그런데 공공 자금 운영법에는 지방 행정자치 단체(municipalities)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법 제1조(b)는 국영회사라는 개념에 ‘지방 정부 : 지방 행정 자치단체 구조법’¹⁸²⁾에 따라 탄생된 지방 행정 자치 단체가 설립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고 있다.

국영회사는 회사명 끝에 국가 소유의 회사를 뜻하는 ‘SOC Ltd’를 반드시 붙이도록 하여 일반인이 쉽게 국영회사인지 개인회사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법 적용에 있어서 국영 회사는 몇 가지 예외들이 인정되며, 전반적으로 주식 공모 회사에 적용되는 회사법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된다.¹⁸³⁾

2) 개인 회사

개인 회사(Private company)를 설립할 경우 구 회사법상 주주는 최대 50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신회사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주의 수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한명의 주주와 한명의 이사를 두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며 주주의 숫자는 문제되지 않는다.

개인 회사는 설립 정관에 반드시 일반 대중으로 부터 주식을 공모하지 않는 회사임을 분명히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에 주식 양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에 대해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¹⁸⁴⁾

구회사법하에서 회사 종류와 상관없이 반드시 회계감사(auditor)를 선임하도록 하였는데, 신회사법은 회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회계 감사를 두

181) Public Finance Management Act, 1 of 1999 (PFMA), Schedule 2 or 3에 열거된 공공 법인(public entity)

182) Local Government: Municipality Systems Act, 32 of 2000

183) 회사법 제9조(1)항

184) 회사법 제8조(2)항 (b)와 1조 개념 조항

거나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시켰다. 따라서 모든 개인 회사 (Private company)가 회계 감사의 연간 회계 감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주식 공모회사(Public company)와 정부 소유의 국영 회사(SOC)의 경우는 회계 감사 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을 유지하였다.¹⁸⁵⁾

개인 회사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회계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연가 회계 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점수제로 연간매출액, 근로자와 주주의 숫자, 채무의 범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넘는 경우 연간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인 소유의 회사나 회사의 모든 주주가 이사인 경우는 회계 감사(auditing)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일반 회계 담당자(accounting officer)의 연간 회계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하다.

회사 총회(general meeting)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개인 회사나 주식 공모회사나 같으며, 투표권자의 25%이다. 따라서 가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투표권자의 25%가 참석을 해야 회의가 진행된다.

개인 회사는 이름으로 이를 구별하도록 회사명 끝에 ‘Proprietary Limited’ 또는 ‘(Pty) Ltd’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3) 유한 책임 회사

유한 책임 회사(Personal liability companies)는 개인 회사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개인 회사와의 차이점은 현직 이사나 전직 이사 모두가 회사와 함께 개별적 또는 연대적으로 임기 중 발생한 회사의 계약적 채무나 책임에 대해서 거의 무한 책임을 진다.

책임의 범위는 계약적 채무¹⁸⁶⁾만 해당되며,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¹⁸⁷⁾이나 법령에 의한 책임¹⁸⁸⁾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한 책임 회사 설립은 건축 기사,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인이 소속된 협회 규정에 의해, 회사 멤버인 주주의 개인적 책임

185) 회사법 제72조(4)항

186) Contractual debts and liabilities

187) Delictual or tort liability

188) Statutory liability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된다.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회사명 뒤에, ‘Incorporated’ 또는 ‘INC’를 붙이도록 하여 구별하고 있다.

4) 주식 공모 회사

주식 공모 회사(Public companies)는 회사명 뒤에, ‘Limited’ 또는 ‘Ltd’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주식 공모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최소한 1명의 주주를 필요로 하며, 반드시 회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회계 위원회는 최소 3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또한 회사 비서¹⁸⁹⁾와 회계 감사(auditor)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주식 공모 회사는 일반 대중이 회사의 주식을 공모하기 때문에 재정적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윤리 위원회(ethics committee)나 사회 위원회(social committee)를 구성하여야 한다.

주식 공모 회사의 경우 성격 상 주식 양도에 제한이 없다. 또한 주식 공모회사도 일반 대중으로부터 주식을 공모하지만 상장된 주식공모회사도 있고, 비상장 주식 공모회사도 있다. 상장과 관련해서는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ohannesburg Stock Exchange: JSE)의 상장 요건¹⁹⁰⁾을 충족해야 한다.

(2) 비영리 회사

비영리 회사(Non-Profit companies)는 설립시 정관에 반드시 회사 설립 목적을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것이 종교, 문화, 친목, 사교 등 어떤 목적이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한이 없다.

비영리 회사는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창립자, 구성원, 이사들에게 분배할 수 없다. 그러나 비영리 회사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189) Company secretary

190) http://www.jse.co.za/Libraries/JSE_-_Listings_Requirements_-_Service_Issues/Service_Issue_14.sflb. as hx(2012년 7월 15일 접속)

창립자 또는 구성 멤버로 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상환 하는 것은 가능하다.¹⁹¹⁾

구회사법상 비영리회사는 ‘Section 21 company’로 불리어졌고, 구성원을 반드시 7명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회사법은 비영리 회사의 설립 요건으로 구성원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성원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비영리 회사는 반드시 이사회¹⁹²⁾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3명의 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3명의 이사를 구성원으로 시작하게 된다.

비영리 회사는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업, 장사, 투자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소유나 주식 보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에 규정한 수익세 적용은 받지 않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입세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회사가 남아공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영리 외래회사’¹⁹³⁾로 불리게 된다.

(3) 지 사

외국 회사가 남아공 내 자회사(Subsidiary)로 법인 설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회사 대신 지사(Branch office)나 더 작은 규모의 연락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남아공에서 지사, 지점, 연락 사무소는 회사법 개념상 외래 회사 또는 외국계 회사라는 뜻으로 ‘External company’라고 부른다. 외국 회사가 남아공 내에 영리나 비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1) 회사법 제10조

192) Board of directors

193) Non-profit external company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본사 정관의 공증된 사본, 공증된 회사 등록증 사본 등과 더불어 지사 설립 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지사 설립을 할 수 있다.¹⁹⁴⁾

회사법 제23조에 규정된 ‘영리나 비영리 목적의 활동’의 의미는 남아공 현지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본사에서 행해지는 영리나 비영리활동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을 뜻한다.

따라서 제23(2A)조는 영리나 비영리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1)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을 남아공 내에서 개최한 경우, (2)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경우, (3) 자사 주식을 등록, 교환, 양도 등을 위해 남아공 내에 사무실을 설립한 경우, (4) 남아공 내 부채를 진 경우 또는 남아공 내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5) 남아공 내에 설정한 담보를 회수하거나 부채 등을 회수 한 경우, (6) 남아공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과 연관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요약하면 위에 열거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행해진 경우, 지사로서 20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지사설립 등록증이 없이는 은행계좌 개설이 안 되며, 사무실 임차를 하는 경우 임차 계약서 체결이 어렵다. 따라서 먼저 지사 등록을 완료해야 은행 계좌 개설, 지사 사무실 임차 등이 가능하다.

지사를 설립한 경우 남아공 현지인을 이사로 임명할 필요는 없다. 지사의 경우 소득세율이 남아공 법인세보다 높지만, 수익을 본사로 송금할 경우 배당금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사의 부채에 대해 지사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경우 본사가 지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사의 경우 회계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연차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나 수익사업을 하지

194) 회사법 제23조

않아 세금 납입할 것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 납입과 관련하여 매년 연차 재무제표¹⁹⁵⁾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회사등록관청인 CIPC에 해당 양식으로 매년 등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연차 보고서(annual return)’를 제출해야 한다. 2년 연속 연차보고서 미제출시 지사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지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등록관청으로 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도록 ‘등록 통지’를 받거나 또는 업무 활동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2. 회사나 지사 이외의 진출 형태

남아공 진출을 위해 반드시 회사나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형태로 남아공 진출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형태는 회사법의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다루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해외 투자자가 남아공 진출시 취할 수 있는 다른 진출 형태도 함께 살펴봄으로서 회사 또는 지사와 비교하여 해외 투자자의 형편에 맞는 진출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진출할 수 있는 형태는 계약상 형성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 비즈니스 트러스트(Business Trust), 합작 투자(Joint venture) 등이다.

(1) 파트너십

먼저 외국 기업이 남아공 기업과 계약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진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파트너십에는 일반 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 특별 파트너십(Extraordinary Partnership)으로 구분된다. 일반 파트너십은 파트너 모두 경영에 참여하며 창출된 수익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형태이다.

195) Annual Financial Statement

특별 파트너십은 파트너가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는 특수 형태로서 출자만하고 이익 배당만 받는다.

일반 파트너십의 경우 계약적 의무와 권한을 서로 갖게 되며, 각 파트너는 기업일 경우 기존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유지한다. 파트너십을 규율하는 제정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코먼 로(common law)가 적용된다.

파트너십을 형성한 경우 각 파트너는 각자 독립된 회계 장부를 사용하며 세금 납입도 각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하게 된다. 또한 부채나 의무에 대해 모든 파트너가 연대하거나 한 파트너가 독립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된다.

(2) 비지니스 트러스트

비지니스 트러스트(Business trust; 이하 “사업 신탁”)는 회사 설립이나 회사 운영 보다는 다소 간소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창립자(founder)가 자산이나 금전을 출자하여 이를 수탁자(trustee)에게 위임하고, 수탁자는 수탁된 자산이나 금전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창출된 수익을 창립자가 지정하는 수혜자(beneficiary)에 지급하는 형태이다.

사업 신탁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에 기반이 되는 신탁문서(trust deed)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탁 문서 변경은 설립자의 취지 등을 판단하여 법원의 재량권하에 법원 명령으로만 가능하다.

수탁자의 자산과 신탁 재산은 따로 구별된다. 따라서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수혜자가 수탁자의 계약 불이행이나 위반시 수탁자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업 신탁은 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신탁 재산 관리법’¹⁹⁶⁾의 적용을 받으며, 등록과 신탁 내용 변경 등의 관할도 고등법원의 마스터(Master of High Court) 사무실에서 관장한다.

196) Trust Property Control Act, 57 of 1988

사업 신탁 형성은 회사 설립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먼저 사업 신탁은 출자한 자산 안에서 책임이 있으며, 수탁자나 수혜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 수익에 대해 회사의 경우 회사가 독립 법인으로 수익세 납입대상이 되지만, 사업 신탁의 경우 사업 신탁은 세금납세 대상이 아니다. 수익을 받는 수혜자가 수익에 대하여 세금 납입 대상이 된다.

또한 다양한 회사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회계 감사 임명, 연간 회계 보고서 작성, 연차 보고(annual return) 의무가 없다. 또한 신탁된 재산 집행 방법에 제한이 없고, 회사법의 경우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 임명의 일정한 요건이 있지만, 수탁자 임명 자격 제한이 없다. 따라서 회사 이사 임명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수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회사법상 이사가 회사에 대해 갖는 의무사항이 사업 신탁의 수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믿을 만한 수탁자 선임과 수탁자의 업무 집행을 투명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수혜자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3) 합작 투자

합작 투자 또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JV)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부동산 등 자산이나 전문 기술 등을 합작하므로 비용 절감 및 기술력 증진을 통해 수익 창출의 기회 향상과 동시에 한 개의 비즈니스 형태를 취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조인트 벤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a) 독자적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¹⁹⁷⁾, (b)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각 법인이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약을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¹⁹⁸⁾이다.

197) Incorporated Joint Venture

198) Unincorporated association

먼저 조인트 벤처(JV)를 위해 독자적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회사법의 규정을 받게 되므로 회사법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조인트 벤처 형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법의 적용을 받으며 파트너 사이 간에는 법률적 관계는 파트너십과 관련된 남아공 코먼 로(Common law)의 원칙들이 적용된다.

파트너십에 관한 코먼 로에 따르면 파트너십이 채무 등으로 인해 파산당하는 경우 각 파트너의 자산까지 파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 파트너가 ‘연대적이면서 단독으로’¹⁹⁹⁾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조인트 벤처를 형성할 것인가는 자금 조달 방법, 각 파트너의 장점 및 약점, 조인트 벤처 운영 구조, 지적 재산권이 창출된 경우 소유권의 문제, 세금 문제, 분쟁 시 해결 방안이나 절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회사 설립

신회사법은 구회사법보다 회사 설립 절차를 관소하였다. 회사 설립에 있어 중요한 문서는 정관인데, 정관을 구회사법 하에서는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로 명칭 하였고 사실상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신회사법은 세계화된 개념으로 일치시키고자 정관의 이름을 “Memorandum of Incorporation(MOI)”로 변경하였다. 신회사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회사인 경우 정관의 이름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신회사법은 전환기간을 2년간 두어 동법 시행일인 2011년 5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2013년 4월30일까지 정관의 내용이 신회사법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하며 위배된 경우 해당 정관은 무효화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회사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회사 정관이 신회사법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를 점검해야 하고, 상충되는

199) Jointly and severally

부분이 있다면 전환 기간 내에 정관 수정이 필요하다.

회사 정관을 작성한 후 각 설립자는 이를 수용하는 의미로 서명을 하고, 회사 설립 통지²⁰⁰⁾과 함께 회사등록 담당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²⁰¹⁾

(1) 회사 이름

구회사법은 회사 설립을 위해 회사 이름 승인을 먼저 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회사 이름 승인에 최소 한 달에서 길게 몇 달의 기간이 소요되어 회사 설립이 지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회사법에서는 이름 승인 없이 바로 신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동안 이름에 특수 부호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 &, @, %, =, # 등과 같은 특수 부호 사용이 허용 된다.²⁰²⁾ 그러나 이러한 특수 부호 사용은 2014년 5월 1일 이후부터 사용가능하다.²⁰³⁾

회사 이름 신청은 한 개에서 다섯 개까지 순번을 정하여 신청하여 기존의 회사 이름과 충돌할 경우 순번에 따라 내려가면서 승인된다. 그런데 회사 이름은 반드시 정관의 일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된 이름이 승인이 되지 못할 경우 회사법은 먼저 등록번호 뒤에 회사 형태를 구분하는 이름을 붙여서 회사 등록을 한 후, 추후 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이름을 기재 및 정관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²⁰⁴⁾

(2) 회사 정관

회사법 규칙²⁰⁵⁾ 제15(1)은 표준 회사정관(Memorandum of Incorporation: MoI)를 제시하고 있는데, 1항(a)는 개인 회사인 경우 간략한 정

200) Notice of Incorporation

201) 회사법 제13조(1)항

202) 회사법 11(3)(a)

203) 회사법 225(2)

204) 회사법 제14조(2)항

205) Companies Regulations, 2011

관²⁰⁶⁾이나 긴 정관²⁰⁷⁾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회사 형태가 아닌 영리 회사 설립 시나, 비영리 회사 경우 각 각 회사법 규칙에서 제시한 양식에 의거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회사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회사 정관은 무효이며 반드시 회사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⁸⁾

정관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회사법이 정한 특정한 규정에 대해 정관으로 이를 개정할 수 있는 경우²⁰⁹⁾, 이를 정관으로 개정할 수 없는 경우²¹⁰⁾가 있다.²¹¹⁾ 즉 회사법에서 제시한 규정들에 대해 회사정관으로 형편에 맞게 규정을 완화, 축소, 부정,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렇게 변경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법은 특별 결의(special resolution)의 경우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75%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회사 정관으로 회사법의 특별 결의에 요구되는 투표권자의 찬성비율보다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법은 반드시 일반 결의(Ordinary resolution)와 10%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 결의에 대한 찬성비율을 하향조정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

회사법이 정관으로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으로는 이사의 책임²¹²⁾, 이사의 과실에 대한 보험 및 이사의 고의적인 신의 위반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제한이나 금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제한 등은 정관으로 변경할 수 없다.

206) Short form - CoR 15.1A.

207) Long form - CoR 15.1B.

208) 회사법 제15조(1)항

209) Alterable provision

210) Unalterable provision

211) Unalterable provision

212) 회사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

회사 정관은 법원 명령으로 변경이 가능하거나 이사회 발의나 주주 가운데 10%이상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주주 발의로 개최된 주주 총회에서 특별 결의 (special resolution)로 변경할 수 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신회사법은 모든 회사는 자연인과 동일한 법적 능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²¹³⁾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문제되어왔던 이사들의 월권(ultra vires)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권한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경우 일반 대중이 회사의 제한된 권한을 이름에서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름 뒤에 ‘(RF)’ 또는 ‘ring-fenced’를 붙여야 한다.²¹⁴⁾ 또한 정관에 일반 대중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제 3자가 회사가 제한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법적인 결과를 갖는다.

(3) 주주 간 계약서

구회사법 하에서 ‘회사 정관’과 ‘주주 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가 상충되는 경우 주주 간 계약서가 우선시 되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한 후 ‘주주 간 계약서’ 작성을 통해 얼마든지 회사 정관과 상반되는 조항을 규정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신회사법은 이를 개정하여 주주 간 계약서는 회사의 정관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회사법과 상충된 규정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²¹⁵⁾

주주 간 계약서가 신회사법 시행이전에 작성이 된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회사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주주 간 계약서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회사법이 시행된 2011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 사이 주주 간 계약서는 정관에 우선한다. 그러나 2013

213) 회사법 제19조(1)항(b)

214) 회사법 제11조(3)항(b)

215) 회사법 제15조(7)항

년 5월 1일부터 우선순위는 회사법, 정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 간 계약서이다.

4. 회사의 책임 및 투명성

회사법은 모든 회사에 공통적으로 동일한 책임(Accountability) 및 투명성(Transparency)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식공모회사나 특정 개인 회사인 경우 그 강도가 높다. 모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드시 최소한 1개의 등록된 사무실을 남아공내에 갖추고 있어야 하며, 유지해야 한다.²¹⁶⁾

회사관련 서류는 7년간 보유해야 한다.²¹⁷⁾

회사 멤버인 주주 등록부 및 이사 등록부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누구나 업무시간에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¹⁸⁾

모든 회사는 ‘연차 보고’를 해야 한다.

모든 회사는 반드시 회계연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²¹⁹⁾

모든 회사는 정확하고 완전한 회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²²⁰⁾

모든 회사는 연차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²²¹⁾

(1) 연차 재무 제표(Annual Financial Statement)

연차 재무제표는 회사 종류에 따라 보고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규정된 재정 보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모든 회사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회계 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연차 재무 재표를 준비해야 한다.²²²⁾

216) 회사법 제23조(3)항

217) 회사법 제24조(1)항

218) 회사법 제24조(3)항, (4)항

219) 회사법 제27조

220) 회사법 제28조

221) 회사법 제29조

222) 회사법 제30조

연차 재무재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연차 재무재표는 주주 총회에 상정되어야 한다.²²³⁾

구회사법에서는 모든 회사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신회사법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회사 종류, 크기 및 사회 영향력 정도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독립 회계 검토²²⁴⁾를 받는 경우, 아무런 의무 사항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또한 회계 감사의 기준도 다양하다.

회계 감사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PI 점수(Public Interest Score)인데, PI 점수는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많을수록 회계 감사 정도가 높아진다. PI 점수는 각 주주나 파트너 한명 당 1점, 해당 회계연도에 고용된 근로자의 숫자 당 각 1점, 총 매출액 백만란드(R 1 million)당 1점, 부채 백만란드(R 1 million)당 1점이 부과된다.²²⁵⁾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주주 5명, 직원 100명, 연매출액이 천만란드(R 100 million), 부채는 없는 경우, PI 점수는 205(5 + 100 + 100 + 0 = 205)이다.

PI 점수가 350점 이상이 될 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100-350점 사이인 경우 ‘독립 회계 검토’를 받아야 한다. 100점 이하인 경우 정관에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공인회계사가 아닌 일반 회계사(accounting officer)의 독립적 회계 검토만 받으면 된다.

뿐만 아니라 주주이면서 회사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회계 감사나 독립적 회계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²²⁶⁾ 그러나 회사의 크기, 근로자의 숫자, 총매출액 정도 등 회사가 공공 이익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할 수도 있다.²²⁷⁾

PI점수와 상관없이 국영회사, 주식 공모 회사, 비영리 회사 중 국가나 외국 국가 또는 외국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회계

223) 회사법 제30조(3)항(c)과 (d)

224) Independent review

225) 회사법 규칙 제26조(2)항

226) 회사법 제30(2A)조

227) 회사법 제30조(2)항(b)(i)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영리 회사이든 비영리 회사이든 5백만 란드(R5 million) 이상에 해당하는 제3자의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 회사 중에서 PI점수가 100점에서 350점 미만인 경우 연차 재무재표를 내부적으로 작성한 경우 독립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²²⁸⁾

PI 점수와 회사 종류에 따라 어떤 기준의 재정보고를 해야 하는가 결정이 된다. 즉 재정 보고 표준(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국제적 표준을 따를 것인지 남아공 회계보고 기준을 따를 것인지는 PI 점수와 가 결정한다. 현재 회계 보고 기준은 IFRS²²⁹⁾, IFRS for SMEs²³⁰⁾, SA GAAP²³¹⁾ 등 3가지로 나뉘어져 있다.²³²⁾

예를 들어, 개인 회사 (Private company)의 경우 PI 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 IFRS 나 IFRS for SMEs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350-100점 사이인 경우와 100점 이하인 경우는 IFRS, IFRS for SMEs, SA GAAP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²³³⁾

연차 재무재표는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데, 현재 독립기관으로 IFRS에서 인정하는 것은 South Afric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에 등록된 공인 회계사(Chartered Accountant)이다. 따라서 독립적 회계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인 회계사가 직간접적으로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와는 어떤 이익관계가 없어야 한다. 즉 연차 재무재표를 감사하는 공인 회계사가 과거 해당 회사에 고용되었다거나, 회사 감사로 임명되었다거나, 이사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독립된 회계 감사로 볼 수 없다.

228) 회사법 규칙 제28조 (2)항

229)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230)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231) South African Statements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actice

232) 회사법 규칙 26(1)

233) 회사법 규칙 27(4)

(2) 재무 위원회, 사회복지 및 윤리 위원회

회사법은 회사의 책무와 투명성과 관련하여 회계 감사이외의 추가적으로 재무 위원회, 사회복지 위원회 및 윤리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 공모회사, 국영 기업은 재무 위원회 구성이 의무이고, 그 이외의 회사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재무 위원은 3명으로 구성하며, 회계 감사 임명 및 해임 등 회사 재무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국영 기업(SOC), 상장된 주식 공모회사, 그리고 지난 5년 중 2년 이상 PI점수가 500점을 넘은 개인 회사의 경우, 사회복지 및 윤리 위원회²³⁴⁾를 두도록 하고 있다.²³⁵⁾

사회복지 및 윤리 위원회 또한 최소 3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그중에 최소한 1명의 이사는 회사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전·현직 이사 이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 및 윤리 위원회는 회사가 사회 및 경제 발전과 관련된 활동, 환경이나 보건 복지 등의 활동, 고용 및 고용창출 등과 관련된 활동 등을 하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 윤리 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 회사 중에서 이러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5. 회사 재무

신회사법은 회사의 이사가 회사 자금을 집행, 투자, 또는 대출 등 일정한 법률적 행위를 할 경우 회사의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불 능력(solveny) 및 유동성(liquidity)’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²³⁶⁾

234) Social and ethics committee

235) 회사법 규칙 43(1)과 (2)

236) 회사법 제4조

즉 회사 비즈니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불 능력’ 및 ‘유동성’ 둘 다 통과해야 한다. 즉 1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무 변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불 능력 및 유동성 테스트는 두 단계 접근 방식을 채택하므로 회사가 부주의하게 상거래를 함으로서 초래되는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회사가 부채 지급 기일에 자금 회전이 되어 부채를 정산할 재무 능력이 있고 실제 자산의 규모를 볼 때도 지불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지불 능력은 회사 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회사 자산이 평가 절하나 절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평가되어 회사의 부채보다 많거나 최소한 동일해야 한다.

지불 능력 및 유동성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회사 주식 공모에 재정 지원²³⁷⁾, (2) 이사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대출²³⁸⁾, (3) 이사회 의결을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²³⁹⁾, (4) 자본화를 위한 신주 발행(capitalization of shares)²⁴⁰⁾, (5) 회사가 자회사 주식 매입 또는 자기 주식 매입²⁴¹⁾, (6)인수 또는 합병의 경우²⁴²⁾ 등이다.

이사가 이러한 지불 능력 및 유동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회사를 파산위기로 몰고 가거나 파산한 경우 개인적 책임의 정도가 강화되었다.

구회사법 하에서 회사 설립 시 자본금으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액면가를 표시하는 액면 주식(par value share)과 무액면주식(no par value share)을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회사법 시행과 동시에 액면주식 및 명목상 가치 주식(nominal value share) 발행이 금지되었다.²⁴³⁾

237) 회사법 제44조

238) 회사법 제45조

239) 회사법 제46조

240) 회사법 제47조

241) 회사법 제48조

242) 회사법 제113조

243) 회사법 제35조

그러나 2011년 5월 1일 이전에 기 발행한 액면 주식이나 명목상 가치 주식은 그대로 유효하다.²⁴⁴⁾ 또한 법 시행이후 5년의 유예기간 안에 기존의 액면 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서와 CoR 31이라는 회사법이 규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청에 제출하면 비용이 면제된다.

회사 정관은 반드시 주식의 종류, 발행이 승인된 각 주식의 숫자를 명기해야 하고, 주식의 종류나 증자를 할 경우 정관을 변경하거나 정관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이사의 승인으로 변경한다.²⁴⁵⁾

신회사법에서 이사회는 주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새로운 권한을 가진다. 즉 어떤 종류의 주식이든 승인된 주식(shares authorised)에 대해 그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²⁴⁶⁾ 또한 승인되었으나 아직 발행하지 않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 재분류(reclassify)하거나, 승인되었지만 아직 주식의 종류가 구분되지 않고 발행되지 않는 경우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승인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우선권(preference) 등 특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제한이나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²⁴⁷⁾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러한 이사회 권한을 회사 정관(MoI)으로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 발행은 이사의 권한으로 정관에서 승인된 주식만큼 발행해야 한다.²⁴⁸⁾ 또한 개인 회사의 모든 주주는 주식에 대해 선매수권(preemptive right)를 갖지만, 주식공모회사나 국영 회사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²⁴⁹⁾

회사법은 그동안 현금이나 부동산 등으로만 주식 매입이 허용되었던 것을 다른 형태로도 주식 구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이제

244) 회사법 제6조

245) 회사법 제36조 (1)항

246) 회사법 제36조 (2)항

247) 회사법 제36조

248) 회사법 제28조

249) 회사법 제39조

는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이 아닌 형태나 장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 계약 등의 선물 계약, 후불이나 장래 이익 등을 담보로 주식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⁵⁰⁾

회사 주식 구매시 현금 대신 다른 것으로 지불케 하므로 사실 ‘흑인 경제 육성법’²⁵¹⁾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흑인 경제 육성법은 회사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일정 주식 지분을 흑인 파트너²⁵²⁾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회사법상 주식 구매는 반드시 현금이나 현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상 흑인경제육성과 관련된 주식 거래에서 많은 흑인 파트너들이 주식을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신회사법은 주식 구매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했거나, 근무할 경우 또는 일정한 기여로 보아서 주식을 먼저 발행을 하고 해당주식은 흑인 파트너가 근무기간을 채울 때까지 제3자에게 위탁상태에 있게 된다.²⁵³⁾

그러나 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식이 위탁상태에 있는 동안 흑인 파트너에게는 투표권이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주식에 대한 선매권등을 부여하지 않는다.²⁵⁴⁾

신회사법은 구회사법에서 규율했던 회사채(debenture) 관련 조항을 대폭 삭제하였다. 회사채 관련 회사법 조항은 회사 정관으로 개정이 가능한 조항이다. 회사채 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주주의 사전 동

250) 회사법 제40조

251)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 53 of 2003

252) 한국에서는 대개 흑인 파트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흑인 경제 육성법에서 규정하는 흑인(black)에는 흑인, 남아공 인디언(South African Indian), 흑백 혼혈(남아공에서는 이들을 ‘coloured’라고 부름)을 포함한다. 따라서 ‘Black Economic Empowerment Partner’라는 ‘BEE Partner’라는 용어가 남아공에서 널리 사용된다.

253) 회사법 제40조 (5)항(b)

254) 회사법 제40조 (6)항

의 없이도 발행이 가능하다.²⁵⁵⁾ 또한 회사채 발행시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이사 임명권 등이 그 예이다.²⁵⁶⁾

또한 구회사법상의 소수 주주 보호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주식 발행이나 전환을 전·현직, 미래 이사에게 하는 경우, 이어나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주식 옵션을 승인하는 경우, 주식 매입이나 공모시 재정 지원, 이어나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한 융자나 재정 지원시 주주 승인을 얻어야 한다.²⁵⁷⁾

회사가 자기 주식 매입이나 회사와 관련된 사람²⁵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²⁵⁹⁾ 먼저, 주주회의의 특별 의결을 거쳐 결의되어야 하고, 지불능력 및 유동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재정 지원의 조건이 회사에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해야 하며, 회사의 정관에 재정지원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 주식 매입에 이사에 대한 재정 지원이외 다른 항목으로 이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위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주주에 알리도록 추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는 재정지원에 대한 결의 내용을 모든 주주에게 통보해야 하고,²⁶⁰⁾ 또한 노동조합에도 통보해야 한다. 재정 지원의 규모가 결의를 채택할 당시의 순수 자산의 0.1%를 넘는 경우 10일 이내, 그 이외의 경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⁶¹⁾

255) 회사법 제43조 (2)항(a)

256) 회사법 제43조 (3)항

257) 회사법 제41조

258) 회사법 개념 규정을 보면 주주와 결혼 관계,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2촌 이내의 관계, 법인과 법인 대 관계에서는 자회사이거나, 회사를 조정(control) 가능한 관계를 의미한다.

259) 회사법 제44조 (2)항

260) 주주이면서 이사인 경우는 제외

261) 회사법 제45조 (2)항

이사회는 발행된 회사 주식 매입이나 공모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회사의 재정 지원이나 보증을 결정할 수 있다.²⁶²⁾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원이나 보증의 경우 반드시 지불 능력 및 유동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그룹 회사인 경우 그룹 내부적인 재정 지원이나 보증(guarantee) 발행을 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하는 회사의 이사회는 지불능력 및 유동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재정 지원이나 보증 발행의 조건이 회사에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발행된 주식 매입에 대한 회사의 재정적 지원 결정에 참여한 전·현직 이사와 투표당시 참여하지 않는 이사까지도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연대나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²⁶³⁾

근로자 주식제도(Employee Share Scheme)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대한 지난 2년간 채택한 특별 의결을 집행하는 경우도 지불 능력 및 유동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²⁶⁴⁾

배당금을 포함한 모든 법인 자산 분배는 지불능력 및 유동성 테스트를 통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²⁶⁵⁾ 법인 자산분배에 참여한 전·현직 이사와 자산 분배와 관련된 투표 참여에 가담하지 않은 이사 모두 자산 분배와 관련된 이사회 결정으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나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자산 분배는 법원 명령으로도 가능하다.

이사회 승인으로 가능하다. 이사회가 자산 분배를 승인한 경우 지불 능력이나 유동성 테스트를 통과하였다고 추정한다. 또한 이사회 의결은 지불 능력 및 유동성 테스트를 적용하였고 예상되는 자산 분배 후에도 지불 능력 및 유동성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고 믿을 수

262) 회사법 제44조

263) 회사법 제44조 (6)항

264) 회사법 제44조 (2)항

265) 회사법 제46조

있었다는 내용을 이사회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므로 이사들의 결정은 신중하게 된다.²⁶⁶⁾

6. 이사와 주주

(1) 이사와 이사회

회사법은 회사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과 선임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로 자격이 박탈되거나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²⁶⁷⁾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이사로 임명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이면서 경제적 자립을 하지 않거나,²⁶⁸⁾ 또는 유사한 법적 제한을 받는 자, 정관에 이사요건을 정한 경우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등이다. 또한 법원 명령으로 이사 임명이 금지된 사람이나 직무 태만자(delinquent)로 선언된 자도 이사가 될 수 없다.²⁶⁹⁾ 파산자로서 아직 복원이 안 된 자, 공공법으로 이사 임명이 금지된 자, 부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제명된 자, 또는 유죄선고를 받거나 형을 살고 있는 자는 이사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회사법은 주주에게 이사의 직무 태만 등으로 회사나 주주에 손실을 끼친 경우 법원에 직무 태만자 선고나 일정 기간 이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근신(probation)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²⁷⁰⁾

임시 이어나 대리 이사 임명이 가능하다. 영리 회사인 경우 최소한 1명의 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공모회사나 비영리 회사 경우 최소한 3명 이상의 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러한 이사회 구성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이사회의 권한은 유효하며, 이

266) 회사법 제46조

267) 회사법 제69조

268) Unemancipated minor.

269) 회사법 제69조 (8)항 (a)

270) 회사법 제162조

사회에서 내린 결정 또한 유효하다.²⁷¹⁾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가 아닌 사람도 임명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해당인은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으며, 이사회 소집을 위해서는 2명의 이사 또는 이사의 숫자가 12명이 넘는 경우 해당 이사 수의 25%에 해당하는 이사가 발의를 해야 한다. 신회사법은 이사회를 영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⁷²⁾

이사 해임은 주주 회의에서 일반 의결(Ordinary resolution)로 처리되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사회에서 주주 승인 없이 해임이 가능하다.²⁷³⁾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이사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 알려야 하며, 해당 이사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²⁷⁴⁾

이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즉 신의와 올바른 목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회사의 최고의 이익²⁷⁵⁾을 위해 일해야 하며, 업무 수행 시 성실, 기술 그리고 배려²⁷⁶⁾를 갖고 일해야 한다. 또한 회사 이익과 충돌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²⁷⁷⁾

이사는 신용 의무(fiduciary duty) 위반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²⁷⁸⁾ 또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는데도 회사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손실을 입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 종업원이나 채권자, 주주 등을 속이는 행동을 한 경우, 연차 재무제표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²⁷⁹⁾

271) 회사법 제66조 (11)항

272) 회사법 제73조

273) 회사법 제71조

274) 회사법 제75조

275)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276) Duty to exercise care, skill and diligence

277) 회사법 제76조

278) 회사법 제77조

279) 회사법 제77조 (3)항

회사법은 이사가 정관 규정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⁸⁰⁾ 따라서 이사의 이러한 책임 면책을 위해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제소당한 경우 그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는 이사의 책임에 대해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금전적 보호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였다.²⁸¹⁾

(2) 주 주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주주가 이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주주는 이사를 임명 또는 해임할 권한을 갖는다.

주주 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는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 총회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²⁸²⁾ 대리인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유한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주는 여러 명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에 대한 통지는 주식 공모회사나 비영리회사인 경우는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개인 회사인 경우 1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모든 주식 공모회사는 반드시 최초 연간 주주 총회(first Annual General Meeting)를 회사 설립 후 18개월 안에 개최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매년 한 번씩 개최해야 한다.

이사회나 정관 규정으로 허용하는 사람에 의해 주주 총회가 소집될 수 있다.²⁸³⁾ 다음의 경우는 주주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회사법이나 회사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주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공식인 이사 자리에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정관

280) 회사법 제78조 (2)항

281) 회사법 제78조 (7)항

282) 회사법 제58조

283) 회사법 제61조

으로 주주 총회를 정한 경우, 주식 공모회사의 경우 주주 총회를 일년에 한 번씩 개최해야 하는 경우, 총 투표권자 10%이상이 주주 총회 요구와 안건을 문서로 기재하여 각 주주에게 배달한 경우 등은 주주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²⁸⁴⁾

주주 총회안건은 그 안건의 내용에 따라 일반 의결이나 특별 의결로 채택이 된다. 일반 의결은 참석자의 50.1%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되며, 특별 의결인 경우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주주 총회 투표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투표권자의 최소 25%이다. 정관으로 이러한 의결 종족수를 높이거나 낮일 수 있다. 참석이라는 의미는 모임에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경우,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

7. 사업 구제(Business rescue)

사업 구제는 구 회사법상 법정관리²⁸⁵⁾에 해당하는 것으로 긍정적 의미를 갖는 새로운 개념인 사업 구제로 대체되었다. 사업 구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에 대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절차로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를 일시적으로 감독하거나 자산이나 비즈니스를 관리해주거나, 채권자나 주주 등 회사의 자산에 일정한 권한 갖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권한 행사에 대해 일시적 유예기간(moratorium)을 주는 제도이다.

이사회에서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사업 구제에 합리적 전망이 보인다고 믿을 때 자발적으로 사업 구제 신청을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²⁸⁶⁾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회사등록관리청(CIPC)²⁸⁷⁾에 해당 양식으로 접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파산 신청에

284) 회사법 제60조

285) Judicial administration

286) 회사법 제129조

287) Companies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

들어갔거나 파산 신청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사업구제중인 회사에 대해 반대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구제중인 회사를 상대로 어떤 법정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이사회가 결정이 나고, 이를 CIPC에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회사는 이사회 의결 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회사법 제138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업 구제 전문가’²⁸⁸⁾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

자발적인 사업 구제 신청이라는 이사회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 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회사구제 계획(business rescue plan)을 제출하기 전에 법원에 취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취소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야 하며, 사업 구제에 합리적 관점에서 전망이 없다든지, 회사법 129조 회사구제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하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²⁸⁹⁾

이와는 반대로 이사회가 회사 재정이 어려움에 있는데도 사업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 명령으로 사업 구제 신청을 강제할 수 있다.²⁹⁰⁾ 회사법 제132조에서 제135조는 사업 구제 신청 절차 기간, 지급정지에 대한 법정 절차, 부동산 이해관계 보호, 사업 구제 신청이 후의 재정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사업 구제 신청에 들어간 회사는 일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 구제 전문가의 사전 승인 하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사업구제 계획에 따라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므로, 채권자와 주주의 권한을 보호하고 있다.²⁹¹⁾

288) Business rescue practitioner

289) 회사법 제130조

290) 회사법 제131조

291) 회사법 제134조 (3)항

회사가 사업 구제 신청에 들어간 경우 해당 회사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구제 신청에 들어갔다고 하여 근로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며 신청 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로 계약이 그대로 유지 된다.²⁹²⁾ 또한 회사가 사업 구제 신청에 들어갔더라도 이사들은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²⁹³⁾ 그러나 사업 구제 신청 중 이사는 사업구제전문가의 승인 하에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사업구제 기간 동안 근로자는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밀린 월급이나 지불된 비용청구와 관련하여 담보 없는 우선 채권자²⁹⁴⁾로 인정을 받는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노동자 대표자를 통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법 144조는 근로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채권자 또한 사업구제 절차에 근로자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요 권한으로 사업구제 계획 변경, 승인,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²⁹⁵⁾

사업구제 계획을 어떻게 작성하고 승인할 것인가에 대해 회사법 150조에서 154조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처음 부분은 배경(background), 두 번째 부분은 제안(proposals), 세 번째 부분은 조건(conditions)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구제 계획서는 사업구제 전문가가 임명된 후 25일 안에 공고되어야 하고, 법원 명령이나 채권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사업구제 전문가는 사업구제 계획서를 공고한 후 채권자나 또는 투표권한자들을 소집하여 사업구제 계획서를 검토한 후 승인이나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안된 사업 구제 계획서는 채권자의 75%의

292) 회사법 제136조 (1)항

293) 회사법 제137조 (2)항

294) Preferred unsecured creditor

295) 회사법 제145조

찬성으로 승인된다.²⁹⁶⁾ 사업구제 계획서가 채택된 경우 회사와 채권자들은 승인된 사업구제 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사업구제는 법원 명령으로 종료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파산절차로 변경될 수도 있다. 또한 사업구제전문가에 의해 사업구제 종료 신청을 할 수 있다.

8. 해산, 등록 취소와 파산

회사 파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파산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신파산법으로 제정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해당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구회사법 파산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신파산법(Insolvency Act)이 제정되기 까지, 여기서는 재정이 건실한 경우 해산 또는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를 다루고자 한다.

부채가 없는 건실한 회사도 자진 해산을 하는 경우 또는 법원 명령으로 해산될 수 있다.²⁹⁷⁾ 자진 해산은 특별 의결을 통해 자진해산을 결정하고 이를 CIPC에 통보함으로써 해산된다. 자진 해산이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 채권자나 사업구제전문가의 신청, 이사나 주주 등의 신청에 의한 경우이다.²⁹⁸⁾

자진해산이외에도 CIPC는 회사 등록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 회사가 외국 관할로 이관된 경우,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7년 이상 회사의 활동이 없거나 정지된 경우, 회사등록취소를 서면으로 요청받을 경우에 회사 등록이 취소된다.²⁹⁹⁾

9. 인수 합병 및 주식 매입

구 회사법에서는 ‘유가 증권 규율 평가단(Securities Regulation Panel: SRP)’이라는 기구에서 인수 합병, 주식 매입 등 회사 주식 등 특정 유

296) 회사법 제152조

297) 회사법 제79조

298) 회사법 제81조

299) 회사법 제82조 (3)항

가 증권거래의 거래를 규율하였다. 신회사법은 SRP를 폐지하고, ‘인수 규율 평가단(Takeover Regulation Panel: TRP)’로 대체하였으나 기본적인 기능은 SRP와 동일하다.

즉, TRP는 특정 형태의 거래를 규율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를 ‘영향을 주는 거래(affected transaction)’라고 하며 규율을 받는 회사(regulated companies)가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TRP의 규제를 받는다.³⁰⁰⁾ 이렇게 규율하는 이유는 주식거래 시장의 거래 상도덕을 지키며 모든 주주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며, 거래규율을 받는 회사는 정부 소유의 국영 회사, 주식 공모 회사, 개인 회사 중에서 정관에 인수합병 규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³⁰¹⁾

이러한 규율 받는 회사가 영향을 주는 거래를 할 경우 TRP의 규제를 받는다. ‘영향을 주는 거래’란 규율 받는 회사의 자산의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처분하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 규율 받는 회사가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 규율 받는 회사와 주주사이의 조정(arrangement) 계획, 규율 받는 회사안의 투표권을 갖는 주식 매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을 하는 경우 등이다.

신회사법은 인수, 합병 및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개념인 담합³⁰²⁾을 도입하였고, 의무적 매매 제의,³⁰³⁾ 강제 취득 및 계획적으로 파산시키는 것,³⁰⁴⁾ 동등한 매매 제의 및 일부 매매 제의,³⁰⁵⁾ 거래 시 상대방을 좌절시키는 행위 금지,³⁰⁶⁾ 금지된 거래³⁰⁷⁾ 등을 다루고 있다.

300) 회사법 제119조 (1)항

301) 회사법 제117조 (1)항 (c)

302) Acting in concert

303) Mandatory offers; 회사법 제123조

304) Compulsory acquisitions and squeeze out; 회사법 제124조

305) Comparable and partial offers; 회사법 제125조

306) Restrictions on frustrating actions; 회사법 제126조

307) Prohibited dealings; 회사법 제127조

Ⅲ. 검 토

이상과 같이 투자자들이 남아공 진출 시 알아야 할 주요 회사법 내용을 다루었다. 여러 종류의 회사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영리법인 중에 개인회사 (private company) 형태이다. 연락 사무소나 일인 지사 체제, 또는 시장 조사 차원에서는 지사 설립을 선호하기도 하다.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선택할 것인가는 회사의 크기, 진출 목적이나 규모 등 회사의 필요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남아공 진출 시 회사나 지사이외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앞에서 다루었다.

회사 설립을 결정하고 회사 설립을 했다면, 회사법 관련 조항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정관 작성,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재정과 회계 관련 조항, 이사와 주주의 의무 및 권리 관련 조항, 주식 발행이나 주주 명부 작성, 외국 법인의 보유 주식에 대한 외환관련 사항 등을 숙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경우와 관련 사업 구제, 해산, 등록 취소, 사업 철수 등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회사 인수, 합병 및 주식 매입에 관한 조항들 또한 중요하다.

제 3 절 남아공의 조세 관련 법제 분석

I. 개 관

남아공에는 다양한 형태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세금 분야는 그야말로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세금만큼 매년 또는 분기마다 자주 변화하는 법률도 없다. 이러한 법률들을 조사하여 세율 보기와 설명을 덧붙여도 금방 새로운 세제가 생기면서 기존의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매년 세율의 변동이 있다. 따라서 여

기서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남아공 세금의 기본 골격을 보는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 제공되는 정보는 남아공 국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에서 제시하는 2012/2013년 세금 기준이다.

II. 소득세법

남아공 세금의 근간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이다. 소득세에 관한 법은 소득세법³⁰⁸⁾이다. 소득세법 제2장은 여러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자연인과 법인의 소득세 납입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제12조에서부터 제14조는 소득세 면제와 공제에 관한 규정이다.

제2장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³⁰⁹⁾ 회사 관련 특별 규정,³¹⁰⁾ 주식거래, 합병 및 인수, 그룹 내 거래 및 파산 시 자산 분배와 관련된 세금, 외국 스포츠맨이나 엔터테이너에 대한 세금, 소규모 기업에 대한 거래세,³¹¹⁾ 증여세(donations tax), 배당금세(dividends Tax)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3장은 세금 관련된 일반적 사항으로 총괄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소득세 납입자로 등록, 납세 신고(return), 문의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 법인 소득세

남아공 법인의 세율은 과세 표준의 금액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28%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은 소득세 납입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³¹²⁾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³¹³⁾ 소득세법상 법인은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상장이나 비상장 주식 공모

308) Income Tax Act, 58 of 1962

309) Withholding Tax on Interest

310)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Companies

311) Turnover tax payable by micro businesses

312) 소득세법 제67조

313) 소득세법 제67조

회사, 모든 개인 회사, 동족 회사(Close Corporation), 협동조합(Cooperative) 등이 포함된다.

지사나 지점의 경우 작년까지 33%의 세율이 적용되었던 것이 2012년 4월 1일부터 28%로 세율이 낮아졌다.

2012/2013년 회계연도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연매출에서 과세소득이 R63,556인 경우 세금이 면제되며, R63,556에서 R350,000인 경우 7% 세율이 적용된다. R350,000이상인 경우 세금으로 R20,051에 R350,000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이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입한다.

2012/2013년 회계연도 소규모 기업에 대한 거래세³¹⁴⁾의 경우 R150,000 이하인 경우는 면제, R150,000에서 R300,000 사이의 과세소득인 경우 1%, R300,001에서 R500,000인 경우 R1,500에 R300,000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입, R500,001에서 R750,000인 경우 R5,500에 R500,000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입, R750,001이상의 과세소득인 경우 R15,500에 750,000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2. 배당금세

2008년 ‘국세 관련법 개정법, 2008’³¹⁵⁾을 통해 소득세법 제3장 64D 조부터 64L조항까지를 새로 개정 삽입하였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2009년 다시 ‘세금법 개정법 2009’³¹⁶⁾을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 후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2011년 국회 예산발표에서 장관명의로 2012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314) Turnover tax payable by micro businesses

315) Revenue laws Amendment Act, 60 of 2008

316) Taxations Laws Amendments Act, 17 and 18 of 2009

이 개정법의 시행으로 2012년 4월 1일 부터 남아공을 근거로 하는 회사가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배당금세 면제를 받는다. 즉 외국인이 설립한 남아공의 법인이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배당금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남아공의 법인을 설립하여 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시 배당금세를 납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주가 외국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배당금 세금 적용을 받게 된다.

개인 주주와 남아공 비거주인의 경우 배당금세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현지 법인인지, 지사인지에 따라 배당금 납입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으나 이제는 거주인지, 비거주인지로 구분하며, 과거 10% 세율이 15%로 인상되었다.

그동안 배당금세 납입은 배당금을 고시하는 회사가 세금을 먼저 제한 후 배당하였기 때문에 세금 납입 책임을 가졌다. 이러한 책임이 이제 주주에게로 이전이 된다. 배당금을 고시하는 회사는 배당금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고 배당을 하고, 배당받은 주주가 배당금 세금을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배당금세 납입 방법이 변경되기 전 법인의 경우 28%의 소득세를 납입하고, 남은 금액에서 먼저 배당금세 10%를 공제하고 배당을 한다. 따라서 전액 배당을 가정할 경우 배당 선언시 적용되는 법인세는 기본 세율 28%에 배당금세 10%를 총 과세 소득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6.55%를 합산하면 34.55%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으며 배당금세는 주주 개인이 납입할 의무가 있고, 법인은 기본 세율 28%를 납입하면 된다.

3. 고용 관련 세금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정확한 세금을 공제해야 하며, 매달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월 고용주 선언’³¹⁷⁾이라는 양

317) Monthly Employer Declaration: EMP201

식과 함께 납입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해 세금 납부에 대한 증거로 IRP5/ IT3(a)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 납입 과정을 PAYE(Pay-As-You-Earn)이라고 한다. PAYE 등록이나 ‘숙련공 육성세’³¹⁸⁾ 납입을 목적으로 국세청에 고용주로 등록한 경우 반드시 실업 보험³¹⁹⁾ 또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 세금에는 SITE와 PAYE가 있다. 임금에서 근로자의 세금 공제는 일당, 주급, 월급에 따라 적용이 된다. 근로자 표준 소득세³²⁰⁾은 다른 종류의 세금이 아니라 저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 납입형태로서 연간 수입이 R120000을 넘지 않거나 교통 수당(travelling allowance)을 받지 않는 근로자등에 해당하며, 세금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부과된다.

PAYE은 근로자 월급이나 주급에 대해 매월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공제에 사용되는 개인 소득세표는 아래와 같다.

개인, 유산 및 특별 신탁의 소득세표
(적용 기간: 2012년 3월 1일 - 2013년 2월 28일)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세율 (Tax Rate)
R 0 - R 160 000	18%
R 160 001 - R 250 000	R 28 800 + (R 160 000 넘는 금액에 대해서 25%)
R 250 001 - R 346 000	R 51 300 + (R 250 000 넘는 금액에 대해서 30%)
R 346 001 - R 484 000	R 80 100 + (R 346 000 넘는 금액에 대해서 35%)
R 484 001 - R 617 000	R 128 400 + (R 484 000 넘는 금액에 대해서 38%)

318) Skills Development Levy: SDL

319) Unemployment Insurance Fund: UIF

320) Standard Income Tax on Employees: SITE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세율 (Tax Rate)
수입액- R 617 001 이상	R 178 940 + (R 617 000 넘는 금액에 대해서 40%)
Primary Rebate (65세 미만 자연인에 대한 환불액)	R 11 440
Secondary Rebate (65세-74세에 대한 2차 환불액)	R 6 390
Tertiary Rebate (75세에 대한 3차 환불액)	R 2 130

그 이외 임시 세금(provisional tax)이 있는데, 매년 2차례 납입하는 것으로 첫 6개월은 예상 되는 수익에 대해 납입하여 연말 정산을 한다. 법인세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등에 적용된다.

4. 자산 취득세

자산 취득세³²¹⁾는 2001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자산 취득세는 자산(asset)를 처분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여기에는 자동차, 부동산, 건설 장비 및 시설 등이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 건설 회사가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사무실 건물 즉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용한 후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 건물을 처분하여 순수익이 생겼을 경우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순수익에 대해 자산 취득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 취득에 대한 수익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³²²⁾ 자산 손실이 된 경우 이를 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고 추후 자산취득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시 공제하도록 이월해야 한다.

자산 취득세 납입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등 각종 법인, 신탁, 보험사 등이다. 또한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 자산 취득세 적용을 받으며, 거주자인 경우 자신이 남아공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수익에 대한 자산 취득세 적용을 받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321) Capital Gains Tax: CGT

322) 소득세법 제26A조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 법인은 부동산이나 남아공 영구 자산 매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자산 취득세의 적용을 받는다.³²³⁾

현재의 세율을 보면, 개인의 경우 33.3%(incursion rate)이며, 회사의 경우 66.6%(incursion rate)이다. 비거주 법인이나 개인이 남아공 내 부동산 처분의 경우 회사의 경우의 같은 66.6%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주식 매각을 한 경우 자산 취득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관계되는 사람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2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 가격의 80%이상이 직간접적으로 남아공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이 된 경우 자산 취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자산 취득세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개인 경우 자산 취득 수익이 R30,000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자산 처분 시 발생한 수익이 R300,000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던 부동산(primary residence)을 처분한 후 순수익이 이백만란드(R2 million)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규모 사업을 처분한 경우 시장 가격이 천만란드(R10 million)를 넘지 않으면서 수익이 백팔십만란드(R1.8 million)를 초과하지 않고, 처분자가 50세 이상인 경우 자산취득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Ⅲ. 이중과세금지조약(Double Tax Agreement)

남아공은 한국과는 이중 과세 금지 조약³²⁴⁾이 체결이 되어 1996년 1월 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 소득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 부동산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 해운 및 항공 운수 관련한 수익에 대해서는 거주 국가에서 과세하며, 일방국에서 조세 금액만큼 타국에

323) 소득세법 별첨(schedule)8의 제2항(paragraph)

324)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서 세금이 공제된다. 기타 배당금 관련 조항 등 협약 내용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부가 가치세법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는 부가가치세법³²⁵⁾의 규율을 받는다. 1993년 4월 7일 이래로 부가가치세는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이나 생활필수품의 경우 제로(zero) 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2009년 3월 1일 부터 연 매출액이 백만란드(R 1million) 이상의 금액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 매각인(Vendor)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Vendor로 등록한 경우, 판매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고, 거두어들인 부가가치세에서 회사의 물건이나 재료 구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청에 납입한다.

2010년 3월 1일 부터 연 매출액이 오만란드(R 5,0000)를 초과한 경우 자발적으로 Vendor로 등록할 수 있다.

남아공을 방문한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납입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출국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V. 숙련공 육성세법

숙련공 육성세법³²⁶⁾은 숙련공 육성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임금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숙련공 육성세로 지불해야 한다. 숙련공 육성세 납입 대상은 직원이나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는 총지급액이 연간 오십만란드(R500,000)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25) Value-Added Tax Act, 89 of 1991

326) Skills Development Levies Act, 9 of 1999

중앙 및 지방 정부, 국회로부터 80%이상의 자본을 받아 운영하는 공기업, 연간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총보수가 오십만란드(R500,000)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10(1)(cN)조에 규정된 공공 이익 기관(Public Benefit Organization) 등은 숙련공 육성세를 납입하지 않는다.

회사는 국세청(SARS)에 숙련공 육성세를 등록해야 되며, 숙련공 육성세는 회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이 세금을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 UIF와 같이 매달 7일 이전에 지불을 해야 하며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주가 지불한 SDL의 80%는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인 SETAs에 지불되고, ‘기술 발전 기금’³²⁷⁾에서 20%를 가져가게 되는데, 고용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숙련공 육성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VI.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법³²⁸⁾은 법인이든 자연인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1년 2월 23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다.

- (1) 부동산 매매 금액이 육십만란드 이하 : 0%
- (2) 부동산매매 금액이 육십만란드(R600,000)에서 백만란드(R1 million)인 경우 : 육십만란드 이상에 대해 3% 적용
- (3) 부동산매매 금액이 백만일란드(R 1,000,001)에서 백오십만란드(R1.5 million)인 경우 : R12,000 더하기 백만란드이상에 대해 5%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327) Skills Development Fund

328) Transfer Duty Act, 40 of 1949

- (4) 부동산매매 금액이 백오십만란드(R1.5 million)인 경우 : R37,000
더하기 백오십만란드 이상에 대해 8%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

VII. 광산 운영과 세금

광산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 법인과 같이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러나 광산 장비(mine equipment)와 갱도 작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특별 광산 지출비용으로 세금에서 공제(deduction)가 허용이 된다. 공제는 100% 실제 지출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해 한해 허용이 되며, 초과된 비용은 그 다음해로 이월된다.

금광산을 운영할 경우 과거 28%의 납입하는 대신 ‘법인에 부여되는 부차적 세금(Secondary Tax on Companies 또는 줄여서 STC)’ 납입여부에 따라 2가지 공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1일부터 STC가 폐지되고 배당금세(dividend tax)로 대체되면서 금광산을 운영할 경우 세금 공식(formula)는 $Y=34-170/X$ 이다. 여기서 Y는 세율이며, X는 금광산 총수입(total income)에 대한 금광산 과세수입 (taxable income)에 대한 비율(ratio)이다.

석유나 가스관련 회사의 경우 남아공 내 법인 경우는 동일한 28%의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외국 회사의 경우 세율은 31%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 4 절 남아공의 노동 관련 법제 분석

남아공 노동 법률은 투자 유치보다는 근로자 지위 향상과 보호 위주로 입법이 되어 있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남아공 현지인 채용시 숙지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남아공 노동 관련 법률에는 노사 관계

법³²⁹⁾, 근로 기본 조건법³³⁰⁾, 고용 평등법³³¹⁾, 숙련공 육성법³³²⁾, 산업 재해 보상법, 실업 보험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사 관계법, 근로 기본 조건법과 고용 평등법, 실업보험법, 산업 재해보상법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I. 노사 관계법

노사관계법은 제1장과 제2장에서 헌법이 규정한 노동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참여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노사관계법 제3장은 단체적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6개 부분으로 나누어 노동조합 구성과 같은 조직상의 권한(organizational rights), 단체 협약(collective agreement), 단체 협의회,³³³⁾ 단체 행동 등을 다루고 있다.

제4장은 단체 행동 중에서 가장 많은 파업(strike)과 사무실 폐쇄(lock-out)를 다루고 있다. 제5장에서는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노동 포럼(workplace forums)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노동조합과 고용주 연합(employers' organizations)을 다루고 있으며, 제7장은 노사분쟁 해결과 관련된 절차 및 제도 특히 노동 법원이외에 '노사분쟁 화해 조정 중재 위원회'³³⁴⁾(이하 "CCMA")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29) Labour Relations Act, 66 of 1995

330) Basic Conditions of Employment Act, 75 of 1997

331) Employment Equity Act, 55 of 1998

332) Skills Development Act, 97 of 1998

333) Bargaining councils

334) Commission for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8장은 부당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근로자 해고 시 가장 중요한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9장은 노동 관련하여 일반적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다.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결성은 근로자 개인의 힘보다는 단체적 힘을 통해 근로자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결성은 헌법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 법에서도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³³⁵⁾

노동조합의 중요 역할 중의 하나는 고용주와 회사가 단체 교섭을 통해 근로 조건과 임금 협상에 대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원이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노사분쟁 시 해당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대표(Trade union representative)는 사업장에 노동조합 구성원이 10명이 있는 경우 1명의 대표를 가질 수 있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2명의 대표를 가질 수 있다. 50명 이상인 경우 처음 50명에 2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이후 50명 단위로 한명씩 가질 수 있다.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12명의 노동조합 대표에 추가적으로 500명 단위로 1명씩을 추가하여 최대 20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³⁶⁾ 노동조합 대표는 노조활동에 필요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³³⁷⁾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고 모든 노동조합이 단체로서의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단체로서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해당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노동부에 등록한다. 노동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이름, 노동조합 헌법(Constitution),

335) 노사관계법 제4조

336) 노사관계법 제14조

337) 노사관계법 제15조

노동조합 주소 등을 제출하고 결성된 노동조합이 회사나 고용주의 영향 하에 있지 않는 독립된 조직임을 증명해야 한다.³³⁸⁾

등록한 노동조합은 서면으로 고용주나 회사에 단체로서 권리행사를 요청하면,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 조건, 임금 협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기간 안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CCMA의 화해나 중재과정을 거치게 된다.³³⁹⁾

회사나 사업장내에 다수의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 노사관계법에서 정한 단체로서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다수 노동조합원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근로자 30%와 20%로 각각 구성이 되었다면, 근로자의 30%의 노동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권을 갖게 된다.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만이 해당 회사나 사업장의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클로즈드 숍 계약(Closed-shop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³⁴⁰⁾ 클로즈드 숍 계약이 체결되면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만 취업이 되며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직된다. 이 경우 노동조합과 고용주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다.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은 비노동조합원에 대하여도 노동조합비를 납입하도록 하는 ‘에이전시 숍 계약(Agency-shop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³⁴¹⁾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는 비노동조합원의 월급에서 해당 근로자의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이나 노동부가 관할하는 기금에 납입할 수 있다.

2. 부당 해고

근로자 해고에 대해 노사관계법은 상당히 해고 절차를 까다롭게 규율하여 근로자를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338) 노사관계법 제21조

339) 노사관계법 제21조

340) 노사관계법 제26조

341) 노사관계법 제25조

노사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파업에 참여하였다거나 파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파업 중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근로조건 등을 강제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임신했다는 이유 또는 임신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헌법에 규정된 인종, 나이, 성별, 피부색 등에 대한 차별대우(discrimination)로 해고한 경우 등이다.³⁴²⁾

노사관계법은 자동적 해고 이외에도 고용주가 근로자의 부당행위나 부적격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인원 감축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나 부적격, 인원감축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해고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을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있다.³⁴³⁾

노사관계법 제188조를 요약하면 해고를 할 경우 첫째 반드시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경우는 낮은 성과, 과실이나 고의 등의 부당행위, 인원 감축,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두 번째는 해고 시 노사관계법이 정한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노사관계법 제186조는 해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ur practice)를 규정하고 있다. 해고에 대해 고용주가 통지를 주거나 또는 통지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한 경우, 고용주가 약속했던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나 계약연장을 하되 기존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연장을 한 경우, 출산휴가 후 근무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같은 이유로 여러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일부는 재고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부는 재고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스스로 근무를 그만 두게 한 경우 등이다.³⁴⁴⁾

342) 노사관계법 제187조

343) 노사관계법 제188조

344) 노사관계법 제186조 (1)

부당 노동행위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승진, 강등, 수습기간, 훈련, 혜택 등과 관련하여 부당 처우를 한 경우, 고용주가 부당하게 정직이나 해고에 준하는 징계조치를 한 경우, 계약에 의해 전 근로자를 재고용하기로 했으나 재고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³⁴⁵⁾

근로자의 부정행위(misconduct)에 기초해서 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규칙이나 규정을 숙지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회사의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먼저 회사 규정과 규칙을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배려에도 반복하는 경우 서면 경고나 정도에 따라 해고를 포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징계 결정은 징계 절차를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disciplinary hearings)을 통해 근로자로 하여금 사건에 대해 자기 방어 또는 설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징계 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근로자를 대신하여 동료나 노동조합원이 대신 징계 위원회에서 변론을 할 수 있다.

낮은 성과자나 업무 수행 부적격자로 판단이 될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나 고용주가 설정한 성과 기준(Performance Standard)을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³⁴⁶⁾ 따라서 계약 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채용 당시 이러한 성과 기준이나 업무 수행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상담을 통해 협의하여 목표나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근로자에게 목표나 기준을 설정해 주었는데도 이를 성취하지 못한 경우 그 평가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정당한 평가³⁴⁷⁾가 주어졌는지 또는 지시(instruction)나 지침(guidance), 상담(counselling) 등이 행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낮은 성과자에게 성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재훈련이나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업

345) 노사관계법 제186조 (2)

346) 노사관계법, 부칙(Item 8 of the Code of Good Practice: Dismissal)

347) Appropriate evaluation

무 수행향상을 위한 기회 및 훈련이나 상담 등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성과자인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해고가 가장 타당한 조치³⁴⁸⁾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3. 구조 조정

회사의 재정 악화나 구조 조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인원 감축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 대해 노사관계법은 2가지로 나누어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규모 인원감축의 경우는 노사관계법 제189A조가 적용되며, 소규모 인원감축인 경우는 제189조가 적용된다. 구조 조정을 도와주는 ‘조정자(facilitator)’를 회사의 요청이나 구조 조정 대상자의 요청의 의해 CCMA에서 임명할 수 있다.³⁴⁹⁾

회사나 구조 조정 대상자가 조정자를 임명한 경우 대규모 인원감축인 경우 인원감축의 통지(retrenchment notice)를 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회사는 구조 조정으로 인한 고용 종료를 통지할 수 있고, 구조 조정대상자는 협상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 파업 통지를 할 수 있다.³⁵⁰⁾ 즉, 협상 기간이 최소한 60일이 소요된다.

구조 조정의 조정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는 노사관계법 제189A조 (8)항 (a)는 인원감축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CMA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89A조 (8)항 (b)에 규정된 64조(1)(a)항의 통보 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 즉 회사에서 구조조정통보를 한 후 30일이 지나고, 그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 CCMA에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 지났는데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구조 조정의 조정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348) Appropriate sanction

349) 노사관계법 제189A조 (3)항

350) 노사관계법 제189A조 (7)항

대규모 해고의 경우 통합 협상 기간은 60일로 동일하다. 반면 통보를 받은 구조 조정 대상자들은 파업이나 부당 해고를 이유로 분쟁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CMA에 제소할 수 있다.

구조 조정은 근로자와 면담 또는 단체적 상담(consultation)으로 부터 시작이 된다.³⁵¹⁾ 미리 해고를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근로자와 면담을 한 경우 노동 법원은 판례를 통해 대부분 구조 조정 대상 근로자 편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고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구조 조정 대상 근로자에 대한 면담이나 상담은 제198조 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해야 한다. 즉 단체 협약이 작성된 경우 협약에 명기된 사람과 먼저 협의를 해야 한다. 노동 포럼(Workplace forum)이 형성이 된 경우 노동 포럼과 협의를 하고, 노동 포럼이 형성되지 않고 노동조합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단체 협약 조직이 없는 경우는 구조 조정 대상자나 그 대리인과 상담을 해야 한다. 전체적 면담은 근로자가 집단 면담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남아공의 퇴직금 규정이 없으나 구조 조정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1년 근무시 일주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³⁵²⁾

4. 수습 기간

수습은 새로 고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회사로 하여금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에 근로자의 업무 능력(performance) 평가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³⁵³⁾

351) 노사관계법 제189조 (1)항

352) 노사관계법 제196조

353) 노사 관계법 부칙 8(Code of Good Practice Dismissal).

수습을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수습기간이 끝나면 이를 해고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등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습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 법은 이를 고용주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은 반드시 서면으로 먼저 그 기간을 정해야 하고, 그 기간은 합리적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당한 기간(reasonable duration)이어야 한다. 수습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일의 성격 및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서면으로 평가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도록 평가, 지시, 교육, 훈련, 지도 및 면담을 해야 한다.

5. 노사 분쟁 해결

남아공의 노사 분쟁의 시스템은 다소 복잡하다. 노사 분쟁의 해결을 원만히 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혼돈스러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떤 분쟁에 대해 어느 기관에, 또 언제 제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노사 분쟁에 대해 노사관계법은 3가지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CCMA, 단체 협의회, 노동 법원이다.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차를 보면 먼저 회사 내부적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내부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CCMA, 단체 협의회,³⁵⁴⁾ 또는 토키소(Tokiso)와 같은 사설 분쟁해결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쳤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이나 사무실 폐쇄

354) Bargaining or statutory council

와 같은 쟁의 행동을 취하거나 CCMA, 단체 협의회, 사설 분쟁해결 기관의 중재(arbitration) 절차를 거치거나, 사안을 노동법원이나 노동 항소 법원(Labour Appeal Court) 등에 제소할 수 있다.

노동 법원은 고등법원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CCMA는 일심 법원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CCMA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있고, 파업이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안 등과 같이 특정한 사안은 노동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노사관계법상 가장 중심이 되는 노사분쟁해결기관은 CCMA이다. CCMA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화해와 중재 기능이다.³⁵⁵⁾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화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30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과정으로 넘어간다. 중재는 재판절차와 유사한 절차로 중재명령(arbitration award)은 법원 명령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CCMA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는 분쟁의 유형은 부당해고로서 분쟁을 제소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해고된 근로자들이 보상을 바라고 사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일단은 제소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해와 중재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해결을 위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바로 중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습과 관련된 부당해고나 부당 노동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반대하지 않는 부당해고 사안 중에서 근로자의 적격성이나 능력과 관련된 경우, 고용주가 근무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근로자 스스로 사임하게 하는 경우, 해고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당 노동행위 등이다.³⁵⁶⁾

355) 노사 관계법 제 115조 (1)항과 (2)항.

356) 노사 관계법 제191조 (5A)항

CCMA의 중재명령은 법원 판결과 동일하여 설령 판결 내용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허위 사실을 기초로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급 기관인 노동 법원으로 부터 ‘중재 명령 무효’ 판결을 받아야 된다. 중재 명령 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사안은 다시 CCMA로 이관된다. 따라서 CCMA에서 화해나 중재 통보가 오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한다.

CCMA의 승인을 받은 단체 협의회(bargaining council)는 CCMA와 동일한 노사 분쟁 해결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체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노사관계법 제142A에서 제146조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단체 협의회에서의 결정은 CCMA의 증명을 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CCMA의 자문을 구한 후 단체 협의회 자체적으로 노사 분쟁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노동법원의 관할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법 제157조에 명기되어 있다. 노동법원은 긴급, 임시 또는 최종 금지 명령, 선언적 판결, 보상, 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³⁵⁷⁾

II. 근로 기본 조건법

근로 기본 조건법은 총 11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1장은 개념정의, 제2장은 근무시간, 초과 근무 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은 휴가, 제4장은 고용계약서, 보수 지급, 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고용계약 종료, 제6장은 아동 노동 금지, 제7장은 근로 기본 조건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8장은 산업부문 결정³⁵⁸⁾, 제9장은 고용조건 위원회,³⁵⁹⁾ 제10장은 고용조건 감시, 강제 및 법적 절차, 제11장은 근로 조건과 관련된 일반 조항을 담고 있다.

357) 노사 관계법 제158조 (1)항

358) Sectoral determinations

359) Employment Conditions Commission

1.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45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³⁶⁰⁾ 주5일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1일 최대 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는 최대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일주일 통합하여 4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시간을 일한 뒤에는 반드시 60분의 식사시간(meal break)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상 60분의 식사시간을 30분으로 줄일 수 있다.³⁶¹⁾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특별 수당(allowance) 지급, 단축된 근무시간의 적용과 교통수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야간 출퇴근을 위해 교통수단을 마련해주어야 한다.³⁶²⁾

초과 근무(Overtime Work)는 계약서상 초과근무 규정이 있을 때 가능하며, 일주일에 통합적으로 10시간 이상이나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³⁶³⁾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는 정상적인 시간당 근무수당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³⁶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는 시간당 근무 수당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³⁶⁵⁾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 만큼의 시간에 대해 단축근무 또는 단축근무와 수당을 혼합하여 줄 수 있다.

360) 근로 기본 조건법 제9조

361) 근로 기본 조건법 제14조

362) 근로 기본 조건법 제17조

363) 근로 기본 조건법 제10조

364) 근로 기본 조건법 제10조 (2)항

365) 근로 기본 조건법 제16조 (2)항

2. 휴 가

정기 휴가(annual leave)는 1년을 주기로 계산을 하며 근무 시작일로 계산하거나 고용주가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설정한 경우 첫 정기 휴가 계산은 근무시작일로부터 비례로 계산하면 된다. 1년에 21일의 연속적인 휴가(consecutive days) 또는 15 근무일(working days)에 해당하는 휴가를 준다.³⁶⁶⁾

계약직의 경우 17일 일한 경우에 대해 1일의 휴가 또는 17시간 일한 경우에 1시간의 휴가를 준다. 공휴일은 정기 휴가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은 정기 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 휴가를 언제 받는지 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를 해야 하고, 서로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최종 결정권은 고용주에게 있다.

정기휴가 대신 휴가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³⁶⁷⁾ 그러나 정기휴가를 가지 못한 근로자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병가(sick leave)는 3년의 주기로 계산을 하는데, 3년에 6주의 병가를 갈 수 있다.³⁶⁸⁾ 그러나 처음 6개월의 근무기간동안 근로자는 26일 일한 후에 하루 병가를 갈 수 있다. 자주 병가를 가거나 연속적으로 2일 이상 병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의사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다.³⁶⁹⁾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는 최소 4개월이며 무급휴가이다.³⁷⁰⁾ 출산 휴가 신청은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고, 출산 후 의사 소견서 없이는 6주안에 근무를 재개할 수 없다.

366) 근로 기본 조건법 제20조 (2)항

367) 근로 기본 조건법 제20조 (11)항

368) 근로 기본 조건법 제22조 (2)항

369) 근로 기본 조건법 제23조

370) 근로 기본 조건법 제25조

가족 의무 휴가(Family responsibility leave)는 최소한 일주일에 4일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며 근무 시작한 후 4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³⁷¹⁾ 1년에 3일의 가족의무 휴가를 갈 수 있는데, 자녀 출생, 자녀가 아플 때,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조부모 사망, 근로자의 자녀 사망, 근로자의 형제 사망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고용 계약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서면으로 고용에 관한 일정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⁷²⁾ 그 내용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름, 주소, 직위 또는 일에 대한 설명, 근무 장소, 근무 시작일, 근무일 및 근무시간, 월급 또는 주급,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 월급 또는 주급의 지급방법, 휴가, 계약 종료일 및 고용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 등 이다.

따라서 고용 계약서는 제 29조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작성을 하는데, 고용 계약서 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 회사 규칙 등을 함께 서명 받는 것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게 된다.

4. 최저 임금

남아공에서는 최저 임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근로 기본 조건법에는 부문별 결정(Sectoral determination)이라고 하여 근로자들을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각 직업군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보수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권고형식으로 관보에 게재를 하는데, 이를 근거로 최저 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는 근로 기본 조건법에 의해 조직된 ‘고용 조건 위원회’³⁷³⁾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 형식으로 제출한다.³⁷⁴⁾

371) 근로 기본 조건법 제27조

372) 근로 기본 조건법 제29조

373) Employment Conditions Commission

374) 근로 기본 조건법 제59 - 62조

5. 퇴직금

근로 기본 조건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조 조정이나 인원 감축을 해야 할 경우 퇴직금(severance pay)을 주도록 되어 있다.³⁷⁵⁾ 따라서 남아공 노동법상 정상적인 계약종료, 근로자가 사표를 낸 경우, 해고 등의 경우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인원 감축 시 퇴직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최소 1주일 급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 더 좋은 조건이거나 퇴직금 지불을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서대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인원 감축 시 대체 일자리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³⁷⁶⁾

Ⅲ. 고용 평등법

고용 평등법은 총 6장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1장은 개념, 목적, 해석, 적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불공평한 차별대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인종 그룹을 적극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인 ‘소외 계층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제4장은 고용평등 위원회, 제5장은 감독, 실행 및 법적 절차, 제6장은 고용평등관련 일반 규정을 다루고 있다.

고용평등법의 목적은 고용에 있어서 불공정 차별대우를 없애고 공정한 대우 및 동등한 고용 기회 제공 및 증진, 과거 인종 차별정책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인종 그룹에 대하여 모든 직장과 지위에 해당 그룹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고용하도록 ‘소외계층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실행을 통한 고용평등을 이루는데 있다.³⁷⁷⁾

375) 근로 기본 조건법 제41조; 노사관계법 제196조

376) 근로 기본 조건법 제41조 (4)항

377) 고용 평등법, 제2조

고용 평등법의 제2장은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제 3장은 ‘지명된 고용주(designated employer)’에 적용이 된다. 지명된 고용주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특정한 액수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연간 매출액은 각 산업분야별로 다르며 산자부에서 이를 조정하고 있다.³⁷⁸⁾

고용 평등법의 혜택을 받는 그룹은 흑인, 여성, 장애인에 해당한다. 동법 상 흑인(black people)에는 흑인뿐만 아니라 흑백 혼혈(coloured) 및 남아공 태생의 인도인(Indian)을 포함하고 있다.³⁷⁹⁾

제2장은 불공정 차별대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인종, 성별, 임신, 결혼여부, 인종적 또는 사회 배경, 피부색깔, 성적 성향, 나이, 신체적 장애, 종교, 양심, 신념, 문화, 언어 및 출생을 근거로 불공정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 평등법은 앞에 열거한 헌법 제9조 3항의 리스트에 에이즈균 보균여부(HIV status)를 근거로 차별 대우할 수 없음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에이즈균 보균자에게도 동일한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동 법은 ‘소외계층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한 차별은 불공정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직업이 지니고 있는 고유 특성상 고용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는 불공정 차별대우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⁸⁰⁾

고용 시 의료검사는 특정 법률이 규정한 경우 또는 의료 검사 시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에이즈 보균 유무와 관련된 검사(HIV testing)는 노동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시행할 수 있다.³⁸¹⁾ 심리학적 검사(psychological testing)를 시행할 경우

378) 고용 평등법 제1조

379) 고용 평등법 제1조

380) 고용 평등법 제6조

381) 고용 평등법 제7조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시행해야 하며, 특정한 고용이나 특정 인종 그룹만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³⁸²⁾

소외계층 우대정책과 관련하여 위에서 서술한 ‘지명된 고용주’는 우대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근로자들과 해당 정책에 대해 의논하여야 하며,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각 사업장이나 회사의 형편에 맞는 ‘고용 평등 시행 계획’³⁸³⁾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³⁸⁴⁾

고용 평등 시행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50명 이상에서 150명 이하의 근로자를 둔 경우 2년 마다 10월 1일에 보고해야 하며, 15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매년 10월 1일에 보고해야 한다.³⁸⁵⁾ 뿐만 아니라 ‘지명된 고용주’는 동법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한명 이상의 매니저를 두도록 되어 있다.³⁸⁶⁾

고용 평등법은 급여차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급여 차등이 있는 경우 각 직군과 지위, 직업별 임금 상황을 ‘노동 조건 위원회’(Employment Conditions Commissions)에 보고 해야 하며, 차등을 점차 줄이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⁸⁷⁾

고용 평등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업이나 사업주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주를 이미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위반 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 평등법은 근로자를 괴롭게 하는 것을 불공정 차별대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도 포함이 된다.³⁸⁸⁾ 성희롱 사건이 보고되었는데도 회사나 사업자가 해당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으로 부터 보호하는 수단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382) 고용 평등법 제8조

383) Employment Equity Plan

384) 고용 평등법 제13조

385) 고용 평등법 제21조

386) 고용 평등법 제24조

387) 고용 평등법 제27조

388) 고용 평등법 제6조 (3)항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가해 근로자에 대한 대리적 책임³⁸⁹⁾을 면하기 위해서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 여성 근로자나 가해자를 타부서로 인사이동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³⁹⁰⁾

노사관계법 별첨8에 ‘성희롱 사건 조사 시 실제 지침서’³⁹¹⁾에서 성희롱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동 지침서에 따르면 성희롱은 그 범위가 다양하며, 원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성적인 행동³⁹²⁾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체 접촉, 성적인 농담 등 구두상의 성희롱, 성생활에 대한 질문, 원하지 않는 제스처, 신체 일부 노출, 원치 않는 포르노 그래픽 등 전시나 전송, 신체일부를 그림을 통해 타인의 면전에서 모욕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IV. 실업 보험법

실업 보험법³⁹³⁾은 실업 보험기금을 적립하여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한정적으로 보호하고자 제정이 되었다. 특히 근로자 본인의 질병, 출산, 입양 등과 관련하여 실업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일정한 혜택이 있다.

실업 보험법 제2장은 실업보험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에 관하여, 제3장은 실업보험기금에 청구와 관련된 권리, 수혜범위, 청구권자, 지불 등을 규율하고 있다.

질병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 보험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³⁹⁴⁾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법의 보상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389) Vicarious liability

390) 고용 평등법 제60조

391) Code of Good Practice on the Handling of Sexual Harassment Cases

392) Unwanted conduct of a sexual nature

393) Unemployment Insurance Act, 63 of 2001

394) 실업 보험법 제20조

출산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실업 보험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남아공 노동법상 출산 휴가는 4개월로 무상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출산 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업 보험금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실업 보험법은 최고 출산과 관련 보험금 수령을 17.32주(121일)로 제한하고 있다.³⁹⁵⁾ 유산한 경우 최고 6주 기간의 보험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세 이하의 자녀를 입양함으로써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양에 따른 실업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³⁹⁶⁾ 부양자 사망의 경우 부양가족이 실업 보험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³⁹⁷⁾

실업보험 기여법³⁹⁸⁾에 따르면, 고용주가 매달근로자 월급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³⁹⁹⁾로 지급하되, 동 보험료에 해당하는 2%중 1%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1%를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⁴⁰⁰⁾

보험료는 UIF 또는 국세청에 납입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다.⁴⁰¹⁾ 세금을 납입하지 않는 고용주의 경우는 UIF에 직접 지불하고, 국세청에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 국세청에 지불해도 된다.

상기 법규상, 한 달에 24시간미만 일을 하는 노동자, 공무원, 계약제로 일하는 외국인으로 근무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하는 경우 등은 실업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⁴⁰²⁾ 2003년 4월 1일 이후부터 가정의 가정부, 운전기사, 정원사, 요리사 등에게도 실업보험법이 적용이 된다.

395) 실업 보험법 제24조

396) 실업 보험법 제27-29조

397) 실업 보험법 제30-32조

398)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Act, 4 of 2002

399)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400) 실업보험 기여법 제5-6조

401) 실업보험 기여법 제7조

402) 실업 보험법 제3조

V. 산업 재해 보상법

산업 재해 보상법⁴⁰³⁾은 근무 중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⁰⁴⁾ 그러나 고의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산업 재해 보상법 제3장은 보상기금 조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산업 질병과 관련하여 적용범위,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산업재해 보상 신청에 대해, 제6장은 보상 산정방식과 보상 결정에 대해, 제7장은 산업질병에 대해, 제8장은 의료보험, 제9장은 고용주의 의무사항, 제10장은 법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법이 정한 기일 내에 법이 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보상 위원회⁴⁰⁵⁾에 등록을 해야 하며⁴⁰⁶⁾, 연회 산정비⁴⁰⁷⁾를 지불해야 한다.

연회 산정비는 근로자의 월급과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기초로 책정이 되므로 고용주는 해당 양식에 기초하여 보상 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⁴⁰⁸⁾

산업재해보상은 노동부 산하에 관장하며,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VI. 개정 예정 노동 법률 요약

현재 국회에 개정을 위해 상정된 법률은 노사관계법과 근로 기본 조건법이다. 노사관계법과 근로 기본 조건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복잡

403)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Act, 130 of 1993

404) 산업 재해 보상법 제22조

405) Compensation commissioner

406) 산업 재해 보상법 제80조

407) Annual assessement fee

408) 산업 재해 보상법 제82조

하고 까다로운 노동법 절차 특히 낮은 성과 퇴출 또는 문제가 있는 근로자 해고가 힘든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보다는 인력관리 회사(labour broker)를 사용하므로 모든 노사문제 위임하였다. 이로 인해 인력관리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월급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해야하고 임시직으로 정규직이 받는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등 노동력 착취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고용주의 경우 고의적으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임명하기보다 계약직으로 채용하므로 정규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노사 관계법 제198조의 개정이 예상이 되는데, 현 개정안을 보면 인력 공급업체 사용을 인정하는 대신 인력 공급업체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고 등 노사분쟁 발생 시 고용주는 인력관리회사와 연대적으로 책임지거나 고용주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현 임시직 또는 계약직 보호 조항인 노사 관계법 제198조를 개정하여, 임시직이나 계약직 사용 기간을 6개월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따라서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단발성 프로젝트 등과 같이 일의 성격상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동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10명 이하의 소규모 고용주, 50명이하의 근로자를 둔 고용주로서 회사운영이 2년 이하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신생 회사로서 50명 이하의 규모일 경우 2년간 임시직이나 계약직 사용이 일정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 기본 조건법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근로 기본 조건법이 제시한 기본 노동 조건들이 실행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권 행사를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 노동 제한을 규정한 근로 기본 조건법의 조항을 전 영역으로 확대 및 아동 노동조항 위법 시 처벌조항을 3년에서 6년 징역으로 강화된 규정을 상정하였다.

개정 예정 노동 법률은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 지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아공 현행 노동법 자체가 근로자 지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개정 예정 노동 법률 또한 투자자나 기업보다는 더 한층 근로자 권익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 5 절 남아공의 외환관리 법제 분석

I. 개 관

‘남아공 외환 관리 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화폐 및 환전법’⁴⁰⁹⁾이다. 동 법률은 1993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남아공 화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법이다. 대부분의 조항들은 개정과 폐지를 통해 소멸되고 현재 제1조, 2조, 9조, 10조, 11조 등 다섯 개 조항만 남아 있다.

‘화폐 및 환전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화폐, 은행 그리고 외환과 관련된 규칙(regulation)을 제정할 수 있다. 동 조항에 의거 1961년 12월 1일 ‘외환 관리 규칙’⁴¹⁰⁾이 제정되었고 개정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외환관리 감독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산하 남아공 중앙은행⁴¹¹⁾의 ‘재정 감독국’⁴¹²⁾과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은 거래 은행(Authorised Dealers)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0년 10월 재무부는 외환 거래 승

409) Currency and Exchanges Act 9 1993

410) Exchange Control Regulations

411) South African Reserve Bank: SARB

412) Financial Surveillance Department, 예전의 명칭은 ‘Exchange Control Department’

인을 받은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외환 관리 매뉴얼’⁴¹³⁾을 발행하였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외환 관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A부터 W로 나누어져 있는데, A항(Section A)은 개념, B항은 목적, C항은 역사적 배경, D항은 담당 기관, E항은 외환 관리에 대한 일반적 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F항부터 W항까지 외환 관련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외환 관리 규칙은 국적을 불문하고 남아공에 거주하고 있거나, 남아공 소재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비거주인, 남아공에 지사나 자회사를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 외환관리규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II. 자국민 해외 투자 및 송금

외환 관리 규칙을 보면 자국 내 화폐가 국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아공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외환 규정이 많다. 예를 들면 개인이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납세의무에 충실해야 하며 2010년 11월 5일 부터 연 4백만란드(R 4million) 미만까지 사전 승인 없이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 자금 송금 시 납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양식을 외환 관리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⁴¹⁴⁾ 그러나 개인 학비, 여행 경비, 자선단체 기부, 선물이나 생활비 목적으로 연 백만란드(R 1million)까지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도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

남아공 법인의 직접 해외 투자의 경우 2009년 10월 27일 이후 5억란드(R 500 million) 미만인 경우 중앙 은행의 승인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해외 투자를 통해 어떻게 남아공에 이익이 되는가 하는 개략적 자료 제출은 해야 한다. 해외 투자의 경우 보유 주식이나

413) Exchange Control Manual

414) 외환 관리 매뉴얼, Section O(6.1.1)

투표권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5억란드 이상을 투자할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Ⅲ. 배당금, 수익 및 이자 송금

해외 거주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설립한 법인으로 부터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배당받거나 수익(profit)이나 수입을 수령한 경우 본국 송금 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⁴¹⁵⁾ 그러나 배당금세와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송금 시 외환 취급 은행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증명으로 회계 감사된 연차 재무재표 사본과 해외 거주 주주가 보유한 주식 사본 제출을 요구한다.

해외 거주 법인이 남아공 비상장 또는 상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통제된 유가 증권(controlled security)’이라 분류하며, 외국인은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는 통제된 유가 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¹⁶⁾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해외 법인이 남아공 자회사 즉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부분의 형태는 개인 회사 형태이다. 개인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만 일반인으로 부터 주식 공모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 설립 후 주주에게 주식 발행을 하고 주주 명부에 등록을 할 경우 발행된 주식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외환 거래은행으로 부터 ‘비거주자’라는 확인을 받는다. 주식 취득 시나 처분 시 모두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주에게 배당금을 송금하거나 주식 처분 후 대금을 송금할 경우 해당 주식 사본을 송금 은행에 증명으로 제출한다.

415) 외환 관리 매뉴얼, Section I(2.3.1)

416) 외환 관리 규칙 (Exchange Control Regulations) 제14조

그런데 남아공에 운영되는 법인, 재단, 신탁, 파트너십의 수입, 수익, 자산 등의 75% 이상을 해외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남아공 금융 기관으로 부터 재정 지원이나 대출을 받은 경우, 해외 거주자에게 수익, 수입, 자산 등 송금 시 해당 법인, 재단, 신탁 또는 파트너십의 재정이 초과 대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 대출 시 이자 조건이나 이자율에 대해 중앙은행이나 외환 관리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에게 원금 상환 시에도 승인이 필요하다. 이자율은 이자율 규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자율이나 조건이 승인된 경우 이자에 대한 해외 송금은 제한이 없다.

IV. 주식, 금 투자 이익 송금

해외 거주자가 남아공 상장 주식이나 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의 본국 송금은 제한이 없다.

V. 해외 거주 이사 보수 지급

해외 거주 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에는 금액 제한이 없다. 그러나 송금시 해외 거주 이사에게 지불되는 금액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결의서 사본과 해당 이사 해외 거주 증명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⁴¹⁷⁾

VI. 로열티, 라이선스 송금

해외 거주 법인이나 외국인이 남아공 내국인으로 부터 로열티나 면허료(licence fee) 지불과 관련하여 로열티나 면허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역 산업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지불 관련하여서는 중앙은행

417) 외환 관리 메뉴얼, Section I (2.3.3).

의 승인이 필요하다.⁴¹⁸⁾ 선불로 로열티 지급하거나 최소 로열티 지급은 예외적이지 않는 한 승인되지 않는다.

그동안 외환 거래 규율 대상은 자본이었다. 자본(capital)이라는 개념은 현금이나 통화로 좁게 해석되었다. 따라서 자본에는 지적 재산권이 포함되지 않아 지적 재산권 거래 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2012년 6월 8일 ‘외환 관리 규칙’ 제10조에 제4항을 추가 삽입하여 자본이라는 개념 속에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였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는 지적 재산권까지 외환 거래 승인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 외환 관리 규정을 완화하는 흐름에 반대되는 개정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지적 재산권의 경우 최종 등록이 되어야 보호 및 소유권이 발생하는 특수한 소유형태인데, 아직 등록되지 않는 지적 재산권까지 외환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VII. 대 출

자국민이 외국인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기업이 외국인에게 대출할 경우 중앙은행 ‘재정 감독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만 허용이 된다. 예를 들어 배당금 대신 대출하는 경우, 이미 승인 받은 해외 투자와 관련된 대출인 경우 등이다.⁴¹⁹⁾ 개인이 대출을 하는 경우 연 백만란드(R 1000000) 까지 사전승인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의 보유 주식의 75%이상인 남아공 회사가 금융 기관으로 부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 대출, 용자를 위한 저당권 설정, 할부로 물품을 구입 하는 등 제한은 없다. 또한 운영 자금이나 투자 금액으로 남아공 자회사에 송금하는 것도 제한이 없다. 그러나 해외 법인이 지분의 7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구

418) 외환 관리 메뉴얼, Section I (2.3.2).

419) 외환 관리 메뉴얼, Section O (6.1.3)

입을 위한 대출이나 지분 매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의 경우 해외 법인의 투자와 남아공 금융 기관의 대출의 비율은 1:1이 적용된다.⁴²⁰⁾

다국적 기업으로서 남아공에 본사를 둔 경우 남아공 자본으로 해외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투자 금액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승인과 더불어 주주 구조와 자산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다.⁴²¹⁾

제 6 절 검토 및 시사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남아공은 단독 제정 법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사법, 노동 법률, 세금 관련 주요 법률, 외환 관리 규칙 등을 다루었다. 이외에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소비자 보호법,⁴²²⁾ 공정 거래법,⁴²³⁾ 미미하지만 해외 투자자에 대한 특혜나 자금 지원 부분 등은 분량과 시간의 제약으로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루고 싶다.

이러한 법률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남아공에 해외 투자 등의 형태로 진출할 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적용 받는 법률들로 세부 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고객 이야기로 이를 설명해 보 고자 한다.

어느 기업은 남아공 진출한 지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회사 건물이 위치한 부동산⁴²⁴⁾을 매입하지 않고 거액의 임차료를 매달 지불 하고 있다. 일 년치 월세면 그 부동산 구매가 가능해 보였다. 그 이유 를 물어보니 대답은 본사 방침이 남아공 철수 시 부동산을 처분할 수

420) 외환 관리 메뉴얼, Section Q (6.2.1.3)

421) 외환 관리 메뉴얼, Section O (6.1.4.5) 참조

422) Consumer Protection Act, 68 of 2008

423) Competition Act, 89 of 1998 as amended

424) 남아공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토지 주인이 건물 주인이다. 예외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경우 아파트의 토지는 아파트 주인들이 공동 으로 소유하며 아파트 각 호에 대해 ‘부분 소유권’(sectional title)이 인정된다.

없거나 까다롭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간혹 다른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업은 지난 15년 이상 남아공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철수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장하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본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철수 시 남아공에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거나 까다로운 것일까? 먼저 이 기업이 부동산 구매를 하지 않고 임차료를 내는 경우 남아공은 전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납입하는 임대료는 사라지게 된다. 거기에 전기 수도세는 별도이다. 어떤 부동산 주인들은 임차 계약서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매년 임대료는 5-10%로 인상이 된다.

반면 한국 본사에 건의하여 부동산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하면 구매 대금의 절반을 현지 금융 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0% 외국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절반 대출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이 기업의 경우 지난 15년 이상의 영업실적과 세계적으로 알려진 회사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출도 가능해 보인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에 대한 이자 납입은 비용으로 수익에서 공제하므로 절세 효과가 발생하며 이자 납입은 임대료 경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거기다 이 법인은 이미 부가 가치세 납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자가 부가 가치세 납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동산 취득세를 납입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시 납입한 부가 가치세는 회사 제품 판매 시 고객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부가 가치세와 상쇄하면 된다.

남아공 자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였다가 철수 시 처분하는 경우 구매 당시와 처분 시 비용을 제하고 순이익에 대한 자산취득세를 납입한 후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데 제약이 없다. 이를 처분하지 않고 임

대하여 임대료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한국이나 남아공이나 조건이 맞는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동일하다고 본다. 이러한 어려움을 대행해 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를 위임하면 된다.

남아공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입료는 구매자가 부동산 대금을 먼저 입금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전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 후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또한 부동산 이전세는 구매자가 납입하고 판매자는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또한 변호사는 자산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준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전과 관련하여는 부동산 이전 전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처분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반면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남아공 초기 진출 시 얼마간 사무실 건물을 임대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기초가 마련되자 회사 건물 및 창고 부지를 은행 용자를 통해 구매하였다. 물론 부동산 취득세 면제를 받았고 은행 대출을 통해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동안 해당 부지 근처가 개발되면서 구매 가격 보다 몇 배로 인상되었다. 구매 당시 건물과 함께 아래쪽 큰 공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는데 임대 수요가 있어 그 공지에 창고 건물을 지어 물류회사에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두 기업의 차이는 한 기업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는 속단 또는 편견으로 사업과 관련된 법률들을 공부하거나 숙지하는 대신 무지 속에서 매달 거액의 임대료를 납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반면 한 기업은 남아공 사정을 옆에서 듣고 배우면서 현지 사정에 적합한 기업 운영 방침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살펴본 것처럼 남아공 법체계는 잘 정비되어 있고,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진출 전략을 마련한다면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 5 장 결 론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남아공 투자 시 고려해야 할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아공에서 광물 자원을 생산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길게는 100여 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국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경험이나 전문가 보유 측면에서 남아공 다국적 기업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또 이미 다국적 기업들의 선점으로 들어갈 틈이 많지 않다.

광물 자원 개발은 광권 확보 등 인허가 취득에서 부터 탐사, 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0여년 이상의 긴 세월과 막대한 자금의 지속적 투여가 요구된다. 또 광물 자원 개발에 투자했다고 해서 모든 투자가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경쟁상대는 이곳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다국적 광산 기업들이다.

이런 배경 하에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는 선물 계약(先物 契約)이나 기존의 광산 회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여 지분만큼의 광물 자원 확보 하는 것 등이 안전한 투자 진출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방식은 소규모 자본으로는 가망이 없다. 자본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이 취할 수 있는 형태이며, 정부 차원에서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남아공에 대한 투자, 사업 진출은 쉽지는 않다. 부정적 요소가 긍정적 요소보다 많아 보인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들의 규제, 통제 및 적용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않는 추가 비용과 추가 시간이 요구되어 질 때가 있다.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나 처리 능력도 더디어 답답할 때가 많다. 더욱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과 고용 평등법 등은 투자 장려보다

는 투자 저해 요소들이다. 또한 노동법이 지나치리 만큼 근로자 권익과 지위 보호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남아공은 아직도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화가 된지 20여년이 되어가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독점하는 기업들이 많아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들의 진출을 필요로 하고 있다. 흑인 경제 육성 정책과 같이 자국의 천연이나 광물 자원 보호와 자국민 경제 보호 정책은 남아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나라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남아공을 인프라와 인적 자원 보유 측면에서 보면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만하다. 또한 여러 제한과 장벽 속에도 현지 법률을 이해하고 숙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투자시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 KOTRA, 「2011 주요 국가 해외투자 편람」, 지식경제부·KOTRA, 2011.
- 권순진 외, 「2010 해외자원개발 아프리카 진출전략」, 해외자원개발협회, 2010.
- 김동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행정체계”,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1년 제5호, 2011.
- 박영호 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 가나·콩고(DRC)·남아공·에티오피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서광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체계”,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0.2.
- 서상현, “남아공의 자원 현황 및 개발 협력 사례”,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제문, 2012.
- 심재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법체계”,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1년 제5호. 2011.
- 에너지경제연구원, “남아프리카공화국 Country Profile”, 2008.
- 이유봉,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법체계”,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1년 제5호, 2011.
- 이준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원자재 개발 법제 현황 및 주요 내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 정우진, 「해외자원개발 전략 연구 : 아프리카 자원개발 진출 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참 고 문 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남아공 광업의 현황과 전망”, 해외
경제 · 투자정보, 2010.7.

<외국문헌>

Business Day, SA needs a law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22 July
2011.

WAJOURBERT · JAFARIS, The Law of South Africa, Second Edition
Volume 18: Minerals and Petroleum, Butterworths Law, December
31, 1994.

World Bank, “Economy Profile : South Africa”, Doing Business 2012
South Africa, 2012.

<웹사이트>

Johannesburg Stock Exchange <http://www.jse.co.za>

NEPAD Planning and Coordinating Agency <http://www.nepad.org>

South Africa Government Online <http://www.gov.za>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zaf.mofat.go.kr>